

CONTENTS

권두칼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 · 임성균 02

현안분석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 윤성주 06

GIMF 모형을 활용한 주요 세목의 효율성 분석 · 오중현 22

정책연구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 최성은 47

지방자치단체 물 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 김현아 · 김지영 52

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 RCT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오영민 · 박노욱 · 강희우 54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박노욱 · 오영민 · 원종학 57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 박노욱 · 원종학 · 오영민 · 강희우 60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발생한

보조금 규모 추정 · 최한수 · 이창민 63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 검사 · 검증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 이원희 · 하세정 65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 정성호 · 김완희 68

기획·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재정패널 조사자료의 특성 - 가계동향조사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7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영국, 법인의 이자공제 제한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외 99

정책흐름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126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134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 13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



임성균
세무법인 다슬 회장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여 자식을 출산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고 있고, 경제적 부담이 결혼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75%에 이르고 있다. 취업이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온 듯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장기간 투자한 막대한 교육비용이 모두 매몰되고 사회갈등이 확대된다. 일자리가 늘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확대되며, 고용안정성도 높아지고 노후 대비도 용이해지며 국가의 복지비용도 줄어든다.

고용지원 세제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2016년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수입액 223조 1,383억원의 13.7%에 달하는 35조 3천억원 규모의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원 총액의 1.25%인 수준인 4,41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1조 1,349억원에 대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당면과제인 고용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조세지원이 크게 미흡하게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가장 큰 사회공헌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세제를 고용지원세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복잡다기한 여타 기업지원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감히 줄이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강화하여, 고용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한

베이비붐세대 및 그 이전 세대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분이 쉽지 않고 세금부담도 많아 투자용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가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년층은 노후 걱정과 재산 유동화 부족으로 가진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현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0억원 한도로 증여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등이 증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한도를 올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2·3세대의 창업지원, 인적개발 투자를 위해 1세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부담을 유예시켜 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년층 자산을 젊은 세대 창업의 마중물로 이용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년층에게도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세대 간 시너지를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로 복지재원 마련 가능

한편,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25%)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올려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누진세 체계에서는 구간 조정이나 세율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세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부과하면 부자들은 해외로 이주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고, 법인에 더 과세하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도 해외로 돌리게 되어 국내 세수와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다국적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우리와 투자·자본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의 법인세율은 16.5~17%로 우리보다 낮고 OECD 선진국들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고용증대를 위한 제도 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일몰기간에 맞추어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 비과세감면 대

.....
2·3세대의 창업지원, 인적개발 투자를 위해 1세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부담을 유예시켜 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용이 국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이고,
 기업의 가장 큰
 사회공헌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 국회,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상 분야는 연구개발·중소기업지원·지방균형발전·농어민지원·근로자재
 산형성 등 경제발전과 형평성 지원을 위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
 나, 대부분 한시적으로 조세 특혜를 준 것이고, 일몰기한이 지나면 종료되도
 록 예정된 것임에도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연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줄인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
 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은 현행 대로 유지하되 기
 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비과세감면을 고용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여타 비과
 세감면 제도는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비과세감면 축
 소는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조세제도의 투명성·공평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고용이 국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이고, 기업의 가장 큰 사회공헌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 국회, 기업,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GIMF 모형을 활용한 주요 세목의 효율성 분석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jyoon@kipf.re.kr)

I. 서론

정부의 재정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Musgrave(1959)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정책은 (1) 자원배분(allocation of resources), (2) 소득과 자산 분배(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그리고 (3) 경제안정 및 성장(economic stabilization) 등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 재정의 3대 기능 중 소득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출이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가 재정활동을 통해 가계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소득분배 또는 소득불평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적 갈등 유발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으며, 저성장 국면에서는 저소득층이 생산과정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높아,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경우,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IMF 이후 소득분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대가 소득분포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떻게 귀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은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횡단면 분석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면 분석

* 본고는 저자가 공동연구로 수행한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택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임

과 더불어 패널분석을 함께 수행하여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정책당국이 재정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득 분포를 개선시키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다. 소득 및 자산이 일부 계층에 집중된 사회에서는 총수요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총생산량 감소 및 실업 등을 유발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한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투자 감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간 소득수준의 격차는 자녀 및 가구 구성원의 교육,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즉,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자원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¹⁾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여 소득분포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정책당국이 재정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득분포를
 개선시키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다.**
 ”

- 소득·자산분포 악화→총수요↓→국가 총생산량 감소 및 실업 유발→경제성장↓
- 소득불평등이 심화→계층간 갈등 유발→정치·사회적 불안정 초래→투자↓→경제성장↓
- 가구간 소득수준의 격차 증가→저소득층 자녀 및 가구구성원의 교육·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인적자본에 대한 부정적 영향→경제성장↓(Inclusive Growth)

소득분포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Berg and Ostry(2011), Berg et al.(2012), Ostry et al.(2014), Woo(2011), 신관호·신동균(2014) 등이 있으며, 이 연구들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IMF(2014)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사례를 통해, 소득분포 개선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²⁾

1) 이와 같은 측면은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과 연관된다.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홍승현 외(2014), 제IV장 참조

3) NaSTaB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공평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조사로, 이를 위해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
**한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투자감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

Ⅲ. 분석방법

여기서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 복지수혜 등에 대한 자료가 자세히 조사되어 있는 재정패널조사(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자료³⁾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득수준이 서로 상이한 가구들에 어떻게 귀착되는지를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출이 개별가구에 귀착되기 전과 후의 가구소득수준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전 가구소득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소득⁴⁾, 민간이전순소득, 민간연금·보험소득⁵⁾, 사회보험급여⁶⁾의 합을 기준소득이라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전 소득분위를 식별할 때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text{기준소득} = \text{시장소득} + \text{민간이전 순소득} + \text{민간 연금} \cdot \text{보험 소득}$$

정부지출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⁷⁾ 본 분석에서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및 그 외 정부지원연금(기타) 등이다. NaSTaB는 자녀양육지원금조사와 관련하여 출산관련 지원금, 0~5세 이하 자녀에 대한 지원금, 6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진료비, 보육비, 교육비, 급식비, 다자녀 지원금, 양육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타 정부지원현금은 국가유공자보훈연금, 기초노령연금, 농어업정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text{현금급여} = \text{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text{자녀양육 지원금} + \text{근로장려금} + \text{기타(국가유공자보훈 연금, 기초노령연금, 농어업보조금,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현물급여로는 의료, 교육, 융자 및 기타지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와 연체가구, 그리고 가구원 전

4) 시장소득에서는 NaSTaB의 가구원 조사에 나타나 있는 근로소득, 사업 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총합,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총합을 포함하였다. 여기서 사업 순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삭감한 것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에는 경조사 소득과 당첨금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일백만원 이상의 소득만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5) 민간연금·보험소득에는 퇴직연금, 연금신탁·펀드·저축,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주택연금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민간으로부터의 연금·보험 소득은 정부로부터의 지원 전 경상적으로 가구소득에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하였다.
 6) 사회보험급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상소득에 기반하여 반환·퇴직·산재 일시금 등 일시금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7)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각각의 특성 및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완 외(2013) 참조

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가 의료급여대상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가구의 혜택은 가구내 학생에 대한 공교육비에서 가구의 공교육비 지출액⁸⁾을 차감하여 추정하였으며, 정부지원 용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정부지원 주택자금대출과 학자금 대출로 제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기타 정부지원현물은 바우처, 교환권 등 상품권, 식료품 및 기타재화를 포함하고 있다.⁹⁾

“
**기준소득을 구성하는
 주요소득이 기준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95.5%, 사회보험급여 3.1%,
 민간이전순소득 0.9%,
 연금·보험소득 0.5%로 시장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분석결과

1. 횡단면 분석

횡단면 분석은 2013년 가구상황에 기초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표본가구의 소득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본에 속한 4,748가구의 기준소득 평균값은 3,748만원이며, 최소소득가구 및 최고소득가구의 기준소득은 각각

0원, 9억 5,33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준소득은 시장소득, 민간이전 순소득, 연금·보험소득 및 사회보험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합한 소득금액이 0원인 가구가 표본 4,748가구 중 122가구로 표본 중에서 2.6%를 차지하고 있다.

기준소득을 구성하는 주요소득이 기준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95.5%, 사회보험급여 3.1%, 민간이전순소득 0.9%, 연금·보험소득 0.5%로 시장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소득 관련 변수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시장소득	3,579.5	3,712.5	0.0	95,534.6
민간이전순소득	31.8	552.1	-9,000.0	6,000.0
민간소득	3,612.1	3,576.5	0.0	95,334.6
연금·보험소득	20.5	185.1	0.0	6,240.0
사회보험급여	115.6	442.4	0.0	6,000.0
기준소득	3,748.1	3,574.4	0.0	95,334.6

주: 기준소득 4,748 가구, 횡단면 가중치 적용

8) NaStaB의 경우에는 공교육비 지출액에서 등록금, 정규수업료, 급식비, 교복비, 교과서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비 지출액에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비 관련 지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 현물급여와 관련해서는 추정이 필요하므로 자료뿐 아니라 추정방법 등에 따라 조사별로 상이한 수치가 나타날 수 있다. 본고와 관련된 추정방법은 이은경·윤성주(2015) 참조

“
**현물급여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의료에 대한 혜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용자 및 기타 현물수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음으로 정부지원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기준, 현금지원 중 가장 큰 항목은 자녀양육지원금으로 연간 평균 42만원 수준이며, 다음으로 기타 현금지원 34만원, 기초생활보장 19만원 수준이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1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물급여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의료에 대한 혜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용자 및 기타 현물수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초점은 정부의 지원이 소득계층에 따

라 어떻게 귀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에 포함된 가구를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분위별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5분위의 기준소득은 1분위의 17.6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경우 그 배율이 29.2배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민간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많고 고소득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이전지출이 많으므로 시장소득과 민간이전소득을 함께 고려한 민간소득의 경우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배율이 19.2 수준으로 시장소득의 배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5분위의 연금·보험소득은 1분위의 14.4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보험급여는 그 배율이 2.5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적 금액은 사회보험급여가 더 높다. 이와 같은 차이는 연금·보험소득의 경우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보험급여는 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정부지원 관련 변수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현금지원	기초생활보장	18.5	101.3	0.0	1,440.0
	자녀양육지원금	42.1	126.5	0.0	1,464.0
	근로장려금	0.8	12.0	0.0	600.0
	기타 현금지원	34.0	156.5	0.0	5,000.0
현물지원	용자	2.6	18.1	0.0	411.4
	주택용자	2.1	17.3	0.0	411.4
	학자금용자	0.5	5.4	0.0	149.6
	교육	168.9	347.6	0.0	2,385.0
	의료	221.5	1,019.3	-985.0	19,600.0
	건강보험	138.3	489.3	-985.0	3,600.0
	의료급여	83.0	905.8	0.0	19,600.0

주: 기준소득 4,748가구,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3〉 분위별 소득분포

(단위: 만원, 배)

	1분위(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b)	평균	배율(b/a)
시장소득	303.5	1,440.2	2,725.0	4,593.4	8,863.4	3,579.5	29.2
민간이전순소득	152.2	107.4	68.3	-48.7	-121.1	31.8	-0.8
민간소득	455.7	1,547.6	2,793.3	4,544.6	8,742.3	3,612.1	19.2
연금·보험소득	2.5	16.1	17.7	30.1	36.2	20.5	14.4
사회보험급여	48.6	112.4	168.5	129.4	119.7	115.6	2.5
기준소득	506.9	1,676.2	2,979.4	4,704.2	8,898.2	3,748.1	17.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지원에 대한 소득분위별 가구의 수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에 대한 귀착이 평균 79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10만원과 3만원 수준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규모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초생활보장이 가구소득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지원금의 경우 1분위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의 규모가 증가하여 4분위의 수혜규모가 73만원으로 가장 크고, 5분위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들의 수혜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양육지원금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상당수가 독거노인 등 1인가구로 구성되어 저소득 가구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5분위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지원금 대상이 가구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으로 수혜수준이 4분위와 비교 시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수혜금액은 평균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분위에서 3분위로 소

“
**정부로부터의 현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들에서
 수혜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양육지원금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평균 수혜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농어업정보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보험급여금(연금식) 등으로 구성된 기타 현금지원의 경우 1분위의 수혜가 9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분위 38만원, 3분위 15만원, 4분위 7만원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규모가 감소하다 5분위에서 11만원으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위별 총 현금수혜를 살펴보면 1분위 189만원, 2분위 73만원, 3분위 71만원, 4분위 81만원, 그리고 5분위 6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수혜규모가 가장 크고,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의 수혜가 가장 낮으며, 1분위의 수혜규모가 5분위 수혜규모의 3.05배 수준으

“
의료부분의 경우 1분위의 수혜규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의료급여로부터의 혜택 규모가 크고 1분위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분위의 수혜규모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5분위의 수혜규모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금지원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금지원의 경우 자녀양육지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가구소득 및 자산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분위의 경우, 현금지원에 따른 수혜규모가 2·3·5분위의 수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 및 자산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자녀양육지원금에 대한 수혜가 4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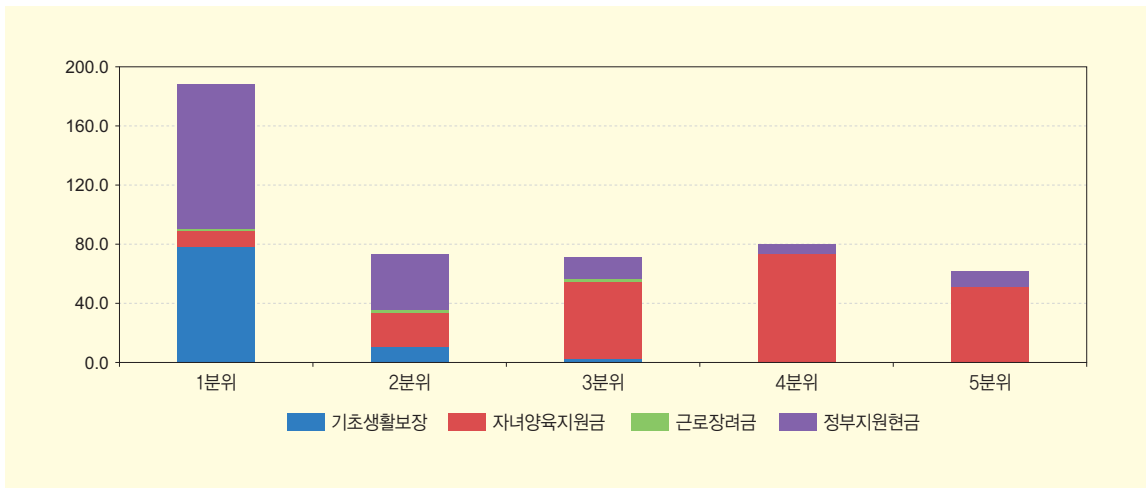
다음으로 현금지원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현물에 대한 소득분위별 수혜를 살펴보면 의료와 교육 부분에 대한 수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의 교육지원에 따른 분위별 평균수혜 규모를 살펴보면, 1분위 49만원, 2분위 107만원, 3분위 148만원, 4분위 249만원, 5분위 293만원 규모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혜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중 자녀가 없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녀가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구당 평균 222만원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 전반적으로는 1분위의 혜택이 가장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수혜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

[그림 1] 분위별 현금지원 분포

(단위: 만원)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분위의 혜택이 높은 것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의료급여로부터의 혜택 규모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1분위의 경우 고령층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연령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큰 수혜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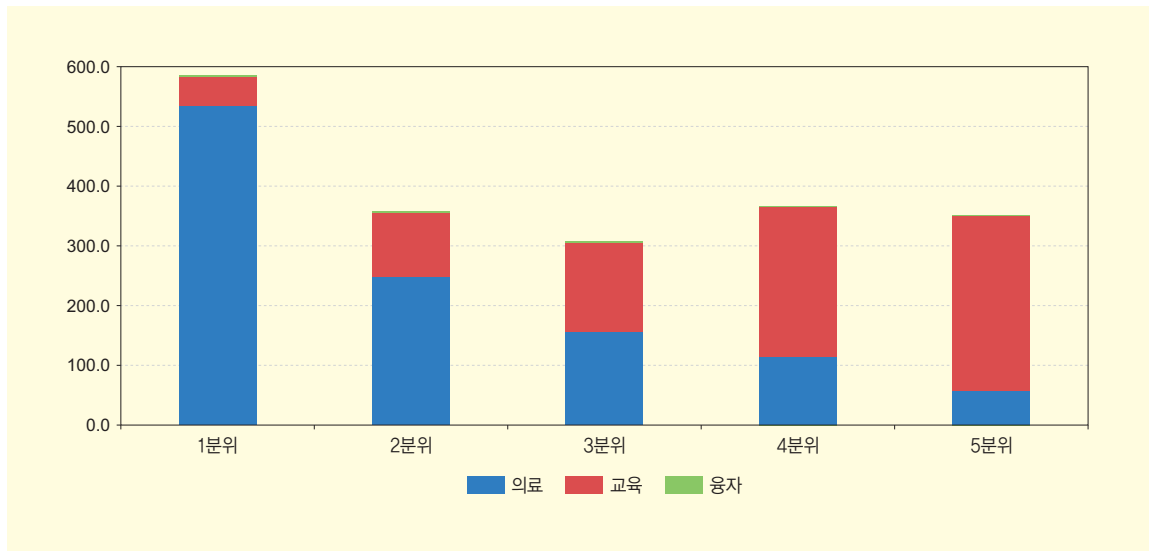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용자지원의 경우에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수혜의 규모가 크고, 기타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혜의 규모는 교육 및 의료 부분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위별 총 현물수혜를 살펴보면 1분위 586만

원, 2분위 355만원, 3분위 307만원, 4분위 366만원, 그리고 5분위 35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현금수혜와 비교 시 그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분위의 혜택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4분위 및 5분위의 수혜규모가 3분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분위의 혜택이 큰 것에는 의료급여 부분이 기여하는 바가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4·5분위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현물수혜를 받는 것에는 교육부분이 기여하는 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분위별 현물지원 분포

(단위: 만원)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10) 의료부분의 경우 추정과정에서 오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대상 의료지출 식별 등이 오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가구의 의료지출 중에서 치과진료, 성형수술, 한약재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도출한 수치이다. 추정방법에 따라 전체적인 수혜의 규모 및 분위별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인 1분위의 혜택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였다.

앞서 살펴본 정부의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이 분위별로 귀착되는 모습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두 지원을 합한 총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1분위에 대한 지원이 755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낮은 수혜를 보는 계층은 3분위로 378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정부지원이 저소득층인 1분위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 현물급여로부터의 수혜가 현금급여로부터의 수혜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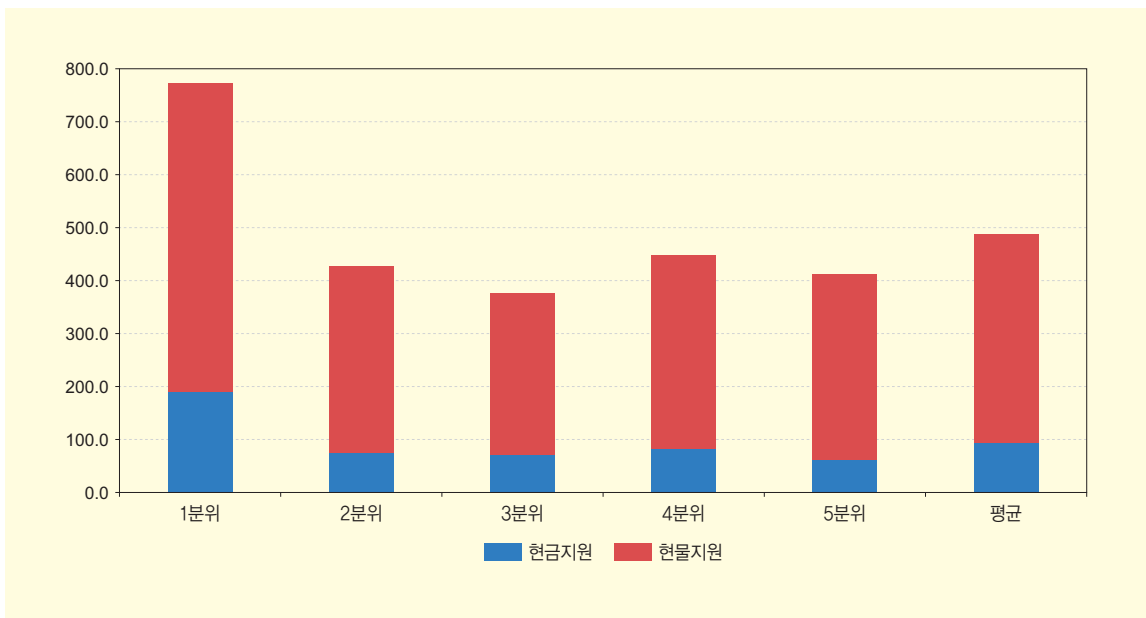
다음으로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지원 이전과 이후 5분위와 1분위의 기준소득 차이는 각각 8,391만원과 8,029만원으로 그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분위와 1분위의 차이가 정부지원 이전 1,169만원에서 이후 823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3분위와 2분위의

차이는 1,303만원에서 1,253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4분위와 3분위의 차이는 1,725만원에서 1,794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분위와 4분위는 다소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부의 현금 및 현물지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득분포는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분위를 제외한 2~5분위에 대한 지원은 3분위가 가장 작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고에서는 조세부담 측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2~5분위의 혜택이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도 재원이 되는 세금부담 측면을 고려하면 4분위 및 5분위의 순혜택은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임

[그림 3] 분위별 정부지원 분포

(단위: 만원)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을 유추할 수 있다.

2. 패널분석

패널분석은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3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횡단면 분석과 달리 조사 대상을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계의 소득분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의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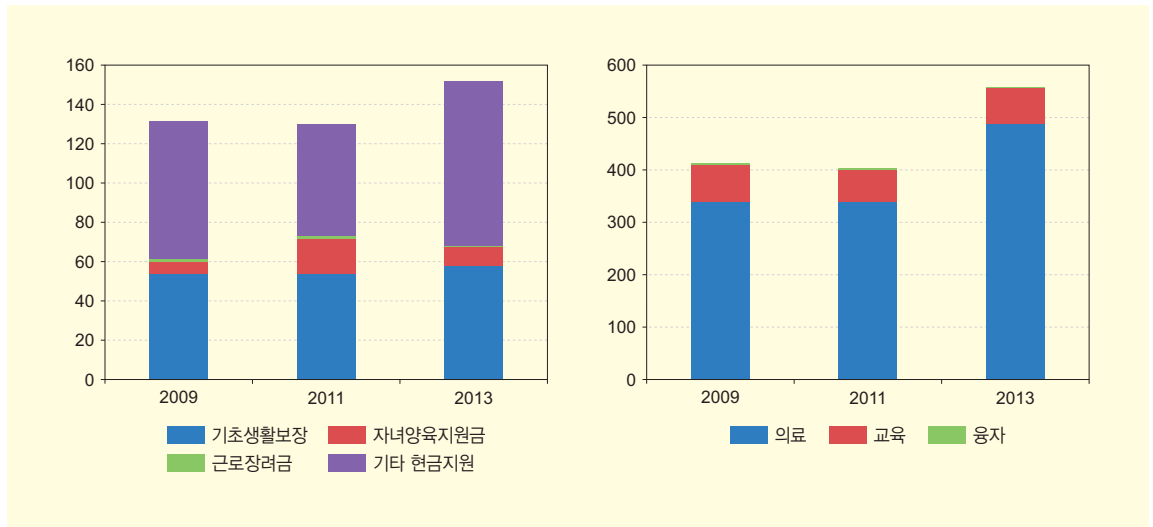
시간이 흐름에 따른 각 분위별 재정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분위 현금지원의 경우 2009년 132만원에서 2011년 130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152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동안 기타 현금 지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노

“
패널분석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계의 소득분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의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령연금 대상자의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2009년 411만원, 2011년 403만원에서 2013년에는 555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의료급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분위별 소득·정부지원 추이(1분위)

(단위: 만원)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기중치 적용

“
2분위에 대한 현금지원은
2009년 43만원, 2011년 60만원,
2013년 72만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녀양육지원금이
2009년 17만원에서
2013년에는 49만원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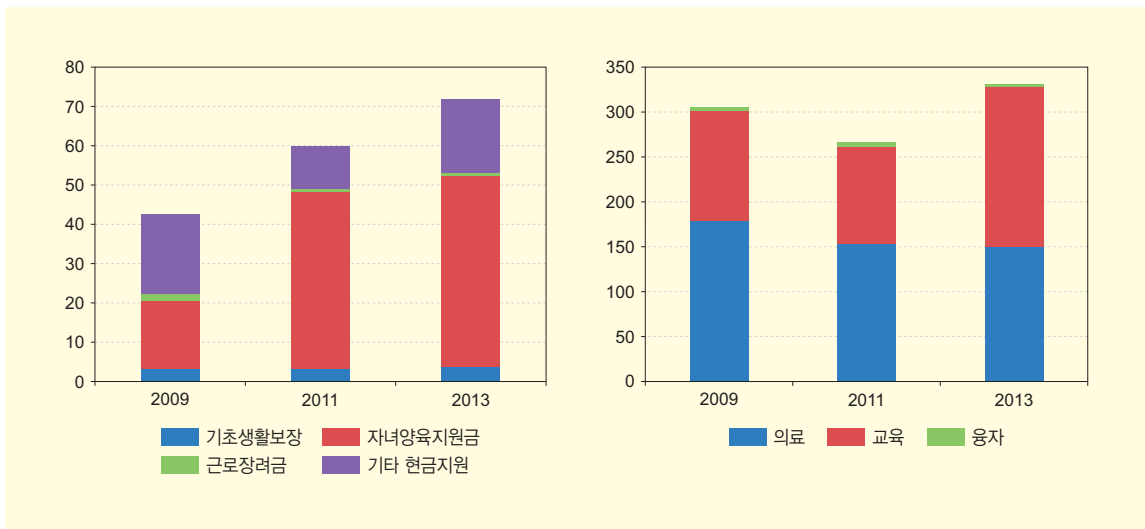
2분위에 대한 현금지원은 2009년 43만원, 2011년 60만원, 2013년 72만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녀양육지원금이 2009년 17만원에서 2013년에는 49만원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2009년 307만원에서 2011년에는 266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331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부분

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준소득 기준, 상위 30%에 해당하는 3분위의 경우, 현금지원은 2009년 24만원에서 2013년 68만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9년 5만원에서 2013년 57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자녀양육지원금이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타 현금지원의 경우에는 2009년 19만원에서 2011년과 2013년에는 1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물지원은 2009년 383만원에서 2011년 257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다시 364만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2009년 205만원에서 2011년에 166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296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이 높다. 하지만 의료부분은 2009년 170만원에서 2011년 84만원, 그리고 2013년 6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분위별 소득·정부지원 추이(2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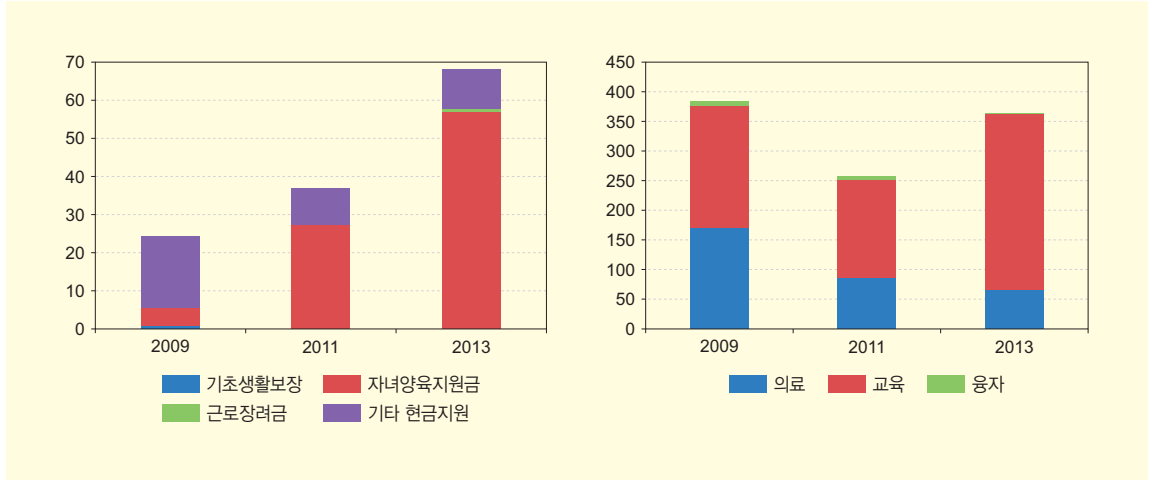
(단위: 만원)



주: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 분위별 소득·정부지원 추이(3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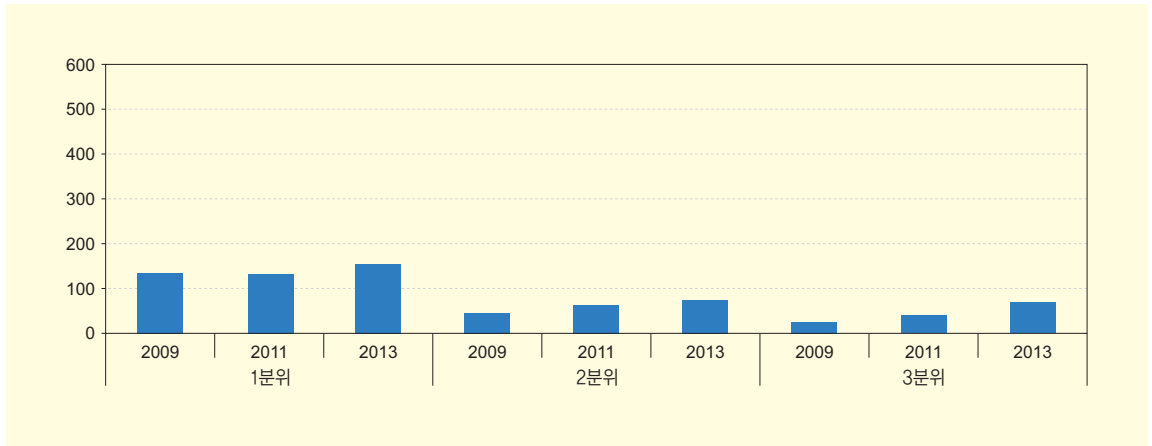
(단위: 만원)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7] 분위별 현금지원 추이

(단위: 만원)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적용

앞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금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인 1분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 고소득층인 3분위의 지원이 가장 낮다. 그러나 연도별 증가율 추세를 살펴보면 1분위, 2분위, 3분위 각각 7.5%,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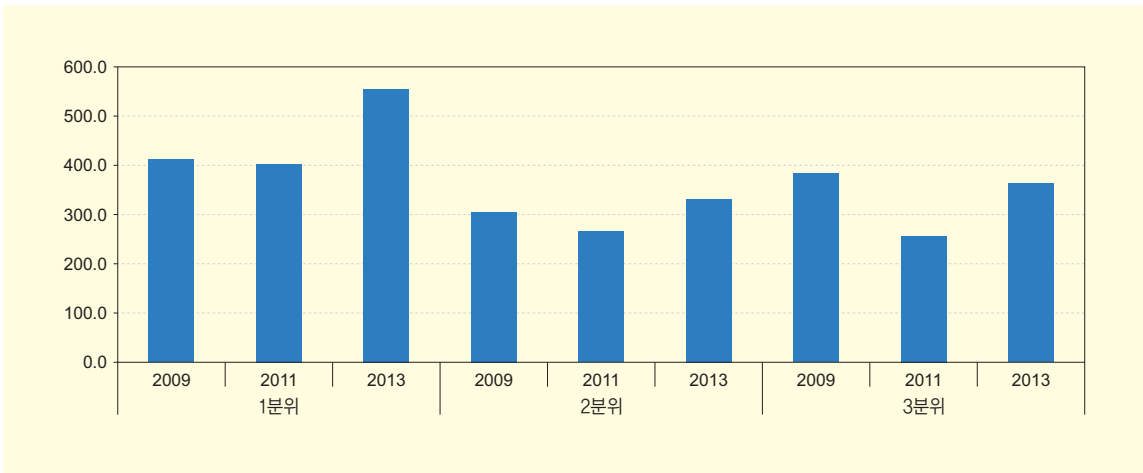
67.2%로 상대적 고소득층인 3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액 및 수혜범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물지원의 경우 또한 저소득층인 1분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금지원과 달리 2분위보다 3분위의 수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3분위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8] 분위별 현물지원 추이

(단위: 만원)



주: 각 연도별 중단면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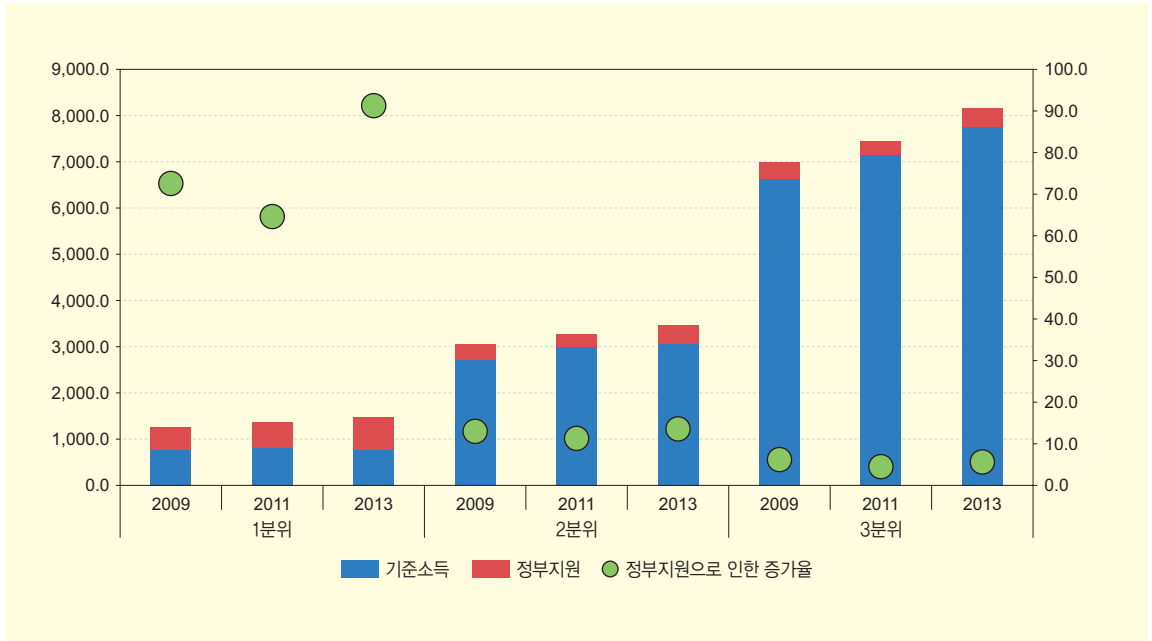
[그림 9]는 분위별 기준소득 및 정부지원, 그리고 정부지원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1분위의 경우 2013년 기준소득이 2011년과 비교 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2분위와 3분위의 경우 기준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현금 및 현물 지원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1분위가 65~9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2분위 11~13%, 3분위 4~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 지원금액의 크기를 살펴보면, 1분위가 여전히 가장 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분위보다 3분위의 수혜규모가 일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지원 이전 1분위와 2분위

의 기준소득 차이는 2,125만원이었으나, 정부지원 이후에는 1,890만원으로 그 차이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분위와 3분위의 차이는 기준소득 기준 4,265만원, 정부지원 이후 4,284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 지원금 등과 같은 보편적 지원에 대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¹⁾

11) 정부지원 이전인 기준소득과 정부지원 이후 분위별 소득 차이는 3개 연도(2009년, 2011년, 2013년) 평균값을 의미

[그림 9] 분위별 기준소득 및 정부지원 추이

(단위: 만원, %)



주: 각 연도별 종단면 가중치 적용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귀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 및 추정방법에 있어서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고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013년 기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 1~5분위 중에서 가장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에 대한 정부의 현금 및 현물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에 가장 크게 귀착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

~5분위에 속하는 가구들이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는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세금부담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2~5분위 가구에 대한 재분배 효과는 분석결과보다 더 클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위와 2분위와의 격차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혹자는 정부의 지원은 최저소득계층에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분위 계층의 소득수준을 염두에 둘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최저소득 계층에 편향되어 있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최저소득계층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소지가 있다.

2009년, 2011년, 2013년 3개 연도의 정부지원 추세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1분위(소

득 하위 30%)에 대한 혜택 증가율이 6.9%로, 2분위(소득 하위 30%~소득 상위 30%) 3.6%와 3분위(소득 상위 30%) 1.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정부지원 혜택의 증가율이 더 높게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동 기간 기준소득의 증가율이 1분위는 0.9%에 불과한 반면,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2.8%, 3.9%로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지원을 포함한 소득의 증가율이 1분위 3.5%, 2분위 2.9%, 그리고 3분위는 3.8%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지원의 수준이 시장소득의 변화 등을 상쇄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현금 및 현물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녀양육지원금 및 교육에 대한 혜택이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¹²⁾

요컨대, 조사내용에 따르면 정부지출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분포가 개선되는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최근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보편적 성향을 지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한 것인지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복지지출의 확대가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소득분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태완 외,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박기백, 「‘재정패널’을 이용한 가계 부담 및 혜택 분석」, 『재정학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65호), 2010.

성명재,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성명재·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재정학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56호), 2008. 2.

신관호·신동균,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20권, 제1호, 2014. 4.

이은경·윤성주,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연구보고서 15-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홍승현·류덕현·전병목·윤성주,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연구보고서 14-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Berg, A., J. Ostry,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IMF, 2011.

Berg, A., J. Ostry, J. Zettelmeyer, “What makes growth sustained?,”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8, 2012.

12) 이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자녀양육지원금과 교육은 가치제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두 제도는 사회보험이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이므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IMF, “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IMF Policy Paper, IMF, 2014, 01.
- Musgrave, Richard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McGraw-Hill Book Company, 1959.
- Ostry, J., A. Berg, C., Tsangarides, “Redistrib-
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
aff Discussion Note, 2014.
- Woo, Jaejoon,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fiscal policy volatili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6, 2011.

GIMF 모형을 활용한 주요 세목의 효율성 분석

I. 서론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hoh@kipf.re.kr)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인 2016년에 약 3,70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저성장과 함께 부양인구비율의 증가는 연금, 의료, 교육 등의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우리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석·박명호(2015)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전체 규모가 2015년 10.7%에서 2030년 16.2%, 2040년 20.4%, 2050년 24.4%, 2060년 26.8%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장기적으로 정부지출의 축소가 어렵다면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선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증세에 대한 논의 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세목을 중심으로 증세를 하느냐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효율성일 것이다. 세목별 효율성은 GDP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인 GIMF(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3대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효율성을 비교한다. GIMF 모형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개발한 글로벌(global) 동태확률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형이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세목별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성태 외, 1999; 김승래·김우철, 2007).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균형

모형으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세목별 효율성에 대한 기준으로 한계효율비용(marginal excess burden)을 추정한다. 한계효율비용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김승래·김우철(2007)은 한계효율비용을 사회후생의 변화라 정의하고, 안종석·김승래(2008)는 특정 세목의 세수입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하는 국민소득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목별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특정 세목의 세수입을 GDP의 1% 규모로 증가시켰을 경우 실질 GDP의 변화율로 측정한다. 이는 안종석·김승래(2008)의 효율성 개념과 유사하지만, 실질 GDP는 사회후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승래·김우철(2007)과도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GIMF 모형의 특징과 기본(baseline)모형의 모수 설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GIMF 모형의 구조와 특징

IMF에서 개발하여 운용 중인 GIMF 모형은 글로벌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이다. 여기서 글로벌 모형이라 함은 전 세계의 경제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모형에 담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국가(multi-country)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지역은 유

“
**세목별 효율성은 GDP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인
 GIMF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3대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효율성을 비교한다.**
 ”

로존, 아시아 신흥국 등과 같이 특정 경제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미국, 중국과 같이 하나의 국가로 설정할 수도 있다. 모형 내의 각 지역은 교역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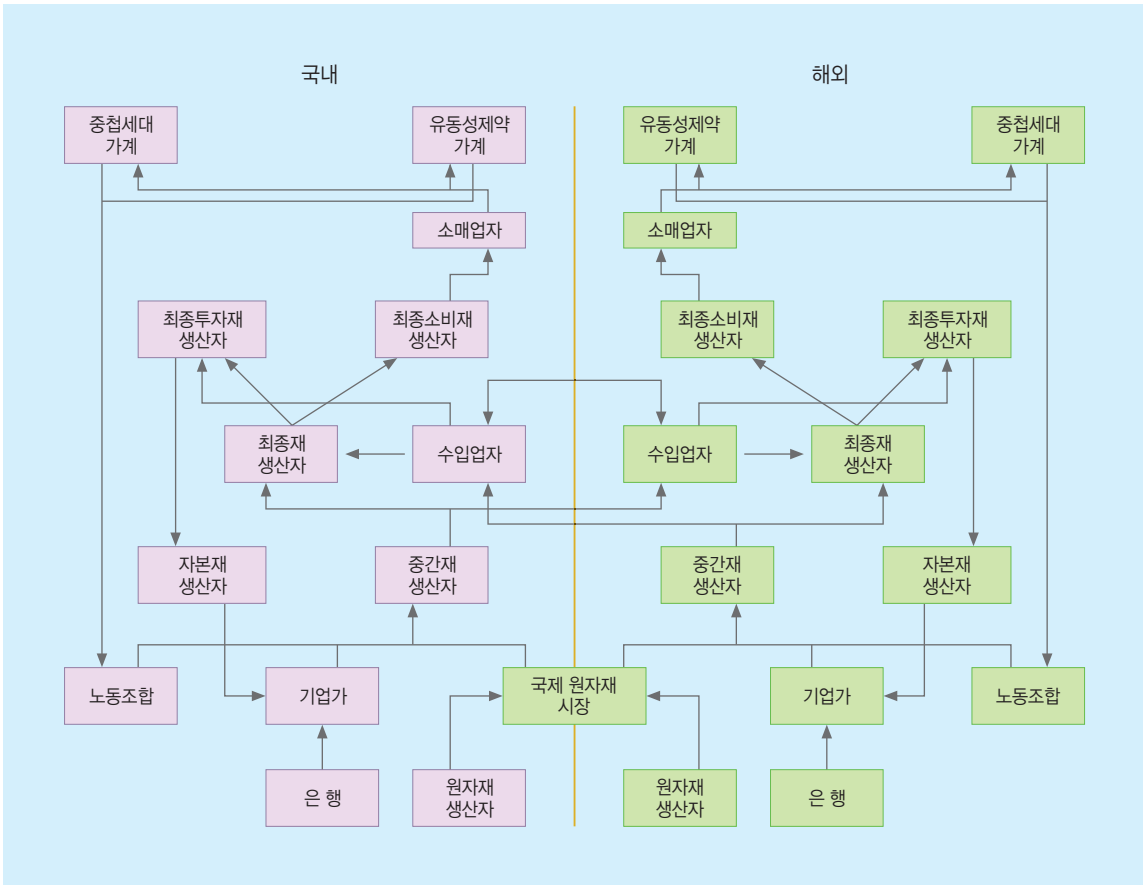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중국, 기타국가로 구성된 4개국 모형을 이용한다. 미국과 중국은 GDP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의 국가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해외부문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조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GIMF 모형은 유용한 분석도구라 할 수 있다.

GIMF 모형 내의 모든 국가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¹⁾ [그림 1]은 2개국 모형의 구조를 보여주는 데,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이 정확히 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두 나라는 중간재와 최종소비재, 최종투자재에 대한 교역으로 연결된다. 한 국가 내에서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여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형 내 각 부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조세정책에 대한 효과를 논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겠다.²⁾

1) 각 국가가 구조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개별 국가를 나타내는 모수의 설정은 달라진다.

2) GIMF 모형의 이론적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umhof et al.(2010)과 박명호·오종현(2015)을 참조하길 바란다.

[그림 1] GIMF 모형의 재화 및 생산요소 흐름도



출처: 박명호 · 오종현(2015), [그림 II-1], p. 22. 저자 일부 수정

1. 가계부문

가계는 노동을 공급한 대가로 발생한 근로소득과 저축을 통해 축적한 자산, 그리고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을 이용해 소비와 저축을 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한다. 또한, 매기 정부에 정액세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납부한다.

GIMF 모형에서 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첩세대가계(overlapping generations households)와 유동성제약가계(liquidity constrained households)이다. 중첩세대가계와 유동성제약가계는 소비의 균등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해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나누어진다. 중첩세대가계는 금융시장을 통해 저축 또는 차입을 할 수 있어 현재와 미래의 소비 사이에 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중첩세대가계의 경우 당기의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유동성제약가계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어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기의 소득을 모두 소비해야 한다. 따라서 유동성제약가계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성제약가계의 도입은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소득세 및 소비세, 이전지출 등 처분가능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유동성

“
중첩세대가계와 유동성제약가계로 인해
GIMF 모형에서는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제약가계의 존재 여부는 단기적인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중첩세대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제약가계의 경우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 정부의 정책효과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GIMF 모형의 모든 가계는 중첩세대를 가정한다. 이는 유동성제약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³⁾ 가계를 중첩세대로 가정하는 것 또한 GIMF 모형에서 중요하다. 이는 가계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근시안적이라는 것은 가계의 의사결정 시 먼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⁴⁾ 중첩세대가계는 의사결정 시 미래 세대의 효용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며, 유동성제약가계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기에 대한 고려 없이 당기의 효용만을 극대화한다.

중첩세대가계와 유동성제약가계로 인해 GIMF 모형에서는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하지 않는다.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모형에서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가계가 현재의 감세나 재정지출의 확대는 미래의 증세로 이어진다고 예측하여 현재 경제주체의 소비의사결

3) GIMF 모형에서는 모든 가계가 중첩세대가계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제약가계와 구분하기 위해 유동성제약이 없는 가계를 중첩세대가계로 칭한다. 이에 용어의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4) 즉, 가계가 근시안적이라는 것은 가계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때 무한기간계획(infinite-horizon)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에서 이는 가계가 다음 기에 사망할 확률로 통제하며, 가계는 주어진 사망확률 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
**정부부문 중 재정당국은 가계로부터
 소득세, 소비세, 정액세를,
 그리고 기업가로부터 법인세를 거두며,
 세입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다.**
 ”

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계가 근시안적이라면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성립하지 않아 조세재정정책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2. 기업부문

기업부문에는 가격경직성(sticky prices), 임금경직성(sticky wages),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조정비용(adjustment costs) 등의 다양한 마찰적 요인들을 도입해 현실 경제를 설명한다. 기업부문은 중간재 생산자(manufacturers), 최종소비재 생산자(consumption goods producers), 최종투자재 생산자(investment goods producers)와 각 단계를 이어주는 유통업자(distributors)와 소매업자(retailor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재 생산자는 교역재와 비교역재를 생산하며, 교역재 중 일부는 해외 수입업자(import agents)를 통해 수출된다. 유통업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교역재와 비교역재, 해외에서 생산된 교역재, 그리고 정부에서 생산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s)를 이용해 최종재를 생산하며, 이를 다시 국내 최종소비재 및 최종투자재 생산자와, 해외의 최종소비재 및 최종투자재 수입업자에게 공급한다. 국내 최종소비재 생산자는 소매업자를 통해 소비재를 가계에 공급하거나 정부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며, 최종투자재

생산자는 기업가(entrepreneurs)와 정부에 투자재를 공급하여 자본을 형성하게 한다.

한편, 중간재 생산자는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생산하는데, 이 중 노동은 노동조합(unions)을 통해 가계로부터 공급받으며, 자본은 기업가를 통해 공급받는다. 이에 기업가는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3. 정부부문

정부부문은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으로 구성된다. 재정당국은 가계로부터 소득세, 소비세, 정액세를, 그리고 기업가로부터 법인세를 거두며, 세입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다. 이러한 재원을 이용하여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 등으로 지출한다. 물론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비용도 지불한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차이점은 정부투자의 경우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s)를 생산하여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전지출은 일반이전지출과 유동성제약가계이전지출로 구분된다. 유동성제약가계이전지출은 의미 그대로 유동성제약가계에만 지급되는 이전지출이다. 반면 일반이전지출은 중첩세대가계와 유동성제약가계 모두에게 지급된다. 한편 통화당국은 기준금리의 조정을 통해 물가와 경기, 환율 등을 조절한다.

III. 기준모형의 모수 설정

본 연구에서 GIMF 모형의 모수(parameters)는 대부분 IMF에서 설정한 수치들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모수의 경우 박명호·오종현(2015)이 설정한 모수와도 대부분 유사하다.⁵⁾ 다만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 GDP 대비 세수 비중 및 정부부채 비율 등 본 연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수 및 관심 변수들에 대해서는 최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은 25%로 설정한다. 이는 박명호·오종현(2015)의 40%에 비해 15%p 낮아진 수치이다. IMF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수는 선진국(advanced economies)의 경우 25%, 그 밖의 국가의 경우 50%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다만 IMF에서 제공한 모형들 중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25%로 설정된 모형이 있는 반면, 박명호·오종현(2015)과 같이 40%로 설정된 모형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40%보다는 25%가 우리나라의 유동성제약가계에 대한 비중으로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본모형의 모수로 설정한다. 이론적으로 유동성제약가계는 한계소비성향이 1인 가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을 직접 추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소비성향을 평균소비성향으로 대체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연간자료를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가 높은 가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수치에 따르면 우리

“
IMF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수는 선진국의 경우 25%,
그 밖의 국가의 경우 50%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

나라의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은 40%보다는 25%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에 대한 모수를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국가의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에 대한 모수를 살펴보면 선진국인 미국은 25%,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은 50%, 기타국가는 40%로 설정되었다. 기타국가를 40%로 설정한 이유는 기타국가 내에는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

(단위: %)

한국	미국	중국	기타국가
25	25	50	40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정부의 세수입에 대해서는 IMF에서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자료를 이용하여 재설정하였다. 총세수입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 모형에서 GDP 대비 총세수입의 비중은 조세부담률보다는 국민부담률에 가까

5) GIMF 모형의 모수설정은 IMF와 CEPREMAP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2016 GIMF Network Winter Workshop을 통해 제공받았다.

“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세수입 비중의 국가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기타국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각 세목별 비중에서는
 국가별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

운 개념이다. 한편 사회보장기여금 부과는 소득세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는 피용자를 거쳐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주에게는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체계가 달라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분석하는 것이 국가별 비교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세수입 비중의 국가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기타국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각 세목별 비중에서는 국가별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소비세를 많이 걷는 반면, 미국은 주로 소득세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비세의 비중은 7.8%로 미국의 4.3%에 비해 3.5%p가량 높다. GDP 대비 법인세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3.3%로 미국의 2.0%에 비해 1.3%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GDP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9.7%로 미국의

15.7%에 비해 6.0%p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높고 간접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3.3%와 3.7%로 유사하지만 소득세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9.7%로 중국의 5.5%보다 4.2%p가량 높다. 반면 간접세인 소비세 비중의 경우 중국의 13.2%에 비해 우리나라는 7.8%로 5.4%p가량 낮다.

〈표 2〉 GDP 대비 세목별 세수의 비중

(단위: %)

	한국	미국	중국	기타국가
총세수	24.0	25.0	24.4	25.0
소득세	9.7	15.7	5.5	17.0
법인세	3.3	2.0	3.7	2.5
소비세	7.8	4.3	13.2	6.0

주: 1. 2011년~2013년 평균
 2. 총세수와 소득세에는 사회보장기여금도 포함
 출처: 1. 한국, 미국, 중국: IMF,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Table 1
 2. 기타국가: IMF와 CEPREMAP 내부자료, 2016 GIMF Network Winter Workshop

GIMF 모형은 위의 GDP 대비 세목별 세수의 비중을 설명하기 위해 각 국가 및 지역의 세목별 세율을 〈표 3〉과 같이 내생적으로 결정한다.⁶⁾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모형(baseline model)에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에 대한 세율은 각각 18.0%, 12.2%, 14.0%이다. 소비세율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인 10%보다 높는데, 이는 소비세에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등 소비와 관련된 다른 세금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⁷⁾

6) 〈표 3〉의 값들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모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GIMF 모형에 〈표 2〉의 값들을 입력하면 정상상태(steady-state)에서 〈표 2〉의 값을 도출하는 각 세목별 세율로 〈표 3〉의 값들이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표 3〉 GDP 대비 각 세목의 비중을 설명하기 위한
GIMF 모형의 세율

(단위: %)

	한국	미국	중국	기타국가
소득세	18.0	26.2	10.2	28.3
법인세	12.2	10.0	13.5	15.0
소비세	14.0	7.0	23.4	9.6

출처: GIMF 모형을 통해 저자가 도출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IMF의 설정 방식에 따라 WEO(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재설정하였다. WEO 자료에는 국가별 정부부채에 대하여 총부채와 순부채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정부가 정부 이외의 다른 경제주체가 발행한 채권의 보유 부분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WEO에 총부채에 대한 정보만 존재하고 순부채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아 WEO가 아닌 IMF 내부자료의 수치를 직접 이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37.1%로 WEO의 2013년 중국의 총부채 비율인 39.5%보다 약간 낮아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설정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3년 31.6%로 미국, 중국, 기타국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단위: %)

한국	미국	중국	기타국가
31.6	80.9	37.1	70.0

주: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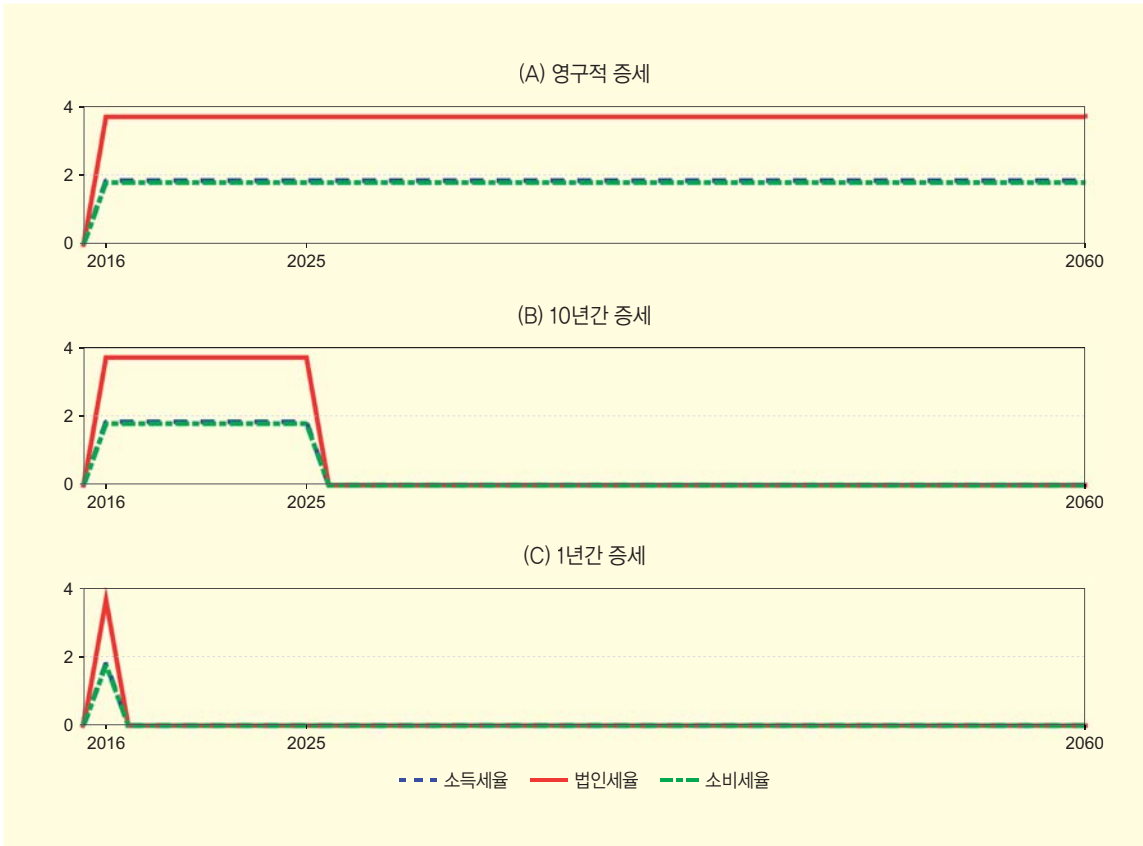
출처: 1. 한국, 미국: IMF, WEO(World Economic Outlook), General Government Net Debt
2. 중국, 기타국가: IMF와 CEPREMAP 내부자료, 2016 GIMF Network Winter Workshop

IV. 주요 세목의 효율성 분석

세목별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정상상태(steady-state)에서의 실질 GDP 1% 규모의 세수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를 통해 각각 조달하였을 경우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소득세율, 법인세율, 소비세율은 각각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1.85%p, 3.70%p, 1.80%p를 인상하였다고 가정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복지지출의 증가는 장기적인 문제로 일시적인 증세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영구적인 증세를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일시적인 증세정책의 효과와 비교한다. 영구적인 증세는 [그림 2]의 (A)에서처럼 2016년 세율이 인상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시적인 증세는 증세기간이 [그림 2]의 (B)와 같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인 10년인 경우와 [그림 2]의 (C)와 같이 2016년 증세 이후 2017년부터 다시 증세 이전의 세율로 돌아오는 1년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림 2] 세목별 세율 변화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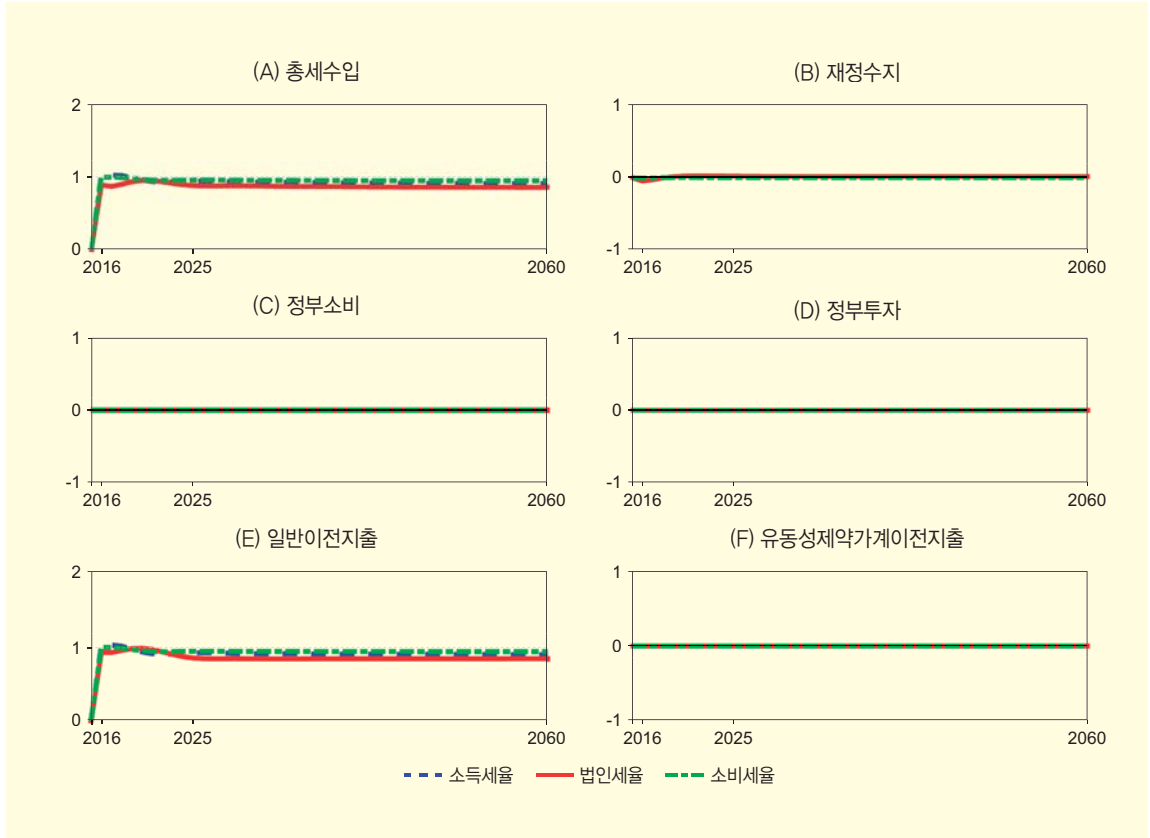
주: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 세율의 증가분을 의미함

세목별 효율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정부가 증세를 통해 추가적으로 마련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이전지출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한다. GIMF 모형에서는 이전지출이 모든 가계에 지급하는 일반이전지출과 유동성제약가계에만 지급하는 이전지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에는 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것처럼 저소득층이 대상인 지출도 존재하지만,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이 모든 소득계층이 대상인 복지지출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이전지출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그림 3]과 같이 세수입은 GDP의 1% 규모로 증가하며, 증가된 세수입은 거의 모두 일반이전지출에 사용되고, 정부소비, 정부투자, 유동성제약가계에 대한 이전지출로는 사용되지 않아 재정수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3] 영구적 세율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출 변화

(단위: %p)



주: 정상상태(steady-state)의 실질 GDP 대비 각 변수의 비중에 대하여 증세 이전 대비 이후의 증가분을 의미함. 즉, 증세로 실질 GDP가 변화더라도 지출구조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정상상태(steady-state)의 실질 GDP로 정규화함

GIMF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영구적인 증세의 경우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비세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의 (A)와 <표 5>의 영구적인 증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증가시킬 경우 다른 세목을 통한 것보다 실질 GDP의 감소율이 모든 기간에 대하여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증세 시작 시점인 2016년의 실질 GDP의 변화를 살펴보면 법인세를 통한 증세는 실질 GDP를 약 0.46% 감소시킨다. 이는 소득세를 통하

여 세수를 증대할 경우 실질 GDP가 약 0.21% 감소하는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감소율이다. 한편 소비세를 통한 증세는 실질 GDP를 0.13%가량 감소시켜 2016년도의 실질 GDP 감소율이 법인세와 소득세와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세와 소비세에 비하여 법인세의 비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030년의 경우 법인세를 통한 증세는 실질 GDP를 약 2.00%p 감소시키는데, 이는 소득세 혹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 시 실질

“
**GIMF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영구적인 증세의 경우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비세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GDP의 감소율인 0.68%와 0.3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증세로 인한 누적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도 세목별 효율성의 차이는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누적효과란 증세 시작 시점인 2016년부터 해당연도까지 누적된 실질 GDP의 감소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기간 당기효과와 평균과 같다.⁸⁾ 증세를 영구적으로 도입할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누적된 실질 GDP의 감소율은 법인세의 경우 0.81%로 소득세의 0.51%와 소비세의 0.28%보다 높다. 또한 법인세를 통한 증세는 2030년까지 15년간 총 1.51%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고, 2060년까지 45년 동안 약 1.76%의 생산을 증발시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다른 세목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누적효과는 당기효과와 평균이기 때문에 당기효과만 고려할 경우 법인세의 비효율성이 항상 가장 큰 상황

에서는 누적효과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증세의 기간에 따라 세목별 단기적인 비효율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증세정책을 영구적으로 시행한 것과는 달리 1년간 단기적으로 시행한 경우 증세 초기의 비효율성은 소비세가 다른 세목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2016년 실질 GDP의 감소율이 법인세를 통해 증세하였을 경우 0.02%, 소득세의 경우 0.03%인 것에 비해 소비세를 통해 증세하였을 경우에는 0.10%로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그림 4]의 (C)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시적인 증세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비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년간 일시적으로 증세한 경우 소비세의 비효율성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효율성은 일정기간 확대된 후 감소한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비효율성의 감소 속도가 소득세보다 낮아 실질 GDP가 증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에 2016년 한 해에만 증세정책을 실시하였을 경우 5년 후인 2020년부터는 누적된 실질 GDP 기준으로 법인세가 가장 비효율인 세목이 된다.

8) t년도 정상상태(steady-state)의 실질 GDP(\bar{Y}) 대비 증세 시 실질 GDP(Y_t)의 감소율인 당기효과(M_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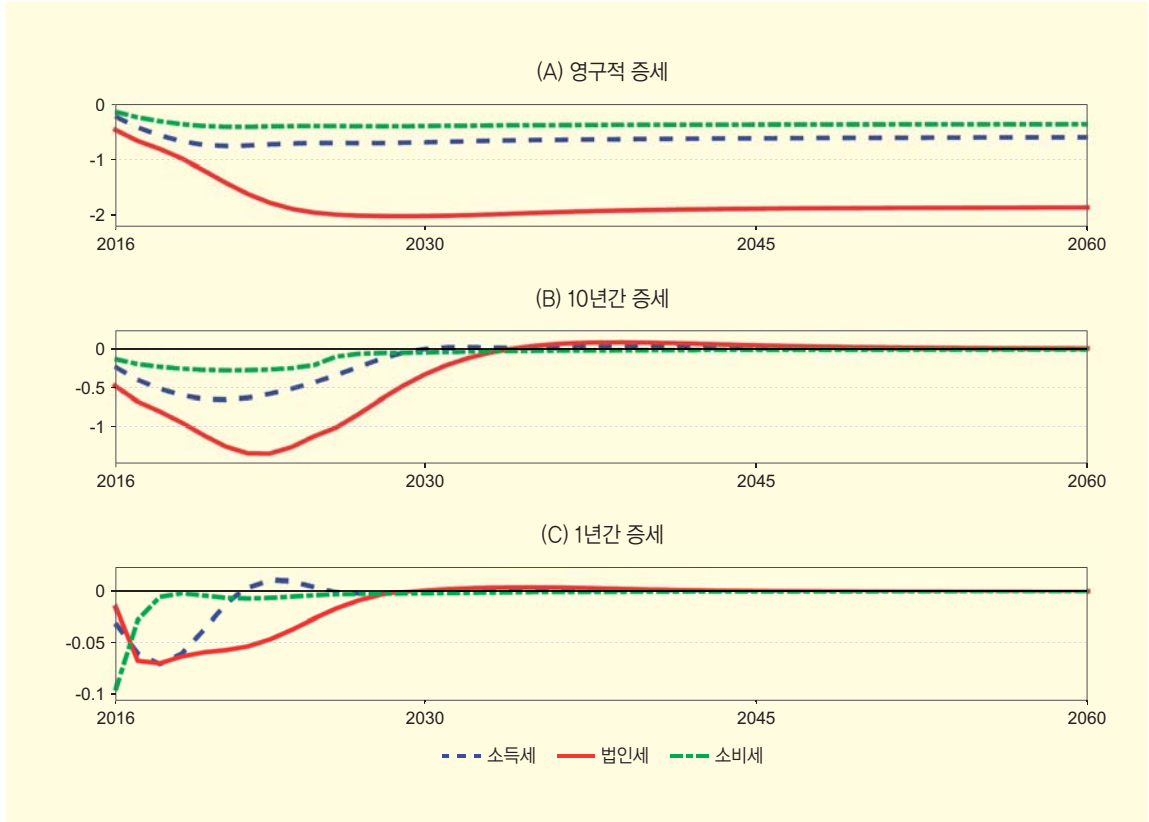
$$M_t = 100 \times \left(\frac{Y_t}{\bar{Y}} - 1 \right)$$

2016년부터 T년도까지 누적된 실질 GDP의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감소율인 누적효과(M_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는 동일기간에 대한 당기효과의 평균과 같다.

$$M_T = 100 * \left(\frac{\sum_{t=2016}^T Y_t}{\sum_{t=2016}^T \bar{Y}} - 1 \right)$$

[그림 4] 증세로 인한 실질 GDP의 변화

(단위: %)



주: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 실질 GDP의 증가율의 의미함

〈표 5〉 증세로 인한 실질 GDP의 변화

(단위: %)

구분	연도	당기효과			누적효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영구적 증세	2016년	-0.2139	-0.4554	-0.1285	-0.2139	-0.4554	-0.1285
	2017년	-0.4094	-0.6543	-0.2284	-0.3116	-0.5549	-0.1784
	2018년	-0.5547	-0.7990	-0.2996	-0.3927	-0.6363	-0.2188
	2019년	-0.6617	-0.9713	-0.3523	-0.4599	-0.7200	-0.2522
	2020년	-0.7261	-1.1822	-0.3858	-0.5132	-0.8125	-0.2789
	2030년	-0.6810	-2.0039	-0.3862	-0.6405	-1.5102	-0.3533
	2040년	-0.6209	-1.8962	-0.3636	-0.6409	-1.6839	-0.3604
	2050년	-0.5998	-1.8605	-0.3565	-0.6314	-1.7377	-0.3600
	2060년	-0.5895	-1.8498	-0.3535	-0.6230	-1.7635	-0.3588
10년간 증세	2016년	-0.2244	-0.4686	-0.1267	-0.2251	-0.4735	-0.1267
	2017년	-0.3887	-0.6617	-0.1894	-0.3074	-0.5708	-0.1580
	2018년	-0.5031	-0.7878	-0.2257	-0.3729	-0.6454	-0.1806
	2019년	-0.5856	-0.9296	-0.2497	-0.4262	-0.7179	-0.1979
	2020년	-0.6334	-1.0918	-0.2643	-0.4677	-0.7937	-0.2112
	2030년	0.0011	-0.3261	-0.0420	-0.3891	-0.8994	-0.1735
	2040년	0.0283	0.0842	-0.0132	-0.2243	-0.5357	-0.1126
	2050년	0.0087	0.0243	-0.0082	-0.1559	-0.3689	-0.0833
	2060년	0.0036	0.0096	-0.0050	-0.1200	-0.2838	-0.0662
1년간 증세	2016년	-0.0310	-0.0153	-0.0952	-0.0308	-0.0155	-0.0954
	2017년	-0.0601	-0.0673	-0.0284	-0.0454	-0.0416	-0.0620
	2018년	-0.0705	-0.0697	-0.0061	-0.0537	-0.0510	-0.0435
	2019년	-0.0603	-0.0631	-0.0026	-0.0553	-0.0541	-0.0333
	2020년	-0.0373	-0.0591	-0.0048	-0.0517	-0.0551	-0.0276
	2030년	0.0010	0.0018	-0.0026	-0.0163	-0.0350	-0.0123
	2040년	0.0009	0.0029	-0.0011	-0.0092	-0.0194	-0.0080
	2050년	0.0003	0.0008	-0.0007	-0.0064	-0.0134	-0.0060
	2060년	0.0001	0.0004	-0.0004	-0.0049	-0.0103	-0.0048

주: 1. 당기효과는 해당연도의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 실질 GDP 증가율

2. 누적효과는 정상상태(steady-state)의 2016년부터 해당연도까지 누적된 실질 GDP 대비 증세 시 동일 기간 누적된 실질 GDP의 증가율로 이는 해당기간 당기효과의 평균과 같은 개념

GIMF 모형에서 소득세율이나 소비세율보다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을 경우 실질 GDP가 더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인상이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를 살펴보면 법인세를 인상하였을 경우 GDP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보다도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민간투자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투자 이외의 GDP의 다른 구성요소들이나 소득세 혹은 소비세를 인상하였을 경우의 민간투자는 모두 정상상태(eady-state) 대비 1% 규모 이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법인세를 인상하였을 경우의 민간투자는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약 4% 혹은 그 이상 감소한다.

민간투자의 감소는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민간 자본의 축적을 더디게 만들어 생산을 감소시키는 주된 역할을 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시적인 증세의 경우 다른 세목보다도 법인세를 통한 증세 시 실질 GDP가 증세 이전의 수준으로의 회복하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주된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민간소비의 경우 증세 초기에는 세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부가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세율의 인상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키지만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킨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이전지출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림 5]의 정부지출은 실질 GDP의 구성요소인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합으로 이전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정부는 오직 이전지출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림 5]의 정부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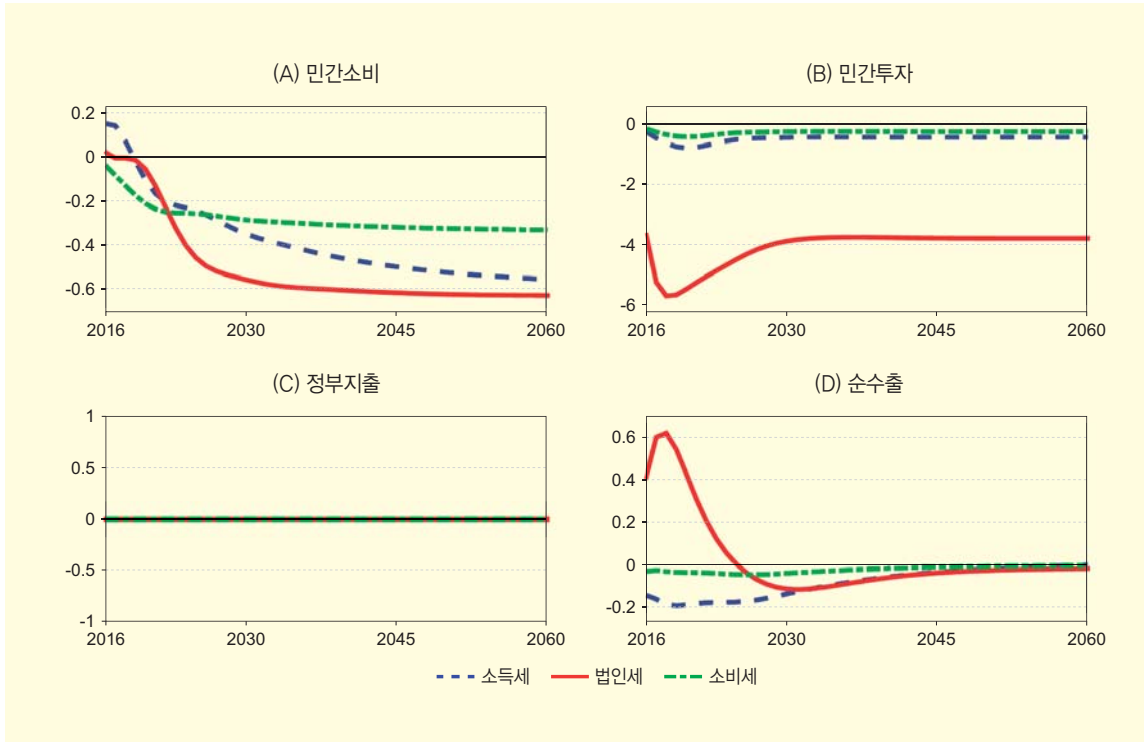
“
**GIMF 모형에서 소득세율이나
 소비세율보다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을 경우
 실질 GDP가 더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인상이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에는 변화가 없다.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것으로 다른 세목과는 달리 법인세를 인상하였을 경우 정책시행 초기에 순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림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법인세의 인상이 정책시행 초기부터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정책시행 초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그림 5]의 (B)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 영구적 증세로 인한 GDP 구성요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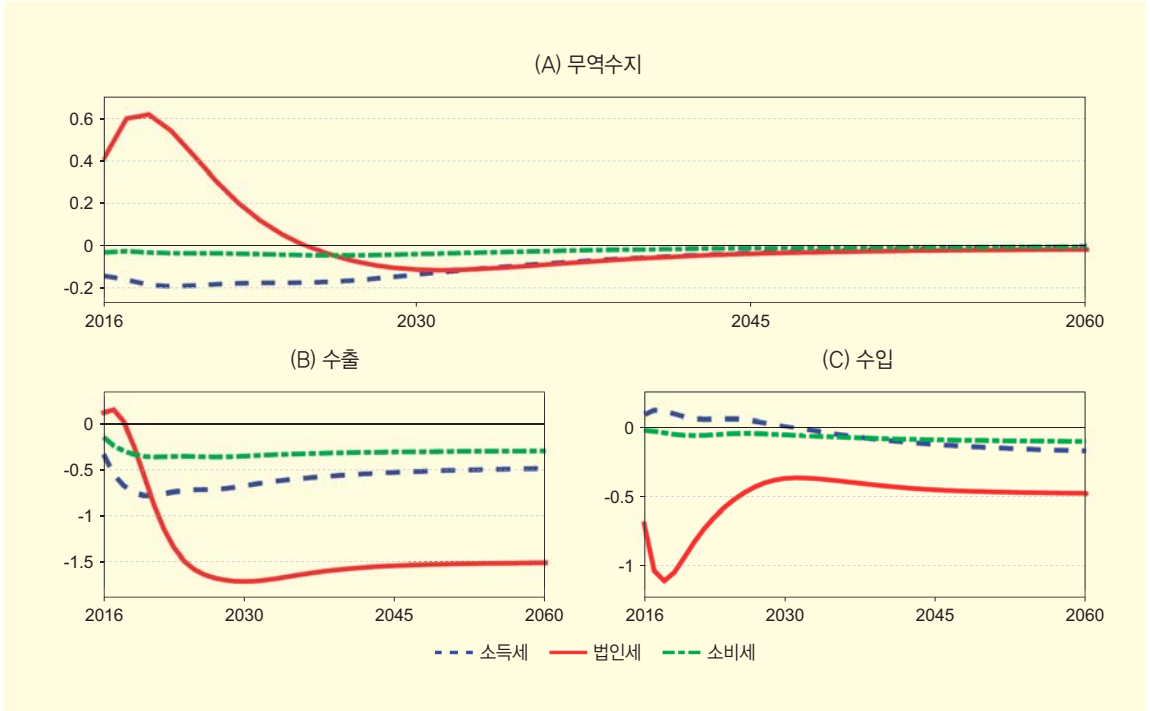
(단위: %, %p)



주: 1.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은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의 증가율을 의미함
 2. 순수출은 실질 GDP 대비 순수출 비중으로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의 증가분을 의미함

[그림 6] 영구적 증세로 인한 무역수지의 변화

(단위: %p, %)



주: 1. 순수출은 실질 GDP 대비 순수출 비중으로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의 증가분을 의미함
 2. 수출과 수입은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의 증가율을 의미함

V. 세목별 효율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이하에서는 세목별 효율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GIMF 모형과 같은 일반균형모형에서 정부는 추가적으로 거두어들인 세수를 어디엔가 지출해야 한다. 앞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이전 지출에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방법에 따라 앞에서 측정된 세목별 효율성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지출방법에 대한 가정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박명호·오종현(2015)에 따르면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은 정부의 정책시행 시 경제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이에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실시한다.

1. 정부의 지출방법에 대한 가정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GIMF 모형에서 정부는 세수입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정부소비, 정부투자, 일반이전지출, 유동성가계이전지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재정수지를 개선하여 정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박명호·오종현(2015)과 Kumhof et al.(2010)에 따르면 GIMF 모형에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한 분석 시 정부투자, 정부소비, 유동성제약가계이전

“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출방식에 대한
 가정을 달리 하더라도
 그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다.**
 ”

지출, 일반이전지출의 순으로 실질 GDP를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가 증세정책을 통해 거두어들인 추가적인 세수를 일반이전지출이 아닌 정부투자, 정부소비, 혹은 유동성 제약가계이전지출로 사용한다면 증세로 인해 감소된 실질 GDP를 일반이전지출보다 더 크게 상쇄하여 실질 GDP의 감소율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실질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의 결과는 위의 예상을 뒷받침한다. <표 6>과 <표 7>에서 보고하듯이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를 정부투자에 사용하였을 경우 실질 GDP의 증가율로 추정된 세목별 효율성은 정부소비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해서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실질 GDP가 증가하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준모형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를 일반이전지출에 사용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것과 상당히 다른 수치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를 정부소비나 유동성가계이전지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정부투자에 사용하였을 경우보다는 작지만 실질 GDP의 증가율이 개선되는 모습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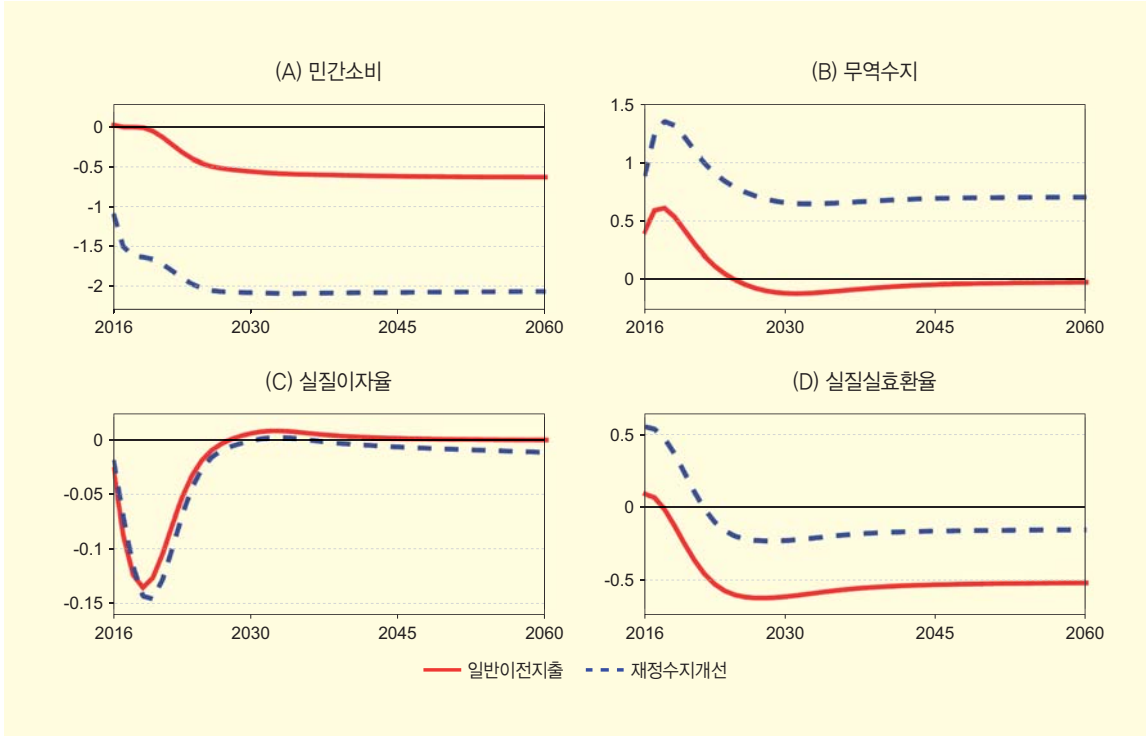
한편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를 지출 확장이 아닌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일반이전지출에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할 경우 단기와 장기에 실질

GDP에 미치는 상대적 크기가 다르다. 단기적으로는 지출을 확대하는 일반이전지출이 실질 GDP에 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실질 GDP의 감소율을 축소시킨다. [그림 7]에 나타나듯이 두 정책의 차이점은 일반이전지출의 경우 민간소비의 감소를 축소시키지만 재정수지의 개선은 무역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이전지출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의 감소를 축소시킨다. 재정수지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이자율을 빠르게 하락시켜 실질실효환율이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림 7]의 (C)에서 정책시행 초기에 일반이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보다 재정수지를 개선할 경우 이자율의 하락 속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지출방법에 대한 가정에 따라 증세 시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하다. 다만 앞의 기준 시나리오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를 일반이전지출로 사용한다는 가정이 세목별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출 방식에 대한 가정을 달리 하더라도 그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다. 모든 지출방법에 대하여 법인세가 가장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으로는 소득세, 그리고 소비세가 가장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목별 효율성의 절대적인 수치를 측정하기보다는 효율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데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림 7] 법인세 인상 시 지출방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단위: %, %p)



- 주: 1. 민간소비는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의 증가율을 의미함
 2. 무역수지는 실질 GDP 대비 순수출 비중으로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의 증가분을 의미함
 3. 이자율과 환율은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의 증가분을 의미함
 4. 실질실효환율의 경우 양(+)의 값이 평가절하를 의미함

〈표 6〉 지출방법에 대한 민감도 분석(당기효과)

(단위: %)

구분	연도	재정수지개선	일반이전지출	유동성제약가계 이전지출	정부소비	정부투자
소득세	2016년	-0.2586	-0.2139	-0.1596	0.1748	0.4361
	2017년	-0.3250	-0.4094	-0.3245	-0.0997	0.2717
	2018년	-0.3497	-0.5547	-0.4520	-0.2353	0.2225
	2019년	-0.3645	-0.6617	-0.5469	-0.3064	0.2422
	2020년	-0.3787	-0.7261	-0.6036	-0.3316	0.3357
	2030년	-0.4150	-0.6810	-0.5590	-0.2697	1.9497
	2040년	-0.3729	-0.6209	-0.5069	-0.2377	3.1175
	2050년	-0.3483	-0.5998	-0.4884	-0.2263	3.9107
	2060년	-0.3337	-0.5895	-0.4794	-0.2207	4.4689
법인세	2016년	-0.5011	-0.4554	-0.4091	-0.1064	0.1338
	2017년	-0.5814	-0.6543	-0.5801	-0.3946	-0.0490
	2018년	-0.6177	-0.7990	-0.7047	-0.5068	-0.0766
	2019년	-0.7073	-0.9713	-0.8608	-0.6165	-0.0944
	2020년	-0.8726	-1.1822	-1.0619	-0.7775	-0.1330
	2030년	-1.7579	-2.0039	-1.8920	-1.6263	0.4778
	2040년	-1.6683	-1.8962	-1.7917	-1.5454	1.5846
	2050년	-1.6297	-1.8605	-1.7582	-1.5178	2.3307
	2060년	-1.6147	-1.8498	-1.7485	-1.5105	2.8548
소비세	2016년	-0.1750	-0.1285	-0.0774	0.2412	0.4861
	2017년	-0.1448	-0.2284	-0.1471	0.0636	0.4151
	2018년	-0.0956	-0.2996	-0.1992	0.0101	0.4455
	2019년	-0.0565	-0.3523	-0.2375	0.0050	0.5298
	2020년	-0.0401	-0.3858	-0.2614	0.0190	0.6627
	2030년	-0.1176	-0.3862	-0.2623	0.0313	2.2451
	2040년	-0.1116	-0.3636	-0.2472	0.0267	3.4076
	2050년	-0.1000	-0.3565	-0.2426	0.0251	4.2175
	2060년	-0.0917	-0.3535	-0.2406	0.0242	4.7939

주: 1. 당기효과는 해당연도의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함
 2. 일반이전지출이 기준시나리오임

〈표 7〉 지출방법에 대한 민감도 분석(누적효과)

(단위: %)

구분	연도	재정수지개선	일반이전지출	유동성제약가계 이전지출	정부소비	정부투자
소득세	2016년	-0.2586	-0.2139	-0.1596	0.1748	0.4361
	2017년	-0.2918	-0.3116	-0.2421	0.0376	0.3539
	2018년	-0.3111	-0.3927	-0.3120	-0.0534	0.3101
	2019년	-0.3244	-0.4599	-0.3708	-0.1167	0.2931
	2020년	-0.3353	-0.5132	-0.4173	-0.1596	0.3016
	2030년	-0.3902	-0.6405	-0.5259	-0.2417	0.9484
	2040년	-0.3907	-0.6409	-0.5253	-0.2442	1.6227
	2050년	-0.3814	-0.6314	-0.5168	-0.2403	2.1812
	2060년	-0.3721	-0.6230	-0.5092	-0.2365	2.6373
법인세	2016년	-0.5011	-0.4554	-0.4091	-0.1064	0.1338
	2017년	-0.5413	-0.5549	-0.4946	-0.2505	0.0424
	2018년	-0.5667	-0.6363	-0.5646	-0.3360	0.0027
	2019년	-0.6019	-0.7200	-0.6387	-0.4061	-0.0216
	2020년	-0.6560	-0.8125	-0.7233	-0.4804	-0.0439
	2030년	-1.2816	-1.5102	-1.4041	-1.1406	-0.0013
	2040년	-1.4546	-1.6839	-1.5775	-1.3185	0.4457
	2050년	-1.5084	-1.7377	-1.6322	-1.3780	0.8951
	2060년	-1.5334	-1.7635	-1.6589	-1.4080	1.2813
소비세	2016년	-0.1750	-0.1285	-0.0774	0.2412	0.4861
	2017년	-0.1599	-0.1784	-0.1122	0.1524	0.4506
	2018년	-0.1385	-0.2188	-0.1412	0.1050	0.4489
	2019년	-0.1180	-0.2522	-0.1653	0.0800	0.4691
	2020년	-0.1024	-0.2789	-0.1845	0.0678	0.5079
	2030년	-0.1023	-0.3533	-0.2380	0.0464	1.2186
	2040년	-0.1085	-0.3604	-0.2437	0.0392	1.8998
	2050년	-0.1074	-0.3600	-0.2439	0.0354	2.4645
	2060년	-0.1048	-0.3588	-0.2433	0.0330	2.9281

주: 1. 누적효과는 정상상태(steady-state)의 2016년부터 해당연도까지 누적된 실질 GDP 대비 증세 시 동일기간 누적된 실질 GDP의 증가율로 이는 해당기간 당기효과의 평균과 같은 개념임

2. 일반이전지출이 기준시나리오임

2.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

GIMF 모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가계가 중첩세대가계와 유동성제약가계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박명호·오종현(2015)이 밝혔듯이 유동성제

약가계의 비중은 세목별로 다른 영향을 미쳐 세목별 상대적인 효율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명호·오종현(2015)에 따르면 세율 인상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에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에 대한 민감도를 세목별로 비교하면 법인세보

다 소득세가 더 크다. 이는 소득세가 유동성제약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세의 비효율성이 법인세의 비효율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 세목 간의 상대적인 효율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가구의 비중이 기본 모형의 25%보다 낮은 1%와 더 높은 40%의 경우

〈표 8〉 유동성제약가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일반이전지출 가정)

(단위: %)

구분	연도	당기효과			누적효과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		
		1%	25%	40%	1%	25%	40%
소득세	2016년	-0.2176	-0.2139	-0.2131	-0.2176	-0.2139	-0.2131
	2017년	-0.4200	-0.4094	-0.4019	-0.3188	-0.3116	-0.3075
	2018년	-0.5697	-0.5547	-0.5425	-0.4025	-0.3927	-0.3859
	2019년	-0.6769	-0.6617	-0.6491	-0.4711	-0.4599	-0.4517
	2020년	-0.7383	-0.7261	-0.7158	-0.5245	-0.5132	-0.5045
	2030년	-0.6855	-0.6810	-0.6773	-0.6490	-0.6405	-0.6338
	2040년	-0.6225	-0.6209	-0.6200	-0.6470	-0.6409	-0.6360
	2050년	-0.5997	-0.5998	-0.6003	-0.6360	-0.6314	-0.6279
	2060년	-0.5884	-0.5895	-0.5908	-0.6264	-0.6230	-0.6205
법인세	2016년	-0.4810	-0.4554	-0.4348	-0.4810	-0.4554	-0.4348
	2017년	-0.6947	-0.6543	-0.6226	-0.5879	-0.5549	-0.5287
	2018년	-0.8575	-0.7990	-0.7525	-0.6777	-0.6363	-0.6033
	2019년	-1.0471	-0.9713	-0.9100	-0.7701	-0.7200	-0.6800
	2020년	-1.2684	-1.1822	-1.1115	-0.8697	-0.8125	-0.7663
	2030년	-2.0796	-2.0039	-1.9393	-1.5809	-1.5102	-1.4514
	2040년	-1.9657	-1.8962	-1.8359	-1.7549	-1.6839	-1.6240
	2050년	-1.9270	-1.8605	-1.8023	-1.8078	-1.7377	-1.6781
	2060년	-1.9146	-1.8498	-1.7928	-1.8326	-1.7635	-1.7044
소비세	2016년	-0.1418	-0.1285	-0.1189	-0.1418	-0.1285	-0.1189
	2017년	-0.2579	-0.2284	-0.2052	-0.1998	-0.1784	-0.1621
	2018년	-0.3409	-0.2996	-0.2663	-0.2469	-0.2188	-0.1968
	2019년	-0.4004	-0.3523	-0.3131	-0.2853	-0.2522	-0.2259
	2020년	-0.4360	-0.3858	-0.3445	-0.3154	-0.2789	-0.2496
	2030년	-0.4268	-0.3862	-0.3518	-0.3949	-0.3533	-0.3188
	2040년	-0.3977	-0.3636	-0.3342	-0.4000	-0.3604	-0.3273
	2050년	-0.3879	-0.3565	-0.3293	-0.3976	-0.3600	-0.3283
	2060년	-0.3833	-0.3535	-0.3274	-0.3948	-0.3588	-0.3283

주: 1. 당기효과는 해당연도의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 실질 GDP 증가율을 의미함
 2. 누적효과는 정상상태(steady-state)의 2016년부터 해당연도까지 누적된 실질 GDP 대비 증세 시 동일 기간 누적된 실질 GDP의 증가율로 이는 해당기간 당기효과의 평균과 같은 개념임
 3. 25%가 기준모형의 모수임

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이 세목별 효율성의 상대적인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이 40% 이내인 경우

는 법인세의 인상이 실질 GDP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을 일반이전지출에 사용한 경우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사용한 경우 모두에 성립한다.

〈표 9〉 유동성제약가계에 대한 민감도 분석(재정수지개선 가정)

(단위: %)

구분	연도	당기효과			누적효과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		
		1%	25%	40%	1%	25%	40%
소득세	2016년	-0.2034	-0.2586	-0.3015	-0.2034	-0.2586	-0.3015
	2017년	-0.2757	-0.3250	-0.3622	-0.2396	-0.2918	-0.3319
	2018년	-0.3095	-0.3497	-0.3804	-0.2629	-0.3111	-0.3481
	2019년	-0.3270	-0.3645	-0.3942	-0.2789	-0.3244	-0.3596
	2020년	-0.3394	-0.3787	-0.4106	-0.2910	-0.3353	-0.3698
	2030년	-0.3736	-0.4150	-0.4497	-0.3468	-0.3902	-0.4256
	2040년	-0.3353	-0.3729	-0.4053	-0.3490	-0.3907	-0.4252
	2050년	-0.3121	-0.3483	-0.3799	-0.3411	-0.3814	-0.4151
	2060년	-0.2981	-0.3337	-0.3650	-0.3328	-0.3721	-0.4054
법인세	2016년	-0.4770	-0.5011	-0.5174	-0.4770	-0.5011	-0.5174
	2017년	-0.5722	-0.5814	-0.5863	-0.5246	-0.5413	-0.5519
	2018년	-0.6291	-0.6177	-0.6078	-0.5594	-0.5667	-0.5705
	2019년	-0.7358	-0.7073	-0.6851	-0.6035	-0.6019	-0.5992
	2020년	-0.9113	-0.8726	-0.8426	-0.6651	-0.6560	-0.6479
	2030년	-1.7973	-1.7579	-1.7253	-1.3094	-1.2816	-1.2588
	2040년	-1.7068	-1.6683	-1.6353	-1.4867	-1.4546	-1.4278
	2050년	-1.6673	-1.6297	-1.5969	-1.5422	-1.5084	-1.4799
	2060년	-1.6519	-1.6147	-1.5822	-1.5679	-1.5334	-1.5040
소비세	2016년	-0.1330	-0.1750	-0.2064	-0.1330	-0.1750	-0.2064
	2017년	-0.1187	-0.1448	-0.1631	-0.1259	-0.1599	-0.1848
	2018년	-0.0853	-0.0956	-0.1025	-0.1124	-0.1385	-0.1574
	2019년	-0.0545	-0.0565	-0.0582	-0.0979	-0.1180	-0.1326
	2020년	-0.0403	-0.0401	-0.0406	-0.0864	-0.1024	-0.1142
	2030년	-0.1138	-0.1176	-0.1209	-0.0943	-0.1023	-0.1087
	2040년	-0.1079	-0.1116	-0.1148	-0.1022	-0.1085	-0.1137
	2050년	-0.0963	-0.1000	-0.1031	-0.1018	-0.1074	-0.1120
	2060년	-0.0881	-0.0917	-0.0948	-0.0996	-0.1048	-0.1090

주: 1. 당기효과는 해당연도의 정상상태(steady-state) 대비 증세 시 실질 GDP 증가율을 의미함
 2. 누적효과는 정상상태(steady-state)의 2016년부터 해당연도까지 누적된 실질 GDP 대비 증세 시 동일 기간 누적된 실질 GDP의 증가율로 이는 해당기간 당기효과의 평균과 같은 개념임
 3. 25%가 기준모형의 모수임

“

본 연구에서는 IMF의 GIMF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가 가장 비효율적이며, 그다음으로 소득세, 소비세의 순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을 일반이전지출에 사용할 경우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이 높을수록 각 세목별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박명호·오종현(2015)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박명호·오종현(2015)에 따르면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 GDP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 효율성이 악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본 연구와 박명호·오종현(2015)의 연구에서 정부의 지출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명호·오종현(2015)의 연구에서는 증세 시 확보된 추가적인 재원은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표 9>에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가정하에서는 박명호·오종현(2015)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제약가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목별 효율성이 감소한다.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을 일반이전지출로 사용할 경우 박명호·오종현(2015)과 결과가 다른 이유는 일반이전지출의 역할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정부는 증세와 동시에 재정 확장정책을 실시한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 GDP를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 이는 증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킨다. 즉, 유동성제약가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 GDP에 미치는 증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재정지출 확장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커지는데, 순효

과는 이전지출 확장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세목별 효율성이 증가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IMF의 GIMF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가 가장 비효율적이며, 그다음으로 소득세, 소비세의 순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소득세 혹은 소비세에 비해 실질 GDP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인세의 인상이 민간의 투자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생산자본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론은 정부가 증세를 통해 마련한 추가적인 세수의 지출방법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도 강건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IMF 모형에서 중요한 모수 중의 하나인 유동성제약가계의 비중에 대해서도 위 결론은 유지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모형의 가정과 구조, 모수의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세목 간의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KIPF**

〈참고문헌〉

- 김성태 · 이인실 · 안중범 · 이상돈, 「한국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5권 제3호, 1999. 12, pp. 45~72.
-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7-13, 한국조세연구원, 2007. 12.
- 박명호 · 오중현,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 구축: GIMF 모형의 이해와 활용』, 연구보고서 15-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안중석 · 김승래, 「효율적인 조세체계(tax mix)의 모색」, 성명재 · 박형수(편),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2008: 새 정부의 조세 · 재정 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 7, pp. 38~82.
- 안중석 · 박명호, 「조세정책 발전방향-세부담과 세 수입 구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1편 총괄편,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pp. 105~143.
- 오중현 · 박명호, 『조세정책이 경기변동에 따른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이질적 가계 모형을 이용한 분석』, 연구보고서 15-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 Anderson, Derek, Benjamin Hunt, Mika Kortelainen, Michael Kumhof, Douglas Laxton, Dirk Muir, Susanna Mursula, and Stephen Snudden, “Getting to Know GIMF: The Simulation Properties of the 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Model,” IMF Working Paper, 2013. 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 Kumhof, Michael, Douglas Laxton, Dirk Muir, and Susanna Mursula, “The 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Model (GIMF)—Theoretical Structure,” IMF Working Paper, 2010. 2.
- 〈통계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2014.
- _____, 『장래인구추계』, 201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ent, 최종접속날짜: 2016. 4. 11.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MF eLibrary Data, <http://data.imf.org/?sk=A0867067-D23C-4EBC-AD23-D3B015045405&ss=1409151240976>, 최종접속날짜: 2016. 6. 6.
-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April 2016,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1/weodata/index.aspx>, 최종접속날짜: 2016. 6. 6.

정책연구



정책연구

-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성은
- **지방자치단체 물 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김현아 · 김지영
- **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오영민 · 박노욱 · 강희우
-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박노욱 · 오영민 · 원종학
-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박노욱 · 원종학 · 오영민 · 강희우
-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최한수 · 이창민
-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이원희 · 하세정
-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정성호 · 김완희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건강보험 지출은 현재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향후 지출 증가속도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필요에 따른 재정안정화와 재정관리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재정의 위험요인의 근간이 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수준, 즉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이다. 국민의료비는 인구 고령화, 소득증가,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향후에도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이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건강보험의 연령대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는 역U자형 패턴에 가깝다. 1인당 영유아 진료비는 청소년층의 1인당 진료비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이후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현저한 진료비 증가 패턴을 보인다. 건강보험 전체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109만원(2014년)이다. 55~59세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약 145만원, 65~69세는 약 244만원, 75~79세는 약 383만원, 85세 이상은 약

514만원으로, 고령인구의 진료비 비중이 높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11.9%인 600만명(2014년)인데, 이들 11.9%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36%를 쓰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의 약 3배(2014년)에 달한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는 외래비중이 큰 것에 비해, 고령인구의 진료비는 입원비와 약제비가 외래비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고령인구의 1인당 입·내원일수는 약 50.5일로(2014년),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2.6배에 해당한다. 입원일수는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4.3배에 달하며, 외래일수는 약 2.3배에 달하는 등 입원의 의료 강도가 크다.

의료비 증가요인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요구들은 중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전망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2050년 GDP의 약 5.1~10.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형수·전병목, 2009; 박형수·송호신, 2011; 보사연, 2013). 보다 최근의 정부

장기재정전망에서는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이 2060년에는 현 수준보다 약 8%p 증가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 이용단가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증가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4~2014년간의 기간 동안 연평균 9.3%의 증가율로 증가하였다. 적용인구의 증가율은 동 기간 동안 연평균 0.6%,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연평균 2.86%로 증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진료비의 증가는 대상자 증가라기보다는 1인당 진료비의 증가에 의거하고 있으며, 1인당 의료 이용량의 증가도 1인당 진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료비 유형별로는 외래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약 42%, 입원진료비는 약 35.1%, 약제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22.9%를 차지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의 수요 측 요인으로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비중 증가, 1인당 의료 사용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진료비 증가의 공급측 요인으로는 수가 인상, 병상 수 및 의료인력 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1인당 병상 수, 입원실 위주의 병상 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급자원의 불균형한 확대가 진료비 증가를 가져오면서, 반면에 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에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정책 등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는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B5년형/ 139면
2015. 12.

일이기는 하지만, 진료비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인적자본의 질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소모적 지출로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과다 이용은 특히 경증질환의 경우,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의 증가라는 비용이 국민 건강증진 기여라는 편익에 비해 크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과다 이용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수가결정방식에 기인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도하게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본인부담금 부과방식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유인이 발생한다. 한편, 민간 의료보험은 제도의 설계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과다한 의료 이용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

람직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이용량보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유인이 발생한다. 수가통제와 행위별 수가제하에 있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가격이 낮음을 알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유인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측면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유인과 민영보험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유인을 중심으로, 본인부담금과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유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 7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외래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는 주로 경증질환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이 상급병원 경증외래 이용률을 감소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2007년에서 2010년의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자료로 패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을 분석하여, 외래본인부담금 인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2009년 이후 경증질환 여부 더미변수는 상급병원 외래 이용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상급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이 경증질환의 이용률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1분위에서 경증질환의 상급병원 외래이용률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위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부담금 인상정책이 의료서비스 이용률에 효과적이며, 특히 경증질환의 외래 이용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에 의거하여 본고에서는 경증질환의 외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정교한 본인부담금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의 크기

는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탄력성에 좌우되므로,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률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3년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자료이다. 추정결과, 외래와 입원을 통틀어 전체 의료서비스의 가격탄력성(본인부담률 탄력성)은 -0.4 , 외래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은 -0.13 , 경증질환 외래서비스 이용의 가격탄력성은 -0.311 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부담금 정책이 외래서비스, 특히 경증질환 외래서비스 이용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본인부담금 정책은 입원보다는 외래에, 그리고 중증질환보다는 경증질환 위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본인부담금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에 너무 영향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영보험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의료패널을 활용하여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진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손형 보험가입은 외래횟수, 외래진료비, 입원횟수, 입원일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액형 보험은 외래진료비, 입원횟수, 입원일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손형 의료보험의 가입은 의료 이용과 진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은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적어도 경증질환에 대해서

는 건강보험의 보장영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의 효과적 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자 측면에서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경증질환 외래방문은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완화한다는 기본적인 방향하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하여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 공급 측면에서의 포괄수가제 적용 개선과 주치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현 구조하에서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처럼 비용들이 다르게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포괄수가제 적용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적용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프랑스 등에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던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보험으로 인한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이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민간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의료보험의 정책방향은 공적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을 보충하는 보충형 위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공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경증질환에 대한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출 측면의 효율화와 더불어 건강보험 지출의 부담주체에 관한 고민과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건강보험 지출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및 재정 관리의 투명화와 심의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건강보험 지출은 현재 보험료 수입의 20%인 국고지원분만 중앙정부 지출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여부는 국가채무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에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도 건강보험 지출과 같이 중앙정부 지출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통계가 국가통계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통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에의 접근도 상대적으로 어렵고, 통계의 투명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건강보험과 관련된 수가 및 보험료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도 심의절차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기금화로 인한 문제나 단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화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통계의 문제나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과정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기반에 관하여서는, 본격적 부과체계 개편에 앞서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입원으로

서는 최근 담배가격 인상으로 증가한 담배부담금 재원을 확대 편입하는 것이다. 흡연의 건강위해도를 생각할 때 담배부담금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에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연계 방안이 될 수 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5-15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 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영 /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요금수준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재정부담 구조개편 방안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단지 요금 인상 결정구조의 변경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요금 인상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물 공급 재정체계 구축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상수도 사업의 특성과 영세적인 운영현황을 봤을 때,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성 효율화,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수장이 추가적인 생산량 확보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그 대상이 되는 광역화 우선순위 자치단체를 선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규모의 경제’ 즉 ‘추가적인 생산요소 투입을 통한 생산효율성의 크기’를 수치화하여 보여준 것이며, 향후 시나리오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시뮬레이션




B5변형/ 156면
2015. 12.

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 부분이 본 연구의 기여도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의 공학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 방식과는 차별화된 내용에 해당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의 성격을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 민간위탁 효과가 인건비 절감과 유수율 개선 면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나 그 밖에 생산여건 개선은

통한 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생산비 절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 시 인건비 절감 등의 생산비 절감 효과는 정수구입비와 같은 위탁과정에서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한 수도사업 통합 시에는 재정부담 면에서 정수구입비의 부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혹은 일반재정부담을 활용하는 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상하수도 사업의 정부간 재정부담의 틀은 유지하되, 상수도의 경우에는 광역화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지방채’ 방안을, 하수도의 경우에는 BTL을 포함한 민간투자 확대방안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총액한도제에서 상하수도 대상사업을 제외하는 지방채 활용방안’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상하수도 부분의 지자체 권한 부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보조금 제도의 개편방안으로 물 공급 관련 주무부처의 국고보조금 포괄보조사업화를 제안하고 있다. 다부처가 연관된 상수도(물공급) 및 하수도(물처리)는 유사 중복사업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상하수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을 재정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걸러낼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유인구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근거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5-16 『지방자치단체 물 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 RCT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오영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노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강희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새로운 재정사업이 충분한 사전점검 없이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급격하게 도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인 복지사업 등 사업의 정확한 편익을 추정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보고서는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RCT(Randomized Control Trial) 방식의 실험평가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소개한다.

II. RCT(Randomized Control Trial) 방법론 소개

RCT는 진실험 방식의 실험평가로서 사회실험, 현장실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운다. 이러한 RCT는 정책평가의 내생성(Endogeneity)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RCT에서는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동질적인 처치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처치집단에만 정책을 시행하여 정책처치 후에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통제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추정한다. RCT에서는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Randomization)을 시행한다. 그러나 현실 정책평가에서 무작위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는 준실험 방식의 평가가 많이 사용된다. 준실험 방식의 평가에는 사전사후비교법, 단순평균비법, 매칭법, 회귀불연속법, 이중차분법의 평가방법이 있다.

III. RCT의 국제적 동향

실제 정책평가에서 실험방식의 평가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RCT에 의한 정책평가가 활성화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Behavioral Insight Team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RCT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증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 base Evaluation)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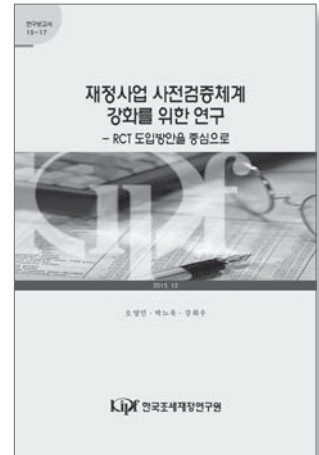
평가하기 위해 MIT에 J-PAL이 설치되었다. 특히 J-PAL은 많은 RCT 기반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RCT 관련 교육을 실무자에게 실시하여 과학적인 정책평가의 확산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IV. 우리나라의 RCT 현황과 적용 가능성 탐색

RCT는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RCT는 사전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사업의 편익을 추정할 수 없는 복지 및 교육사업에 시범사업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 전에 실험방식의 정책평가설계가 준비된 경우 사후평가에서도 적용가능하며, 정책평가 후 사업의 폐지나 변경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RCT가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분야로는 교육, 복지, 문화, 노동, 해외원조 사업 등이 있으며 SOC, 환경, 국방 등의 분야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RCT가 여러 정책분야의 사전사후평가에서 활용 가능할지라도 제도적, 윤리적 장애요인과 실험과정의 오류, 외적인 타당성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정책평가에서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V. RCT를 통한 실제 정책평가 설계 사례

RCT 또는 그와 유사한 준실험 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국내외 사례로는 희망리본사업과 미국 IES의 보충수업사례가 있다. 희망리본사업은 RCT가 완벽히 적용된 사업은 아니지만




B5변형/ 135면
2015. 12.

처지집단과 통계적으로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없는 비교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비교한 준실험적 방식의 평가사례이다. 해외사례로서 엄격한 RCT 평가방법론을 준수하여 진행된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의 보충수업 정책실험이 있다.

VI. RCT를 통한 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 도입 방안

RCT를 실제 정책평가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으로서 제도적인 요인이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CT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료공유시스템과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애요인이 해결되면 세밀한 RCT 수행체계에 대한 절차를 평가대상사업의 선정, 평가방법의 결정과 실행에 걸쳐 명확하게 규정



해야 한다. 또한 RCT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평가 관련 역량향상,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실험평가의 거부감 축소, 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의 환경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5-17 『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박노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오영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는 모니터링-주기적 점검-선별적 심층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적어도 제도적인 요소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1/2012년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에서 가장 우수한 요소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었는데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의 주요 요소와 의사결정 과정과의 연계 정도로 볼 때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시적 재정여건과의 연계성 미약, 기계적인 예산 삭감, 사업 개선사항 도출의 미약, 고위 의사결정자의 활용도 미약, 성과정보 수준의 개선 필요,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제도 운영, 다른 평가제도와와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 운영 목적과 제도가 성숙한 이후의 운영 목적이 다를

수 있으며, 제도 운영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던 재정성과관리제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분절화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서 보다 상위 수준의 평가와 세출구조 조정에 초점을 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도가 성숙해 지고 주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선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 노력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자체의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록하는 것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미시적 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제 개별 사업 수준에서의 변화도 점검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별 사업의 미시적 변화와 관련된 성과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과평가 결

과와 예산의 연계에 대한 연구와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사업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미시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다시 말해,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기획 및 관리 과정의 개선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미시적 실증분석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기존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도 상당히 도출되어 있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큰 목적인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사업 개선, 그리고 재원배분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과제로 도출하였다.

투명성과 책무성 관점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정보 공개 수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사업 담당자와 부처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대외적인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적정성과 고위 의사결정자의 성과관리체제 수립과 활용 정도에 대해 점검하였다. 사업 개선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받은 사업들의 개선 정도를 추적함으로써 개별 사업들이 평가 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점검하였다. 평가 결과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의 내용도 추적함으로써 일종의 벤치마킹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원배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결과의 예산편성에의 활용 정도



B5변형/ 125면
2015. 12.

를 점검한다. 성과정보의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단으로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은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일차적으로 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정도에 초점을 두고 기존 연구결과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라는 목적에 비추어 평가해 보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개발과 성과 정보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계로는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사업의 성과관리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설정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며 개선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간접비 배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생산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정보도 공개는 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포털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둘째,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 즉 사업의 성과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평가받은 사업들은 추후에 사업 결과의 개선도 이루어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심층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권고사항이 반영되어 사업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미흡 사업에 대한 원칙적 10% 이상의 예산 삭감뿐 아니라, 실제 사업의 성과정보, 모니터링체계 개선, 사업의 목표 달성도 개선 등이 관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경우도 개선 권고사항이 환류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비용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점검할 수는 없으나, 특정 유형의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효율성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세출구조조정의 목적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로서,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체 평가 대상사업 예산 규모로 보면 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평가 대상도 개별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이 아니고, 다부처 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체제도 없기 때문에, 예산의 전략적 재배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에는 적합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세출구조조정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한다면, 현행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정합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성과관리 및 평가의 단위로서 적합하도록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예산상에서의 개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 수혜자, 사업 목적, 수혜 조건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업 정보에 포함하고, 사업명을 임의로 바꾸는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분절화 유사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을 위해, 비용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따라 프로그램 단위의 원가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하위 수준의 원가정보가 필요하다. 원가정보의 유용성이 있는 사업이나 활동 유형에 대한 원가정보의 생산과 정보의 활용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여건의 악화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페널티 수준의 예산 삭감이 주된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사업의 우선 순위와 효과성에 근거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의 전략적 지출검토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5-18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의 요약 및 정책시시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박노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희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에 본격적인 재정관리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재정관리제도 개혁의 초점은 중장기적 시각의 도입, 총량적 재정 규율 강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 성과 중심의 재정관리, 재정정보의 통합적 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통해 중기적 시각을 예산편성 과정에 도입하고, 하향식 자율예산편성제도를 통해 재정의 총량적 규율 및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성과중심의 재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프로그램 예산구조 구축·발생주의 회계 도입·재정정보통합 관리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재정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자체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운영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제도는 적어도 제도적인

요소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재정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재정관리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총량적 재정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제기한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향식 자율예산편성제도 도입을 통해, 부처가 총량적 규율을 지키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이 신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실제 사업의 개선과 세출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됨으로써, 재정관리 관련 정보의 연계가 개선되었지만, 실제 업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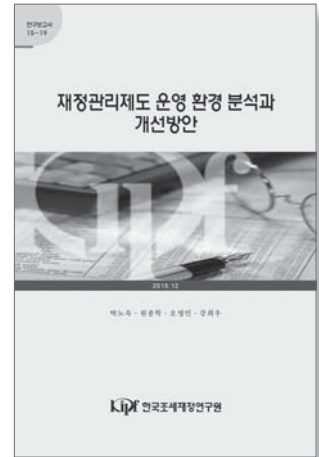
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발생주의 회계의 전면적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 자체의 성과에 대한 의문 증가와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운영 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의 재정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환경 자체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운영 환경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미흡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운영 환경의 개선은 정부 운영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의 틀은 도입되지만, 실제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기반의 변화는 수반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재정개혁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운영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한 운영 환경을 도출하고 개별 요소별로 진단을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재정관리제도가 재정의 유지 가능성, 재원의 합리적 재배분, 서비스 전달 개선 등의 목표에 있어서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운영 여건의 미비에 있다. 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여건으로서, 관계자들의 역량과 유인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았다. 역량은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역량과 생산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정부 내의 재정관리제도 관련 역량 강화 노력은 비체계적이고 미약한 경향이 있다. 채용을 통해 전문가를 뽑는 체제도 미약하고, 기



B5변형/ 118면
2015. 12.

존 공무원에 대한 재정관리 관련 교육도 미약하다. 당장의 실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정관리를 하나의 중요 전문영역으로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재정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미비하여 인사고과나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순환보직과 결합된 직업 공무원 시스템에서 재정관리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는, 제도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정보의 활용 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재정관리 전문성 함양에 대한 유인 제공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인력 운용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성보다는 행정 능력 중심의 현행 인력운용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된다.

재정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유인 문제도 중요하다. 주인과 대리인,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여러 상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고 사



업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성이나 유인의 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결과 중심의 재정관리제도가 추가되면, 형식적 순응에 그치는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유인 문제와 관련되어 중요한 주체의 하나는 정치인이다. 소선거구제로 대변되는 정치제도로 인해, 지역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인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재정문제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국회 내의 예산심의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정관리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경영시스템이므로, 고위 의사결정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고위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재정관리제도는 각 부처가 외부 요구에 대응하는 형식적 제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각 사업부처가 실질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게 되면, 양질의 정보가 생산되고 실제 자원배분과 사업 개선의 효과는 제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영역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관리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선별적이고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5-19 『재정관리 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발생한 보조금 규모 추정

최한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민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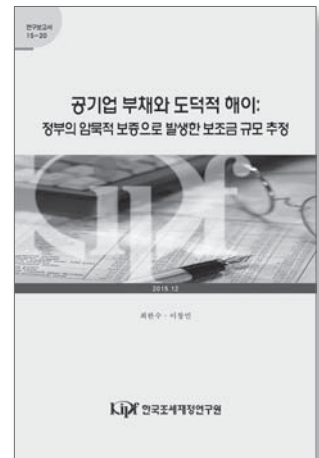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과다 부채문제를 도덕적 해이와 부정적 외부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정부의 보증에 대한 기대로 인해 유사한 조건의 민간기업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 기대로 인해 절감된 이자비용을 정부 보증에 따른 암묵적 보조금(혹은 외부화된 부채 비용)으로 보고 그 크기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기존 학계에서 개발된 신용 평가 모델과 실제 기업들의 채권 발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시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벤치마크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된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평균적으로 A0였다. 이는 실제 공기업 신용등급인 AA+와는 약 4등급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놀랍게도 추정된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민간기업 신용등급 평균보다도 낮았다.

두 번째, 추정된 공기업 채권의 만기수익률(다른 말로 공공기관 채권의 위험 정도)은 평균적으로 5.45%로 나타났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공

B5변형/ 105면
2015. 12.



업 채권의 만기수익률과의 스프레드를 구해보면 공기업은 평균적으로 약 1.76%p의 수익률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공기업의 회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해 이득을 본 금액은 총 약 6조 8,4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 해에 평균적으로 7,6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주어진 것이다.

이를 공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기타공공기관이 약 3조 4,900억원의 보조금을,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 약 1조 1,800억원, 준시장형 공기업이 약 1조 5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의 명시적 보증이 있는 공기업은 약 4조 4,000억원을, 명시적 보증이 없는 공기업은 약 2조 4,4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이 1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같은 조건의 민간기업에 비해 약 150만원 정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이 채권을 통해 1억원의 투자자금을 조달할 경우 정부는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묵시적 보조금(혹은 사회적 비용)은 그 크기에 있어 개별 기업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공기업의 유형이나 직접적 재정보조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공기업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모든 공기업이 단지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조달과정에서 민간기업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과다 부채문제는 그 사회적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묵시적) 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4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4가지 대안은 그 세부 내용에 있어 각기 차이가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것은 정부의 (묵시적) 보증에 의해 외부에 전가되고 있던 공기업의 부채 발행 비용을 내부

화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대안은 교정세 부과를 통한 내부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최적 교정세의 크기를 시장에게 맡기는 방식을 소개할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정부가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공기업에 주어진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대안은 암묵적 보조금을 정부가 공기업으로부터 배당의 형식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방식으로 측정된 보조금의 규모를 정부가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배당의 최저한도로 보고 배당 결정 시 최소한 이만큼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식은 보조금을 정부가 실제로 가져가는 대신, 채권발행을 자금을 조달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과정에서의 추정된 보조금을 비용항목에 반영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5-20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검사·검증기관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이원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하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당시에는 경제발전을 선도할 민간부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정부 주도의 발전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대리하여 공기업이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 자원확보 및 공급 등을 주도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도 각종 공공기관이 설립되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은 지속되었다. 검사·검증형 공공기관들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설립되어 관련 분야의 사업을 독점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검사·검증 기능은 일제 강점기 중의 근대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나 자생적으로 발생하였고, 초기에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 의해 시장질서가 흔들리면서, 1970년대를 전후로 정부가 검사·검증사업을 공영화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이후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었고, 현재 상당수의 검사·검증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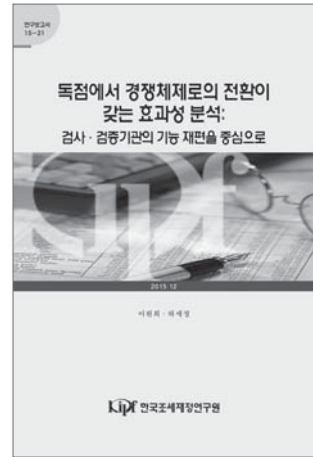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역할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늘 제기되고 있다.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검사·검증기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시장참여 적절성과 미래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검사·검증기관의 시장 참여는 시장 미형성에 따른 국가의 개입에 근거하였으므로, 국가발전단계상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과 국가의 역할 분담은 국가발전의 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국가가 모든 공익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며, 2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을 독점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3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갖추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선수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검사·검증기관은 상당수가 3단계에서 활동 중이다. 현재보다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제대로 기능한다면,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은 직

접적인 시장참여를 지양하게 되지만,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2단계로의 회귀를 검토할 수도 있다. 물론 시장의 기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회귀 가능성과 같은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경쟁 도입 이후 시장과 공공기관의 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시장참여에 대한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쟁 도입의 효과를 1) 공공기관의 성과 및 효율성 측면, 2) 전체 검사·검증시장의 성과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경쟁 도입에 의한 검사·검증 공공기관의 성과는 경영성과 지표상 안전성 지표의 평균점수 추이와 고객만족도 추이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기관들의 안전성 지표 평균점수는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이들 기관이 안전성 관련 계량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객만족도도 조사기간 동안 경쟁을 도입한 검사·검증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증가 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사·검증시장의 성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검사·검증기관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이 대부분이므로 관련 안전지표상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관리시장과 관련된 지표는 폭발사고통계이다. 경쟁 도입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려면, 경쟁을 도입한 기관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경쟁 도입의 전후 시기에서 각각 비교하여야 하나, 경쟁 도입의 시기는 주로 1990년대로 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불가피하게 2000년 이후 각 사고의 추이만을 관찰하였다. 정량적 자료의 한계를

B5년형/ 169면
2015. 12.



보완하기 위하여 검사·검증기관 및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사업자 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으로 경쟁 도입이 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고별 시계열적 추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해, 민간의 시장참여에 의해 사고의 변동성을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식별되었다. 첫째, 민간이 시장에 참여하는 분야에서 민간 간의 경쟁이 과도한 경우, 서비스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이나 고객유치 경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실검사와 같은 품질 저하가 동반되었다. 둘째, 민간사업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 진출하기를 꺼려하므로, 낙도·산간과 같은 오지에는 민간에 의한 검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전기안전공사는 전체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4.6%를 수행하지만, 민간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오지에서는 업무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경쟁 도입으로 검사·검증 공공기관은 안전성

과 고객만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민간사업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검사품질과 검사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검사·검증시장을 공공기관에서 독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가 검사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미 검사 시설 및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해 투자한 민간사업자와 종사자들을 고려하면, 과거 방식에서의 회귀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시장참여를 지양하고, 민간사업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전담해야 한다. 인력, 기술력, 업무의 핵심여부의 관점에서 현행처럼 지자체에 의한 감독보다는 공공기관의 전담 또는 공동의 감독이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자격자 관리, 기술·연구, 교육과 같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이 공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상 안전성 내지는 공공성 관련 지표의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민간의 검사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사·검증기관이 선수로서 검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시장에서 참여하는 한 경쟁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방된 시장에 한하여 민간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요건은 없고, 수수료 책정 등에서 민간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성과 주무부처와의 유대관계로부터 오는 비공식적인 우위를 공공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도 지양해야 할 것이고, 주무부처의 감독도 필요할 것이다.

검사·검증기관 중 상당수는 수지 차 보전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수익 추구에 매몰되어 공적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상실을 방지하는 장치 이상을 벗어나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정교한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대부분의 기관이 출연금의 형태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엄격한 예결산 관리와 보완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지 차 보전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해마다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할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지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결산잉여금 처리규정이 있는지 검토하고, 과도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편성하도록 경영평가상에서 업무효율 계량지표를 사업수행 효율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5-21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의 요약 및 정책시시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정성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완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의 재정지출규모 및 국가 간 재정상황에 대해 국제비교가 가능한 정부기능분류(COFOG: 이하 COFOG)의 산출과 그 활용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부기능분류(COFOG)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부재정통계(GFS)의 한 요소이다. 최근 다양한 거시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GFS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기능분류인 GFS 기준 COFOG의 공식작성을 위한 지표 산출대안과 그 활용대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부기능분류(COFOG-K) (안)을 제안하였다.

정부기능분류는 대표적으로 정부재정통계(GFS)와 국민계정(SNA)기준의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기능분류를 정부 측(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재정통계(GFS)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IMF에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에서는 국민계정체계(SNA)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OECD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기능분류는 일반정부 단위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정부 이외의 공공부문까지 총량적으로 합산한 기능별 재정지출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기능분류는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자료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을 포괄하여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COFOG 지표를 작성·보고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 지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한 결산자료와 현금주의 기준으로 집계한 결산자료 간의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크다. 그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표 집계과정에서의 불일치 등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별 재정지출 지표를 통일시키고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치유하는 대안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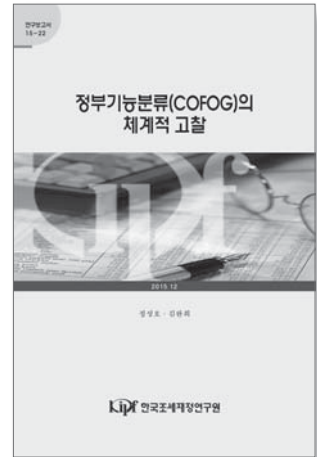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론에 해당하는 제Ⅱ장에서는 COFOG의 개념과 특징, 유사분류 체계,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COFOG 활용사례에 관해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중

양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과정을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COFOG 지표산출 방안을 논의하는데, 집계단위, 인력운영비 등의 배분방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COFOG 지표 산출 방식의 변경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COFOG-K(안), 재정지출추이의 분석과 기능별 지출의 국제비교 등 COFOG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로 마무리한다.

제Ⅱ장은 COFOG의 개념과 특징에 관해 논의한 후 COFOG과 유사한 분류체계를 설명하면서 주요한 차이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10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된 COFOG과 16개 분야 69개 부문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예산체계, 12개 분야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 COFOG에서 보건(707)과 사회보호(710)를 합해서 산출한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등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와 주요국의 COFOG 활용사례를 검토하였는데, 특히, 유럽공동체(EU), 호주, 미국, 캐나다의 활용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활용대안을 탐색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과정을 논의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과정이 어떻게 불일치하는지 등 다양한 한계를 설명하였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경우 비영리공공기관을 주된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비영리공공기관의 총 지출을 기능(일반공공행정(701)~사회보호(710))별 지출규모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안분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비 등은 일반공공행정(701)으로 분류되고 있어 과다 집계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COFOG 지표 산출대안을 논의



B5변형/ 247면
2015. 12.

하는데, 집계단위, 인력운영비 등의 배분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지표는 이호조(e-hojo)시스템에서 자동산출되지만 인력운영비가 일반공공행정(701)으로만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를 COFOG 10개 기능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산출 결과 인력운영비가 대구시청의 경우는 9.3%, 부천시의 경우 27% 과다 집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인력운영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기능별 분류의 체계와 배분에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일치와 집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방식의 변경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주요국의 활용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요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COFOG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정부기능분류인 COFOG-K(안)를 제안하였다. 제안의 주요

한 내용은 GFS의 COFOG에서 사회보호(710)의 노령항목 중 공적연금체계의 관리를 위해 공적연금 항목을 분리하여 별도의 분류기준인 공적연금(711)으로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더불어 EU의 재정지출추이 분석 활용 방안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고, 기능별 지출의 국제비교 등 COFOG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정합성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COFOG의 지표산출 및 공식발표를 제안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대안인 COFOG-K(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지표 산출과정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가진 COFOG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결산정보인 COFOG 지표의 국제 비교는 기능별 재정배분과 관련된 정부 재정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COFOG의 내부 관리적 활용을 위해 COFOG-K(안)를 제안한다. 최근 사회현상을 반영해서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호(710)분야 중 노령(7102)부문에서 공적연금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내부관리 목적의 COFOG-K(안) 지표를 활용하여 기능별 재정지출추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재정정책 수립 및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원가정보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정

책결정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공적 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회보호(710)분야의 정부지출 통계는 복지 관련 정책결정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시사점 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식적인 COFOG의 통계작성을 전제로 현행 예산 프로그램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OFOG 통계 산출 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COFOG 지표를 작성할 경우 중앙정부는 '부문'이나 '프로그램' 단위로 COFOG 지표를 집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부문' 단위의 COFOG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통계의 작성 단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로 개편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COFOG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부문' 단위에 기초한 COFOG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산편성과 결산단계를 연계할 대안으로 부문코드(등급코드 5자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으로 COFOG 지표를 산출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경우는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몇 가지 오류는 존재하지만 이호조(e-Hojo)시스템에서 COFOG 지표가 자동 집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디브레인(d-Brain)시스템에서 자동 집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5-22 『정부기능 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기 획

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재정패널 조사자료의 특성

- 가계동향조사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재정패널DB사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조사(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해도 함양을 목적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해 재정패널자료가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들어가는 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는 올해로 9차년도 조사를 맞이하는 종단조사이다. 전국 5,000여 가구와 소득활동을 하는 8,000여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사는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의 소득과 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와 복지현황 등을 포괄하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른 가구조사와 달리 조세 및 재정정책 분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소득과 납세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개인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납세신고자료를 전산화하여 조세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 자료이다.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납세자의 의식을 파악하는 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계획이어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패널조사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해도 함양을 목적으로 본 자료와 유사한 조사문항을 가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패널자료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을 통해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자료 이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활용도 높은 재정패널조사자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 조사 설계

재정패널조사와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적 기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을 조사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표본조사이다. 표본조사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설계하는데, 조사 설계의 차이는 결국 조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 설계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 조사 설계 비교

항목	가계동향조사	재정패널조사
조사기관	통계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종류	횡단조사	종단조사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구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 변화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소득, 소비, 부채, 자산, 복지, 조세 정보를 파악하여 조세 및 재정, 복지 정책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조사모집단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본	약 9,000가구	5,634가구
조사연혁	1963년~현재	2008년~현재
조사주기	매월	1년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 자계식(수입, 지출) 면접타계식(가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타계식 조사 행정자료 수집
활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 및 복지 정책 분석

출처: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2011), 「재정패널조사 사용자 안내서」(2015)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횡단조사 방식의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사 중 하나이다. 가계동향조사가 시작된 목적은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품목 파악을 통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매월을 조사주기로 응답자가 직접 가계부 형식의 조사표에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하는 조사방식을 택하여 수집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응답자의 회상에 의한 응답의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짧은 조사주기를 갖는 조사에 적합한 조사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조사방식은 응답자의 피로도가 높아 조사를 거절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표본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표본 탈락에 따른 영향력이 감소되도록 표본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대상의 규모를 약 9,000가구로 설정하고, 표본의 교체가 가능한 횡단조사로 조사를 설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가구의 재정상태를 파악을 위해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동일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동태 분석에 적합한 패널조사로 설계되었다. 패널조사는 고정된 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조사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주기마다 동일한 문항을 반복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패널조사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른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패널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표본의 규모가 횡단조사에 비해 작고, 조사주기를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하여 조사하게 된다. 재정패널조사의 표본 규모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작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조사주기 또한 1년으로 긴 편이다.

재정패널조사와 같이 긴 조사주기를 갖는 조사들은 일반적으로 가계부 자체식 조사방식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추적조사로 인해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방식으로 인한 피로도까지 높아진다면 조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에서는 패널조사에 적합한 면접 타계식 조사방식을 사용하고, 동시에 회상에 의한 응답 왜곡의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재정패널조사에서 수집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주요 조사항목인 소득과 개인의 소득공제 현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소득증빙자료인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서류의 정보는 다른 조사항목과 함께 전산화되어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분석에서 보다 정확한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 부분은 재정패널자료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8차년도(2014년 귀속) 소득증빙자료 수집률

(단위: 건 %)

구분	해당 case	제출건수	수집률	[참고] 1차년도 귀속서류 수집률	
전체 유효표본 가구	4,819	1,928	40.0	14.0(703/5,014)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57	1,928	65.2	26.2(703/2,612)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3,064	1,876	61.2	26.8(658/2,386)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901	377	41.8	10.8(78/722)

재정패널조사에서 수집한 행정자료의 수집비율은 8차년도(2014년도 귀속) 기준 40%이다. 이 수치는 조사에 성공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들 가구 중에는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없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기준을 변경하면 65.2%의 가구에서 서류를 제출한 셈이 된다.

재정패널조사에서 소득증빙자료를 수집한 것은 1차년도부터인데, 〈표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때의 소득증빙자료 수집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14% 수준이었다. 이렇게 초기 수집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소득증빙자료 제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최근에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가구들은 존재하지만, 조사 초기에는 조사와 면접원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거절한 가구들이 더 많았다. 이로 인해 수집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침에 대한 꾸준한 안내와 조사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서류 제출 가구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매년 증빙서류 수집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 주요 조사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패널과 가계동향자료의 주요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정패널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중치(재정패널자료는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본격적인 결과 분석에 앞서 두 조사에서 추출된 표본 가구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두 자료의 조사모집단 자료로 활용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자료로 두고 가구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1번씩 진행되는 전국단위의 인구조사로, 표본조사의 주요 조사모집단으로 사용되는 자료이다. 재정패널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2005년 자료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였고, 3년을 주기로 표본 추출을 하는 가계동향조사는 표본 추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였다. 본절에서는 2010년¹⁾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두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가구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계동향자료에서 조사된 가구들은 기준자료와 비교할 때 여성 가구원의 비율이 높고, 가구원들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기준자료보다 1.6세가량 낮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20대 이하 가구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평균연령이 낮아 전체 평균연령이 낮아진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20.4%로 기준자료보다 4%p가량 낮은 반면, 4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36.5%로 6.5%p 높았다. 가구원 중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 15~64세의 경제활동가능인구만 추려서 살펴보면, 1가구당 경활가능 가구원이 2명이 존재하는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경활가능인구는 기준자료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기준자료와 비교해볼 때 가구원들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비슷한 모습이었으며, 가구원들의 평균연령은 36.4세로, 기준자료보다 1.4세 낮고, 가계동향자료보다는 0.2세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자료와 동일하게 재정패널자료에서 조사된 20대 이하 가구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평균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60대 이상 가구원들의 연령은 재정패널자료에서 약 1세가량 높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패널자료에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패널종단조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종단조사의 경우 동태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하여 조사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연령 증가가 표본의 특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횡단조사자료에 비해 고연령층의 분포나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재정패널자료의 가구당 경제활동가능인구에서도 나타났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기준자료보다 가구원 수나 경활가능인구 수는 많지만, 이 중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가구원들의 비율은 낮았는데, 가구당 68.1% 수준

1) 인구주택총조사의 2015년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었다. 이 수치는 기준자료보다 약 5%p 낮고, 가계동향자료와 비교해도 0.8%p가 낮았다. 또한 경활가능인구가 전혀 없는 가구의 비율이 12.2%로 높고, 이 가구들의 평균연령도 높게 나타나(가계동향자료 72.5세, 재정패널자료 73.3세), 자료의 상대적 고령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횡단조사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결과 비교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3〉 조사대상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	재정패널
성별	남자	48.9	47.1	48.3
	여자	51.1	52.9	51.8
연령	(평균)	(37.8세)	(36.2세)	(36.4세)
	20대 이하	35.9(15.5세)	37.9(13.7세)	37.6(14.2세)
	30대	16.6(34.7세)	16.3(34.9세)	18.0(34.6세)
	40대	17.5(44.5세)	18.1(44.3세)	16.6(44.3세)
	50대	14.0(54.0세)	12.6(53.9세)	12.7(53.8세)
	60대 이상	16.0(69.8세)	15.1(69.4세)	15.2(70.6세)
가구원 수	(평균)	(2.7명)	(2.7명)	(2.8명)
	1인 가구	24.2	20.4	17.5
	2인 가구	24.6	21.8	22.3
	3인 가구	21.3	21.4	25.1
	4인 가구	30.0	36.5	35.2
	1가구당 경제활동 가능인구	(평균)	(1.9명)	(1.9명)
0명	11.1	11.3	12.2	
1명	25.3	20.9	18.4	
2명	36.4	41.0	41.4	
3명	16.7	16.5	16.0	
4명 이상	10.5	10.2	12.0	
총 가구원수 대비 경활가능인구		72.7	68.9	68.1

한편, 학력과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구원 전체 자료에는 미취학 아동이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대상이 된 경활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가구원 전체의 평균연령에 비해 약 2~3세가량 높고, 성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남성의 성비가 조금 더 높아진 편이었다.

먼저, 가계동향자료에서 나타난 경활가능가구의 최종학력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등학교 졸업 가구의 비율이 42.8%로 기준자료와 비교해 0.6%p 높았으나, 대학 졸업 이상 가구원들의 비율이 낮고, 중학교 졸업 이상 가구원들의 비율이 많아 전반적인 학력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기준

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p 높고,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중학교 이하 졸업 가구원의 비율이 낮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들은 가장 많아 세 가지 자료 중 고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가계동향자료가 임금근로자가 많은 자료였다면, 재정패널자료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기준자료보다 2%p 낮고 무직자의 비율이 4%p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경활가능인구 중에서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다른 자료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경제활동가능인구(만 18세~64세) 특성

(단위: %)

구분		경제활동 가능 가구원					
		인구주택	가계동향	재정패널			
평균연령		(39.8세)	(39.5세)	(38.8세)			
성별	남자	49.4	47.08	48.9			
	여자	50.6	52.92	51.1			
최종 학력	무학	1.0	1.2	0.8			
	초등 졸업	7.2	7.6	6.2			
	중등 졸업	13.9	15.5	12.4			
	고등 졸업	42.2	42.8	41.4			
	대학 졸업	32.6	30.0	36.6			
	대학원 졸업	3.1	2.9	2.6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43.2	47.2	28.5	41.2	36.6
		임시직		13.5	4.6		
		일용직		5.2			
	자영업자	고용원 있음	4.8	3.5	2.9		
		고용원 없음	9.7	9.3	11.9		
	무급가족종사자		4.0	2.0	1.8		
	무직 및 기타 ¹⁾		38.2	38.0	42.2		

주: 1) 가계동향자료의 경우 종사상지위 중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무직 및 기타"로 코딩하고 있다. 다른 자료는 모두 "무직"을 의미한다.

나. 가구 소득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패널과 가계동향자료의 주요 항목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살펴볼 항목은 소득이다. 재정패널자료에서 소득을 조사할 때는 일정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의 정의에 맞는 수입금액을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가계동향자료에서는 가구에 유입되는 모든 수입금액을 조사한 다음 정의에 따라 항목화하여 데이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조사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각각 조사에서 측정된 수입정보는 소득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전산화되며, 이렇게 측정된 가구의 총소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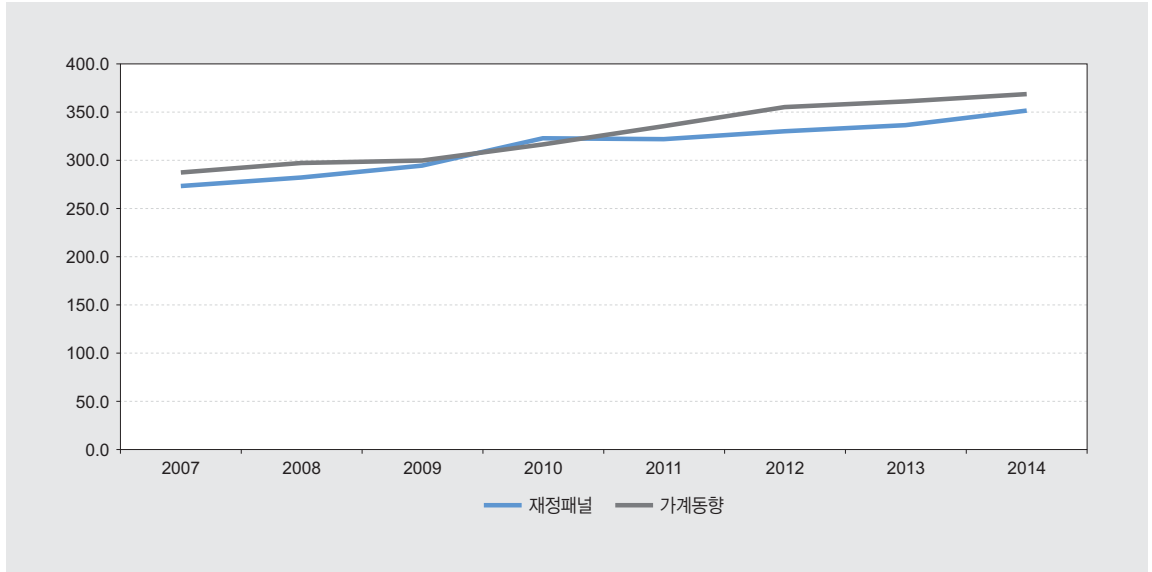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이 그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재정패널자료의 소득수준이 더 낮게 조사되었고, 2009~2010년을 제외하면 최근에도 그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단순비교 방식은 두 조사의 특성과 조사항목의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정확한 비교라고 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두 자료에서 측정하는 소득항목은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조사방식 또한 종단조사와 횡단조사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5>와 같이 분석항목을 세분화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상소득은 총소득 항목 중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비경상소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시금이나 퇴직금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가계동향자료에서는 재정패널자료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산의 변화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키고 있어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경상소득으로 정의를 일치시킨 후 비교하면 두 자료의 소득금액 차이는 평균 약 13.7만원에서 9.1만원으로 좁혀진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재정패널자료는 동태분석을 목적으로 조사 설계한 패널종단방식의 조사자료이기 때문에 표본의 연령의 증가 효과가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연령조건하에서 소득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있는 가구들로 대상을 좁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의 “2-1. 경활가구”와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으며, 이렇게 대상을 세분화하면 평균 소득의 차이가 6만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을 보면 2010년의 경우 두 자료 간 소득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약간 더 커진 결과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 보정기준자료의 변경(2005년 → 2010년), 증빙서류 수집률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 추후의 분석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림 1]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자료의 월평균 총소득 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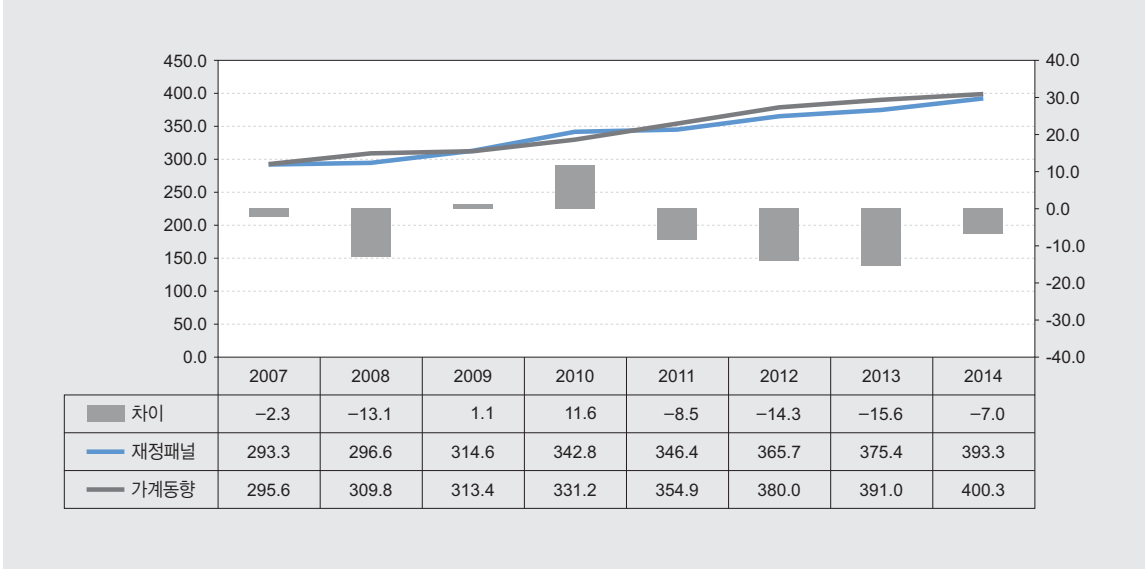
<표 5>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자료의 월평균 소득비교

(단위: 만원, %)

구분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정패널								
1. 총소득	273.2	282.2	294.7	323.5	322.6	330.6	337.4	351.3
2. 경상소득	268.3	270.8	286.7	311.3	311.7	320.4	327.9	340.7
2-1. 경활가구	293.3	296.6	314.6	342.8	346.4	365.7	375.4	393.3
2-2. 가중치미부여	307.0	316.7	329.9	357.1	371.8	391.2	404.0	423.3
2-3. 상용직가구	-	-	398.0	426.3	449.1	484.0	484.5	498.2
가계동향								
1. 총소득	287.1	297.2	300.2	317.7	336.3	355.6	361.8	369.2
2. 경상소득	272.9	283.4	286.2	303.8	322.3	340.6	347.3	354.0
2-1. 경활가구	295.6	309.8	313.4	331.2	354.9	380.0	391.0	400.3
2-2. 가중치미부여	292.7	307.5	311.2	328.0	346.9	367.5	380.2	388.5
2-3. 상용직가구	-	-	407.8	417.4	434.3	457.4	467.2	479.4

[그림 2] 경제활동가능가구 월평균 경상소득 추이와 소득차이 변화

(단위: 만원)



다만,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과를 생산하는 것은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본고에서 분석하는 모든 결과는 가중치(재정패널자료는 횡단면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다. 그러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와 부여하지 않은 결과에는 차이가 있어 연구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표 5〉의 “2-2.가중치 미부여”)와 비교해 재정패널자료는 평균 21.6만원 더 낮고, 가계동향자료는 6.7만원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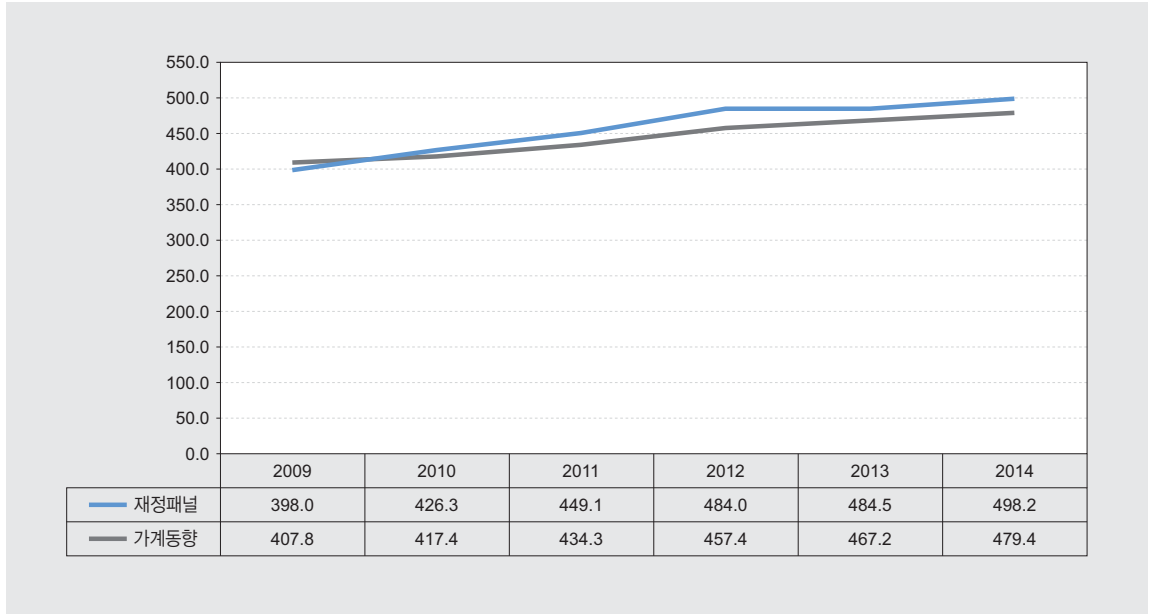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상용직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이다. 재정패널자료는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수집한 소득정보를 전산화하고 있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정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모든 가구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간에 제출물의 차이가 있어²⁾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분석대상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절에서는 소득증빙자료 제출률이 높게 나타난 근로소득자 집단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³⁾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해 경상소득을 비교하였다.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2007~2008년 결과를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두 자료의 경상소득은 그동안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상소득이 전반적으로 가계동향자료보다 높게 나타나고, 소득의 차이는 평균 9.1만원에서 1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2) 8차년도 기준 근로소득자의 증빙서류 제출률은 61.2%이었고, 종합소득자는 41.8%이었다.

3) 가계동향자료에서는 1998~2008년간 종사상지위를 9개의 코드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는데, 사무종사자 코드에서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을 함께 조사하여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추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한 2009년부터 진행하였다.

[그림 3] 상용직가구 월평균 경상소득 추이

(단위: 만원)



앞서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경상소득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소득을 분위별로 나누어 계층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분위는 2014년을 기준으로 10분위의 소득계층을 나누었다. 그 결과, 1~9분위에서는 재정패널자료의 경상소득이 더 낮게 나타났고, 10분위에서는 재정패널자료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재정패널자료에서는 9분위와 10분위의 소득차이가 1.7배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여 소득 상위 10%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계동향자료와 비교해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보고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표본 추출방식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설계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극히 적거나, 매우 많은 가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의 표본 추출로는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을 얻기가 힘들었으며,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가구들의 경우 사회조사에서의 표본 탈락률이 높아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 표본 추출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분석에서 필요한 특정 계층의 가구들이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탈락률을 감안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들이 과대 표집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위에 따른 경상소득의 차이는 표본추출

4) 재정패널자료의 특징적인 표본 추출 과정은 통계적 추출기법을 준수하여 무작위로 실행되었으며, 추후 가중치 보정에 따라 보정하였기 때문에 재정패널자료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들의 경우 이러한 집단들에서 조사 탈락이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패널자료와 결과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재정패널자료에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자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징에 의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표 7>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고령가구나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사가 진행될수록 마모되어 과대추출에 따른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2014년 소득분위별 월평균 경상소득 규모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재정패널(s.d)	39.7	83.2	130.6	181.2	238.0	300.7	373.2	461.7	588.3	1012.1
	(0.68)	(0.63)	(0.68)	(0.75)	(0.90)	(0.76)	(1.07)	(1.30)	(2.14)	(30.41)
가계동향(s.d)	39.7	99.8	165.1	231.4	291.5	349.5	410.6	484.7	594.1	875.7
	(0.58)	(0.56)	(0.60)	(0.58)	(0.51)	(0.55)	(0.59)	(0.83)	(1.31)	(7.23)

<표 7> 2014년 재정패널자료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재정패널	1분위	2분위	5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주 연령(세)	70.3	65.6	50.6	46.2	48.6
가구원 수(명)	1.4	1.7	2.5	3.5	3.6

이번에는 경상소득에 포함되는 세부 소득항목을 살펴보자. 2014년을 기준으로 경상소득에 포함되는 세부 소득항목의 비중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50%가 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재산소득 순이었다. 특히 재정패널자료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분석대상자를 경향가구로 조정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표 8> “2. 경향가구대상”) 근로소득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가계동향자료에 비해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았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더욱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10분위, 그리고 중간계층인 5분위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예상과 같이 1분위에서의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작고, 10분위에서 가장 높았는데, 재정패널자료에서는 특히 사업소득의 비중이 가계동향자료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즉, 재정패널자료에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분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재산소득의 경우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재정패널자료의 재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재산소득부터 응답하도록 한 재정패널자료의 조사지침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8〉 2014년 경상소득 중 세부 소득항목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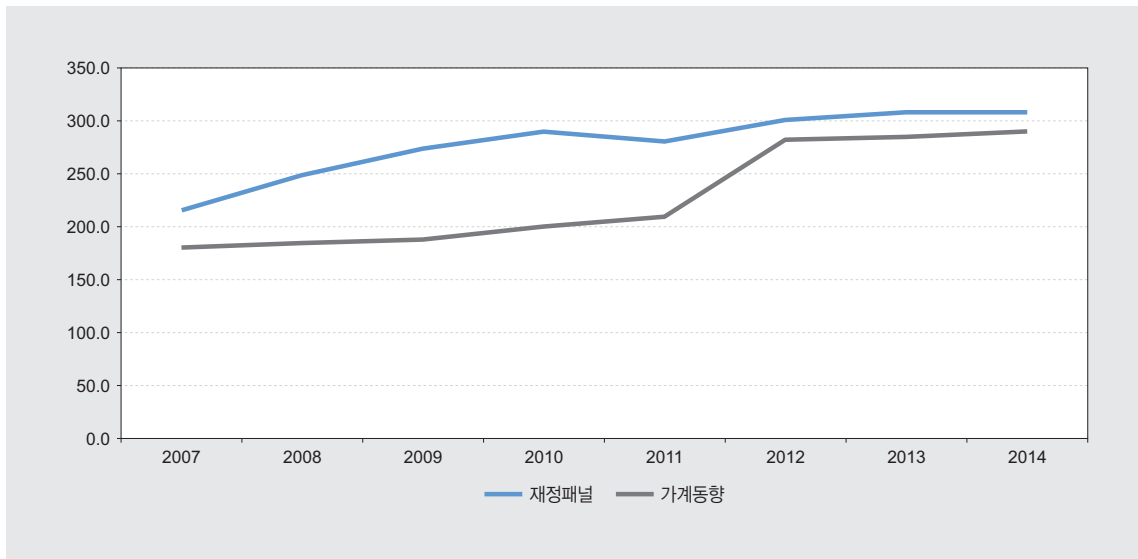
구분 \ 소득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재정패널					
1. 전체가구대상	54.7	22.1	0.7	14.7	7.8
2. 경찰가구대상	65.3	22.9	0.6	7.9	3.3
3-1. 소득1분위	9.3	14.1	1.4	51.8	23.5
3-2. 소득5분위	58.6	25.3	0.8	10.4	5.0
3-3. 소득10분위	75.2	19.6	0.6	3.8	0.8
가계동향					
1. 전체가구대상	57.7	19.6	0.6	12.9	9.2
2. 경찰가구대상	66.0	20.9	0.4	6.5	6.1
3-1. 소득1분위	15.5	7.3	1.5	52.3	23.4
3-2. 소득5분위	62.3	24.9	0.4	6.8	5.7
3-3. 소득10분위	75.2	19.8	0.4	1.8	2.8

다. 가구 지출

가구의 지출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강점을 갖는 자료는 가계동향자료이다. 조사의 목적이 지출항목별 현황 파악에 있기 때문인데, 세분류를 기준으로 370여개의 변수(2014년 기준)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사 목적이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 파악에 있는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80여개의 변수(8차년도 기준)로 소비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두 자료에서 조사하는 지출항목의 수는 현저히 다르지만 두 자료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재정패널자료가 가계동향자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COICOP)에 기준하여 조사문항을 설계했기 때문이며, 적은 문항으로 조사하지만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조사지침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싶다면, 가계동향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재정패널자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럼 실제 지출의 결과값에는 두 자료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결과를 살펴보고 하겠다.

[그림 4]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자료의 월평균 총지출 변화

(단위: 만원)



먼저, 가구에서 사용된 모든 지출의 금액을 합산한 총지출금액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패널자료의 지출금액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지침 차이에 따른 영향력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출항목에 포함되는 상세 조사지침이 비슷한 항목으로 다시 합산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본절에서는 지출의 유형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 포함되는 상세 항목은 <표 9>와 같다.

<표 9> 지출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교통
	주류 및 담배	통신
	의류 및 신발	오락·문화
	주거 및 수도광열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음식·숙박
	보건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세금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기부금)
	사회기여금(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민간보험료

지출에 대한 정의를 일치시킨 후 두 자료를 비교한 결과, 소비지출의 경우 2차년도 이후로 재정패널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조사가 진행될 수록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였다. 소비지출에 대한 두 자료간 금액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으나, 재정패널조사에서 매년 문항의 정교화를 통해 상세한 지출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비소비지출항목 중 민간보험료의 경우 가계동향자료에서는 소비지출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비소비지출로 정의하여 그 규모를 비교하여 본 결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보험료의 조사 정의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 지출액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인 지출비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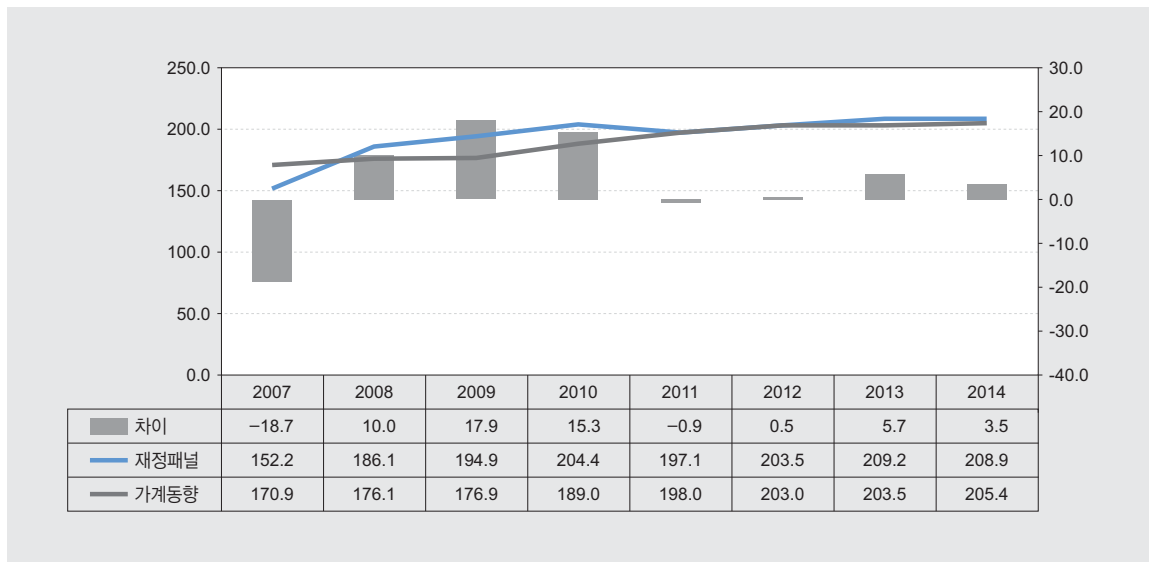
〈표 10〉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자료의 월평균 지출비교

(단위: 만원)

구분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정패널								
1. 소비지출	152.2	186.1	194.9	204.4	197.1	203.5	209.2	208.9
2. 비소비지출	51.0	51.5	55.7	61.4	60.7	67.1	72.2	69.9
가계동향								
1. 소비지출	170.9	176.1	176.9	189.0	198.0	203.0	203.5	205.4
2. 비소비지출	52.8	54.3	55.9	61.2	66.0	70.7	74.1	76.7

[그림 5] 경제활동가능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추이와 차이 변화

(단위: 만원)



다음으로 지출분위별 규모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소비지출에 있어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재정패널자료의 지출규모가 더 작았으며, 8분위부터 최고지출분위인 10분위까지의 소비지출규모는 재정패널자료에 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10분위 집단의 소비지출규모는 가계동향자료의 1.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표 6>에 이어 지출에서도 상위 10% 집단의 지출규모가 가계동향자료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재정패널자료는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어서 조사대상가구들 간의 차이가 큰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1> 2014년 지출분위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재정패널(s.d)	35.3	66.2	98.3	130.5	160.4	198.2	236.3	281.8	342.3	540.0
	(0.52)	(0.41)	(0.46)	(0.43)	(0.46)	(0.5)	(0.53)	(0.65)	(0.99)	(7.39)
가계동향(s.d)	44.6	79.6	111.4	142.3	172.2	203.4	237.4	276.3	328.5	458.8
	(0.38)	(0.29)	(0.27)	(0.27)	(0.26)	(0.29)	(0.34)	(0.39)	(0.66)	(3.67)

지출규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부 지출항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 그 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식료품비였다. 이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문항의 정교화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응답하는 문항은 여러 번의 회상에 의하여 응답하여 정교화된 응답을 얻을 수 있으나, 단순화된 문항으로 조사하는 경우 정교화 과정이 생략되어 실제 금액과 왜곡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식료품비가 그 적절한 예가 되는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식료품비에 대한 응답을 무려 147개의 항목으로 나눈 반면,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식료품비를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반면, 가사서비스비, 이미용비, 기타서비스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상품항목에서는 재정패널자료가 더 낮은 지출규모를 보였는데, 이러한 항목에는 일시적이거나 지출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비나 기타개인용품구입비 등이 그것인데, 산후조리비는 보건의료비의 항목에 녹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개인용품구입비는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항목이어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 12〉 2014년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 규모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등	보건
재정패널	평균	43.3	1.9	11.2	22.1	5.7	10.8
	(s.d)	(28.9)	(4.2)	(12.4)	(28.8)	(26.6)	(21.1)
	비중	20.7%	0.9%	5.3%	10.6%	2.7%	5.2%
가계동향	평균	30.9	2.5	14.5	25.1	9.0	15.0
	(s.d)	(16.3)	(3.5)	(14.7)	(25.3)	(17.5)	(18.8)
	비중	15.0%	1.2%	7.0%	12.2%	4.4%	7.3%
차이		12.4	-0.6	-3.3	-3.0	-3.3	-4.2

구분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재정패널	평균	27.6	14.7	12.5	23.7	31.8	4.4
	(s.d)	(28.0)	(10.4)	(0.0)	(0.0)	(0.0)	(0.0)
	비중	13.2%	7.0%	6.0%	11.4%	15.3%	2.1%
가계동향	평균	19.7	12.7	12.6	22.5	28.9	12.0
	(s.d)	(16.4)	(9.1)	(0.0)	(0.0)	(0.0)	(0.0)
	비중	9.6%	6.2%	6.2%	10.9%	14.1%	5.8%
차이		7.8	1.9	-0.1	1.2	3.0	-7.5

마지막으로 비소비지출은 지출분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8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비소비지출액이 재정패널조사에서 작게 나타났고, 5분위와 9분위에서는 약 15만원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기부금 지출(〈표 14〉)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쳤는데, 10분위와 8분위의 경우 민간보험료 지출이 높게 나타나 전체 비소비지출 규모에서 가계동향자료와의 차이가 상쇄된 모습을 보였다.

〈표 13〉 2014년 지출분위별 월평균 비소비지출 규모

(단위: 만원)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재정패널											
전체 (s.d)		4.1	12.2	27.7	43.0	52.8	77.3	88.9	112.7	115.2	165.1
		(0.45)	(0.83)	(1.25)	(1.92)	(1.83)	(2.25)	(2.72)	(5.36)	(2.97)	(5.27)
경상세		0.5	1.1	2.0	3.1	3.3	6.6	7.1	13.1	11.8	28.7
		(0.09)	(0.11)	(0.26)	(0.52)	(0.32)	(0.95)	(0.98)	(1.28)	(0.96)	(2.48)
사회보험료		1.1	2.9	8.3	11.8	16.0	22.0	25.6	30.8	34.5	46.1
		(0.18)	(0.26)	(0.48)	(0.64)	(0.64)	(0.69)	(0.78)	(0.77)	(0.81)	(1.04)
민간보험료		2.0	7.4	16.0	25.7	31.2	45.2	52.3	63.6	63.7	78.7
		(0.29)	(0.66)	(0.87)	(1.17)	(1.26)	(1.44)	(1.93)	(4.69)	(2.03)	(2.71)
기부금		0.6	0.8	1.3	2.4	2.3	3.5	3.9	5.2	5.2	11.7
		(0.11)	(0.14)	(0.23)	(0.52)	(0.39)	(0.49)	(0.51)	(0.71)	(0.58)	(1.39)
가계동향											
전체 (s.d)		9.4	21.9	35.8	51.7	67.5	79.5	94.2	111.2	129.9	166.4
		(0.44)	(0.83)	(1.01)	(1.22)	(1.69)	(1.58)	(1.76)	(2.13)	(2.62)	(3.64)
경상세		0.8	1.7	2.9	3.9	6.2	6.7	9.1	13.2	17.1	32.1
		(0.09)	(0.16)	(0.19)	(0.22)	(0.35)	(0.33)	(0.4)	(0.66)	(0.7)	(1.66)
사회보험료		2.0	5.2	9.5	14.6	18.5	22.3	26.3	29.6	33.4	44.5
		(0.14)	(0.24)	(0.32)	(0.37)	(0.45)	(0.52)	(0.49)	(0.59)	(0.64)	(0.87)
민간보험료		4.0	10.7	17.5	27.2	34.6	41.3	48.6	55.3	64.5	70.7
		(0.3)	(0.58)	(0.66)	(0.87)	(1.22)	(1.05)	(1.24)	(1.4)	(1.78)	(1.86)
기부금		2.6	4.2	5.9	6.0	8.1	9.3	10.3	13.0	14.8	19.0
		(0.13)	(0.21)	(0.3)	(0.28)	(0.4)	(0.45)	(0.49)	(0.61)	(0.69)	(0.83)

끝으로 비소비지출항목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재정패널 비소비지출항목의 조사 특성을 살펴 보았다. 먼저, 세금항목은 경상소득세, 사업소득세, 경상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상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경우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소득증빙서류 수집을 통해 1차년도부터 전산화한 정보이다. 반면, 경상재산세의 경우 4차년도부터 정식 문항으로 조사된 항목으로 모든 보유 주택에 대한 경상재산세를 포함한 것은 5차년도⁵⁾ 이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5차년도 조사결과인 2011년 자료를 사용하기를 권장하며, 1~3차년도의 경우 세금에서 재산세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회보장료 지출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 기여금과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5) 5차년도에 재정패널조사에서 신설한 경상재산세 문항은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현황으로 기존 문항을 보강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개별 주택의 현재 가격과 취득년도, 명의자의 정보, 재산세 면제 주택 여부 등 관련 문항도 함께 신설하였다.

포함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반대로 민간보험료는 개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 및 운송관련 보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계동향자료에서는 민간보험료를 소비지출항목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부금의 경우 가계동향자료에서는 종교단체, 정당, 종종, 사회운동단체, 자생상조회 등으로 이전되는 지출이며, 재정패널자료에서 정의하는 기부금은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기관, 종교기관 등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의미한다.

〈표 14〉 2014년 비소비지출 항목별 지출 규모 비교

(단위: 만원)

구분		경상세	사회보장보험료	민간보험료	기부금
재정패널	평균	7.7	19.9	38.6	3.7
	(s.d)	(26.24)	(20.65)	(53.44)	(14.77)
	비중	11.1	28.5	55.2	5.3
가계동향	평균	9.4	20.6	37.4	9.3
	(s.d)	(21.4)	(20.01)	(42.55)	(15.59)
	비중	12.2	26.8	48.8	12.1
차이		-1.7	-0.7	1.1	-5.6

3. 맺음말

본고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주요 조사결과를 국내 유사 조사자료인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재정패널자료 사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료의 특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패널자료는 경상소득에 있어서는 가계동향자료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났으나, 분석대상을 경활가능인구가 있는 가구로 세분화할 경우 그 차이가 더욱 감소되었으며, 소비지출에서는 재정패널자료에서 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매년 조사문항의 정교화로 그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비교의 과정 중 재정패널자료의 표본 설계(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에 대한 과대표집)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단순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사에서 벗어나 관련항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효과성 분석이 뛰어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소득 및 지출에 있어 세부 내역을 분리하여 분석이 가능한 항목들이 존재하고, 소득세나 소득공제 항목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높은 자료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 분석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재정패널자료가 가지고 있는 표본 추출의 특성 및 세부 항목의 변화폭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본고에서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직접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를 통해 재정패널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재정패널조사가 양질의 분석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1〉 소득 유형별 조사항목 비교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연간)
경상소득	시장소득	근로소득	급여소득	총 근로소득
			상여금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매출
				사업소득-순소득
			주택 등 임대소득	임대소득-주택
				임대소득-토지
				임대소득-상가
		재산소득	이자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수입	개인연금수입
	퇴직연금수입		퇴직연금수입	
	기타재산소득		-	
	이전소득	공적	공적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수혜금	사회수혜금-산재보험
				사회수혜금-고용보험
				사회수혜금-보훈급여금
				사회수혜금-자녀양육지원금
				사회수혜금-농어업정부보조금
				사회수혜금-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사회수혜금-유가보조금
				사회수혜금-근로장려금
사회적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		
사적		타가구 이전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그외	할인혜택	-		
	기타 이전소득			

〈부록 1〉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연간)
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일시금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특수직역(퇴직금·연금일시금)
				산재보험(일시금)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그외	경조소득	경조소득	
		기타 비경상소득	-	
	기타수입	자산변동	저축 및 보험탄 금액	보장보험 소득
			유가증권 매각	저축보험 소득
			보증금 회수	양도소득 금액
			부동산 매각	양도손실 금액
		부채증가	부동산 관련 빌린돈	부동산 매각 금액
			기타 빌린돈	부동산 매입 금액
		자산이전	증여	부동산 부채 잔액
				기타 부채 잔액
상속				
증여				

〈부록 2〉 지출 유형별 조사항목 비교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월간/연간)	
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18개 항목별 지출금액	식료품 구입비	
	주류 및 담배	118개 항목별 지출금액	소주	소주 · 맥주 · 양주
			맥주	
			양주	
			와인 및 과일주	와인
			막걸리	막걸리 및 기타주류
			기타주류	
			담배	담배
	의류 및 신발	20개 항목별 지출금액	의류	
	주거 및 수도광열	15개 항목별 지출금액		잡화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난방용 유류비
				연탄
				LPG
				기타
				주택수리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9개 항목별 지출금액		가구 구입비
			인테리어비	
			냉장고 등 구입비	
			세탁기 구입비	
			에어컨 구입비	
			기타 가전제품 구입비	
			기타 가전제품 렌탈비	
			가사도우미서비스	
보건	13개 항목별 지출금액		한약재	
			성형수술비	
			치과진료비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부록 2〉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월간/연간)
소비지출	교통	23개 항목별 지출금액	공공교통비
			차량유지비
			오토바이 유지비
			운송기구 연료비-휘발유
			운송기구 연료비-경유
			운송기구 연료비-LPG
			운송기구 연료비-기타
	통신	7개 항목별 지출금액	이사비
			통신장비 구입비-핸드폰
			통신장비 구입비-기타
			유선전화비
			휴대폰비
	오락·문화	41개 항목별 지출금액	인터넷 사용료
			기타 통신 사용료
			TV구입비
			카메라 등 구입비
			컴퓨터 등 구입비
			악기 구입비
			스포츠험저장비 구입비
			체육, 음악, 문화 활동비
박물관, 공연, 영화관람료			
유료방송 시청료			
복권 구입비			
경륜, 경정, 경마권 구입비			
서적, 음반, DVD 구입비			
참고서 구입비			
교육	23개 항목별 지출금액	신문, 잡지구독료	
		국내여행비	
음식·숙박	5개 항목별 지출금액	국외여행비	
		공교육	
		사교육	
			외식비
			급식비

〈부록 2〉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월간/연간)
소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8개 항목별 지출금액	이미용서비스
			화장품 구입비
			장신구 구입비
			산후조리원 이용료(일부)
			혼례비
			장례비
비소비 지출	세금지출	경상소득세	경상소득세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
		경상재산세	경상재산세
		자동차세	-
		기타경상세금	-
		비경상조세	-
	연금	국민연금 기여금	직장가입자 기여금
			지역가입자 기여금
		공적연금 기여금	임의/계속가입자 기여금
			특수지역 가입자 기여금
	사회보장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민간보험	생명보험	민간보험-퇴직연금
		화재보험	민간보험-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및 연금보험	민간보험-보장보험
		운송관련보험등	민간보험-자동차보험
	가구간 이전지출	교제비 교제비	공교육비 지출
			사교육비 지출
		경조비	경조비
		국내학생가구 송금	타가구원 이전 지출
		국외학생및환자에 대한 송금	
		기타송금(국내)	
		기타송금(국외)	

〈부록 2〉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월간/연간)
비소비 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단체회비	-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정당기부금
			교육기관기부금
			사회복지기관기부금
			문화예술기관기부금
			종교기관기부금-현금,보시
			종교기관기부금-성금
	기타기부금		
	이자비용	주택대출이자	이자및원금
		기타이자	이자및원금
	기타지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저축
			민간보험-연금저축
			민간보험-저축보험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부채상환-정부지원주택자금대출
			부채상환-학자금대출
			부채상환-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
			부채상환-금융기관대출
부채상환-신용카드관련대출			
자산 이전	상속		
	증여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6-05

요약

- 영국은 BEPS Action4에서 권고하는 이자공제 제한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함
 - 영국에서 도입될 이자공제 제한규정에 대하여 당초 초안을 수정한 두 번째 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은 2016년 8월 까지 진행함
 - 이자공제의 제한규정은 Action4에서 권고하는 모범접근방법에 따라 EBITDA의 30% 고정비율규정과 그룹비율규정을 적용할 것임

- 그리스 의회는 7월 1일부터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3%에서 24%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승인함
 -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포장된 식품, 애완동물 식품, 청량음료, 대중교통, 택시운송에 적용됨
 - 표준세율의 인상과 함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인상될 것이며, 섬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의 경감규정은 7월 1일로 폐지됨

- 에스토니아는 우버와 같은 공유형의 운송서

- 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규정과 더불어 납세행정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함
- 정부는 이미 2015년 10월에 우버의 현금 없는 결제(Cash-free) 서비스와 국세청의 납세신고체계의 연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납세행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우버와 과세당국은 전문 서비스기록, 예상비용, 운전자 기타 정보 등에 대한 전체 정보를 과세당국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예정임
-
- 이탈리아는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게임기,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거래에 포함함
 - 이는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지침에 따른 것으로, 동 지침은 조세탈루 위험이 높은 상품군에 대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이 한시적으로 대리납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는 2016년 4월 22일 법인세회피에 대한 보고서인 Gaming the System을 공개함
 -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세 회피와 공격적 조세 최소화 전략에 대해 청문회 등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전가격과 과도한 부채조달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정보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행 세법체계는 이러한 조세 회피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지속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음



- 호주 재무장관은 2016년 5월 3일 의회 연설을 통해 「2016-17 예산안」을 공개함
 - 예산안은 일자리와 성장, 과세체계의 문제 해결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정부의 의무행, 재정균형의 세 가지 목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함
 - 조세와 관련하여 법인세율의 순차적 인하, 조세회피방지의 강화, 우회수익세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호주 재무부는 2016년 5월 5일 전자화폐에 대한 상원 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을 공개함
 -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는 2015년 8월 전자화폐 과세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호주 정부는 전자화폐를 통화로 간주하여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힘
 - 이외에 전자화폐에 대한 국제적 추세의 지속적 모니터링, 디지털 경제 TTF 구성, 디지털화폐의 자금세탁방지/공중합박자금 적용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는 데도 동의함
- 인도 과세관청은 2016년 5월 2일 비상장증권에 대한 소득분류 지침을 공개함
 - 이 지침은 비상장증권의 양도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함
 - 이러한 지침은 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에 있어 쟁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완화하고 세무조사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인도 재무부는 2016년 4월 29일 조세회피

제보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공개함

- 직접세는 추가 과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5백만루피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간접세는 순매출액의 20% 또는 회피된 서비스세와 관련된 가산세 등의 합계액까지 보상할 수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2016년 5월 2일 현행 세율의 유지, 소수주주회사 및 기타 개정을 포함한 통합법안을 공개함
 - 뉴질랜드 국세청 장관은 납세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세법 규정을 개선, 강화, 업데이트하는 기술적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힘
 - 세율의 변경은 없으며, 기존 제안에 따라 소수주주회사에 대한 도관회사규정, 비거주자 원천징수, 소비세에 대한 기술적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2016년 5월 12일 OECD/G20 BEPS프로젝트 액션 13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를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에 6개국이 추가로 서명함
 - 추가로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중국으로 2016년 5월 현재 총 39개국이 협정에 서명함
 - OECD 회원국 중 협정에 아직 서명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등 4개국이 있음
- OECD는 2016년 4월 12일 “2014-2015 임금소득과세 보고서(Taxing Wages 2014-

2015)”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OECD 34개 회원국들의 임금에 대한 조세의 산출과 이러한 조세가 개별 가구의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2015년 임금에 대한 평균 조세부담률은 35.9%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임금소득에 대한 평균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19%p 상승하였으나,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21.9%인 것으로 나타남

영국내 이자, 감가상각을 공제하기 이전의 과세소득(EBITDA)의 10~30% 비율설정에 대한 의견과 그룹비율규정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하여 총 18건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정부는 1차 의견수렴을 통해 고정비율규정은 EBITDA의 30%를 순이자의 공제한도로 하고, 그룹비율규정을 발표함
 - 규정은 기업별 적용이 아닌 그룹별 적용으로 이루어질 것임
- 또한, 정부는 세원잠식의 위험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납세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자공제 제한규정의 최소 금액기준을 1년에 1백만파운드에서 2백만파운드로 상향 조정함
 - 상향 조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은 90%에서 95%로 확대됨

1. 영국-법인의 이자공제 제한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 영국은 BEPS action4에서 권고하는 이자공제 제한규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1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초안을 2016년 5월에 발표¹⁾함
- 영국은 2016년 예산안에서 BEPS action4에서 권고하는 이자공제 제한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²⁾하였으며, 이에 대한 1차 의견수렴을 2016년 1월 14일까지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음
 - 영국정부는 BEPS action4의 이자공제 제한에 대한 권고사항을 도입하기 위해 2015년 10월 22일에 논의를 시작하였음
 - 1차 의견수렴에서는 이자공제의 제한을 위한

- 정부는 5월 발표한 초안과 관련하여 2차 의견수렴을 8월까지 진행하고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이후 규정이 확정되면 2017 재정법을 통해 입법될 예정임
- 2차 의견수렴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그 외 회계기준(UK GAAP, US GAAP)을 사용하는 그룹에 실제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자한도 계산을 위한 기간산정에 제안된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총 46건의 의견을 요청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1) HMRC, "Tax deductibility of corporate interest expense," 2016.05.

2) HMRC,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 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tax- 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consultation#introduction>), 2016.05.26접속



2. 그리스-부가가치세율 인상

- 그리스 의회는 7월 1일부터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3%에서 24%로 인상³⁾하는 개정안을 승인함
 - 그리스 의회는 국제 채권자들과 협의한 재정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4억~5억유로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국제 채권자들과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7억유로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난 4월에 논의함
 - 이번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19%였던 2010년 이후로 두 번째 세율 인상임
 -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는 대상은 포장된 식품, 애완동물 식품, 청량음료, 대중교통, 택시운송 등이며, 가정용 전력, 교육, 수도 등은 제외함
- 또한, 정부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인상할 예정이며, 일부 섬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 7월 1일로 폐지함
 - 6%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도서, 잡지, 신문에 대해서도 인상할 예정임
 - 그리스의 두 번째 섬 그룹(시로스 섬, 타소스 섬, 안드로스 섬, 티노스 섬 등)에 대하여 적용되던 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 폐지됨
 - 이미 그리스의 첫 번째 섬 그룹(산토리니 섬, 로도스 섬, 스키아토스 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30% 경감규정은 2015년 10월 1일에 폐지

되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3. 에스토니아-우버(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납세행정규정 및 시스템 구축

- 에스토니아는 우버와 같은 공유형의 운송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규정과 더불어 납세행정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함
 - 정부는 이미 2015년 10월에 우버의 현금 없는 결제(Cash-free) 서비스와 국제청의 납세신고체계 연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납세행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⁴⁾
 -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한 잠재적 수익창출 가능성에 주목하여 우버를 정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새로운 납세행정은 우버(디지털 플랫폼)를 통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의 세금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 우버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전자와 승객의 운송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함
- 우버와 과세당국은 전문 서비스기록, 예상 비용, 운전자 기타 정보 등에 대한 전체 정보를 과세당국에 실시간으로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예정임⁵⁾

3) IBFD(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6-05-26_gr_1.html) 2016.05.23. 접속

4) 에스토니아 국제청(<http://www.emta.ee/eng/etcb-and-uber-collaborate-seeking-solutions-development-sharing-economy>)

5) Tax notes international, p. 444, 2016.03.07.

- 에스토니아 정부는 우버에 대한 일반 규정과 납세행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제적으로 첫 시행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4. 이탈리아-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 재화 확대⁶⁾

- 이탈리아는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게임기,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거래에 포함함
 - 이는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지침(Council Directive 2013/43/EU)⁷⁾에 따른 것으로, 동 지침은 조세탈루 위험이 높은 상품군에 대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이 한시적으로 대리납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핸드폰 부품과 핸드폰 악세서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핸드폰은 기존 규정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함
 - 핸드폰 부품과 핸드폰 악세서리(충전기, 이어폰 등)는 핸드폰과 함께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됨
- 한편, 채석장과 광산에서 직접 공급하는 골재(aggregates)와 슈퍼마켓, 할인상점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EU의 부가가치세지침은 이들 항목에 대해 대리납부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5. 호주-상원 경제위원회, 법인세회피에 대한 보고서 공개⁸⁾

-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는 2016년 4월 22일 법인세 회피에 대한 보고서인 Gaming the System을 공개함
 -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세회피와 공격적 조세 최소화 전략에 대해 청문회 등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이전가격과 과도한 부채조달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정보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행 세법체계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지속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음
- 청문회에서는 공격적 이전가격, 과도한 부채차입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왔음
 - 최근의 BEPS와 관련된 이전가격 관련 법령 개정에도, 현행 이전가격체계는 호주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납세를 부여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론 내림
 - 호주의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보다 부채에 따른 공제를 위해 과도한 내부차입약정이 사용되고 있다고 결론 내림

6)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pdf/2016/05/tnf-italy-may2-2016.pdf>

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201:0004:0006:en:PDF>

8) The Senate, Economics References Committee, Corporate tax avoidance: Part II Gaming the system, April 2016.



- 공격적 조세환경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운용을 위해 위원회는 여러 권고안을 제시함
 - 정부가 조세위원회에 자발적 조세투명성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청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적 정보제공 제도를 수립하도록 권고함
 - 비상장회사의 조세투명성 관련 규정의 적용이 1억호주달러에서 2억호주달러로 변경되었는데, 위원회는 이전의 1억호주달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함
 -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적어도 매년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세무조사 및 조세분쟁, 결정된 사건, 승소한 법적 쟁송 등의 통계와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배치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이외에도 위원회는 더 많은 분야에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고려함
 - 유의적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일반목적회계에서 보다 폭넓은 공적이익을 고려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정하고 글로벌 기업의 호주 내 활동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함
 - 현행 이전가격원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호주 세수를 잠식하는 행동을 방지하지 못하는 이전가격 규정에 대해 개정할 것을 고려함
 - 회사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파나마 페이퍼로부터 발생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2016년 9월까지 청문회 기간을 연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6. 호주-2016-17 예산안 공개⁹⁾

- 호주 재무장관은 2016년 5월 3일 의회 연설을 통해 2016-17 예산안을 공개함¹⁰⁾
 - 예산안은 일자리와 성장, 과세체계의 문제 해결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정부의 의무이행, 재정균형의 세 가지 목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함
 - 조세와 관련하여 법인세율의 순차적 인하, 조세회피방지의 강화, 우회수익세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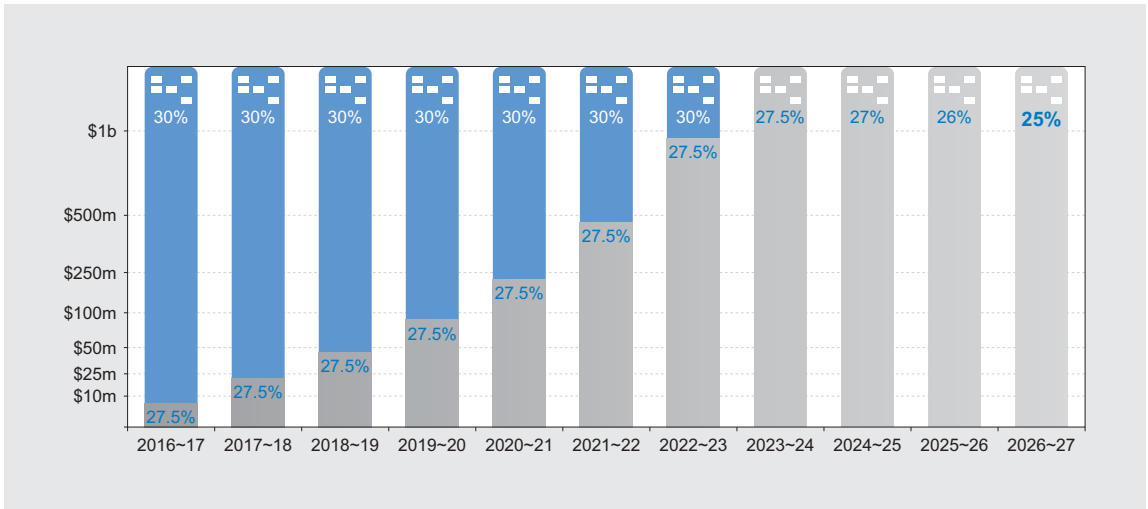
가. 법인세

- 호주의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산업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장기적으로 인하함
 - 2017년 7월부터 연매출 1억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30%에서 27.5%로 인하함
 - 이러한 인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향후 10년내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함

9) Budget 2016-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10) Budget Speech 2016-17(<http://www.budget.gov.au/2016-17/content/speech/download/Budget-Speech.pdf>).

[그림 1] 향후 10년간 법인세율 변화



주: Budget 2016-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p. 17.

-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조세회피TFT의 신설 및 조세 투명성제도, 새로운 내부제보자보호제도, 잠재적 조세회피 공시제도, 강화된 가산세를 도입함
 - 다국적기업과 고자산가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TFT를 구성함
 - 연간 매출 1억호주달러 이상의 기업들에 폭넓고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세투명성제도를 채택하도록 하는 권고제도를 신설함
 - 과세관청에 제보하는 내부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 정보공시를 개선하고, 잠재적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의견수렴을 할 계획임
- 연간매출 1억호주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해 세무 신고 및 이와 유사한 납세의무 불이행시 최대 가산세한도를 45백호주달러에서 45만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함
- 호주로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기구의 새로운 형태로 회사형 CIV(Collective Investment Vehicle)과 유한책임형 CIV 제도를 도입함
 - 이는 CIV를 도관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아시아 지역펀드패스포트¹¹⁾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제도 도입임¹²⁾

11)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 · 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서명, 2016.4.28.)

12) PriceWaterhouseCoopers, 2016-17 Australian Federal Budget: Reform to perform, 4 May 2016, p. 27.



나. 개인소득세

- 중간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3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함
 - 기존에는 32.5%의 세율이 적용되던 최대 과세표준 8만호주달러를 8.7만호주달러로 2019-20 과세연도까지 상향조정함

〈표 1〉 호주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호주달러, %)

세율	현행	2016.7~
-	~18,200	~18,200
19	18,201~37,000	18,201~37,000
32.5	37,001~80,000	37,001~87,000
37	80,001~180,000	87,001~180,000
45	180,001~	180,001~

출처: T. Toryanik, Australia—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및 Budget 2016-17 Making our tax system more sustainable, p. 14.

- 2017년 7월 1일부터 별도의 40%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국가간 부채·자본의 세제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전가격규정을 업데이트할 예정임
 - 혼성불일치방지규정은 부채와 자본 및 이에 대응되는 이자와 배당의 분류 불일치를 통한 이자비용과 배당면세를 방지하는 것¹⁴⁾으로 2018년 1월 또는 승인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이전가격규정은 특히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계약의 실질에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최근의 OECD지침 개정¹⁵⁾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다. 국제조세

- 다국적기업의 호주에서의 납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우회수익세를 도입할 예정임
 - 우회수익세는 기존의 다국적조세회피방지법 (Multinational Anti-Avoidance Act)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임¹³⁾
 - 우회수익세는 호주 내에서 거래를 수행하여 소득을 창출함에도 경제적 실질이 없는 형식의 거래를 통해 호주 내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13) PriceWaterhouseCoopers, 2016-17 Australian Federal Budget: Reform to perform, 4 May 2016, p. 9.

14) 「조세동향」, 16-01호 참조

15)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http://www.treasury.gov.au/PublicationsAndMedia/Publications/2016/Gov-Response-Digital-Currency>).

16) 「조세동향」, 15-08호 참조

7. 호주-전자화폐에 대한 과세여부 답변 공개¹⁵⁾

- 호주 재무부는 2016년 5월 5일 전자화폐에 대한 상원 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을 공개함
-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는 2015년 8월 전자화폐 과세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¹⁶⁾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호주 정부는 전자화폐를 통화로 간주하여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힘
- 호주 과세관청은 2014년 8월의 과세지침에서는 전자화폐를 재화로 간주하여 교환거래에 따른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음¹⁷⁾
- 이외에 전자화폐에 대한 국제적 추세의 지속적 모니터링, 디지털 경제 TFT 구성, 디지털화폐의 자금세탁방지/공중협박자금 적용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는 데도 동의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8. 인도-비상장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지침 공개¹⁸⁾

- 인도 과세관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은 2016년 5월 2일 비상장증권에 대한 소득 분류지침을 공개함
- 이 지침에서는 비상장증권의 양도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함
- CBDT는 2016년 2월 지침을 통해 상장증권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보유시 납세자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사업소득 vs 자본소득) 자본소

득으로 간주하는 지침을 공개하였음

- 이러한 지침은 증권에 대한 소득구분에 있어 쟁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완화하고 세무조사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9. 인도-조세회피 제보자에 대한 보상지침 공개¹⁹⁾

- 인도 재무부는 2016년 4월 29일 조세회피 제보자에 대한 보상지침을 공개함
- 직접세는 추가 과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5백만루피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간접세는 순매출액의 20% 또는 회피된 서비스세와 관련된 가산세 등의 합계액까지 보상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0. 뉴질랜드-통합개정법안 공개²⁰⁾

- 뉴질랜드 정부는 2016년 5월 2일 현행 세율의 유지, 소수주주회사 및 기타 개정을 포함한 통합법안²¹⁾을 공개함
- 뉴질랜드 국세청 장관은 납세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세법규정을 개선, 강화, 업데이트하는 기술적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힘

17) 「조세동향」, 14-09호 참조

18)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 Department of Revenue(CBDT), Subject:-Consistency in taxability of income/loss arising from transfer of unlisted shares under Income-tax Act, 1961-regd.-, 2nd of May, 2016.

19)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http://pib.nic.in/newsite/erelease.aspx?relid=0>).

20) New Zealand Inland Revenue(<http://taxpolicy.ird.govt.nz/news/2016-05-03-omnibus-tax-bill-introduced>).

21) The Taxation (Annual Rates for 2016-17, Closely Held Companies, and Remedial Matters) Bill.



- 세율의 변경은 없으며, 기존 제안에 따라 소수주주 회사에 대한 도관회사규정, ²²⁾ 비거주자 원천징수, 소비세에 대한 기술적 개정내용을 담고 있음
-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AIL(Approval Issuer Levy)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²³⁾
 - Back-to-back 대출거래와 비거주자인 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대출거래에 대해 AIL 대신 원천징수를 적용할 것을 확인함
 - AIL거래는 차입자 또는 국외 대여자 중 한 명이상이 금융기관 또는 공개된 회사의 형태이거나, 최소 50만뉴질랜드달러 이상의 이자를 비거주자에게 전기에 지급하거나 당기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만 적용함
 - 뉴질랜드 은행은 대여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AIL을 적용할 수 있음
- 소비세에 대해 일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을 담고 있음
 - 증권 발행으로 인한 자금이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을 위해 사용되면, 증권의 발행·차환 및 지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연간 매출액 24백만뉴질랜드달러 미만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과세관청이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된 비율로 과세·면세부문의 매입세액 안분

을 허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1. OECD-BEPS프로젝트 액션13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에 6개국 추가 서명²⁴⁾

- 2016년 5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조세행정 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에서 캐나다, 아이슬란드,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중국 등 6개국이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함
 - 이로써 지난 1월 총 31개국이 MCAA에 처음 서명²⁵⁾한 이후 현재까지 총 39개국이 MCAA를 체결함
- 2016년 5월 현재 OECD 국가로는 한국과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30개국이 MCAA에 서명함
 - OECD 국가 중 미체결 4개국: 미국, 한국, 헝가리, 터키
 - 비OECD 국가 중 체결 9개국: 중국, 인도, 코스타리카,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버뮤다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22) 「조세동향」, 15-10호 참조

23) Approval Issuer Levy는 차입자가 선택적으로 원천징수 대신에 상대적으로 낮은 2%의 세율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은 0%로 적용되는데(K.J. Holmes, New Zealand—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Deloitte, Tax Bill—Reforms galore, Tax Alert, May 2016).

24) <http://www.oecd.org/tax/a-new-boost-to-transparency-in-international-tax-matters-six-new-countries-sign-agreement-enabling-automatic-sharing-of-country-by-country-reporting.htm>

25)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about-automatic-exchange/a-boost-to-transparency-in-international-tax-matters-31-countries-sign-tax-co-operation-agreement.htm>

12. OECD-「Taxing Wages 2014-2015」 발표²⁶⁾

- OECD는 2016년 4월 12일 “2014-2015 임금소득과 세 보고서(Taxing Wages 2014-2015)”를 발표함²⁷⁾
 - 동 보고서는 OECD 34개 회원국들의 임금에 대한 조세의 산출과 조세가 개별 가구의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됨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가구형태별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음
 - 임금소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Payroll Taxes), 그 밖에 가계현금급여(Cash Family Benefits) 등이 있음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독신가구, 2자녀 편부모 가구, 2자녀 외벌이 가구, 2자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함
- OECD 회원국의 2015년 독신가구의 평균 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포함)은 평균 35.9%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조세부담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한 반면 2014년과 2015년은 35.9%로 동일함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조세부담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국가에서의 조세부담률 하락으로 인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4개국에서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였고, 8개국에서 하락함
- 우리나라의 독신가구의 평균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21.9%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19%p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조세부담 상승은 주로 소득세 부담(0.12%p 상승)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자녀 편부모 가구(각 국가의 평균임금의 67% 소득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17.2%로 조사 대상 가구 형태 중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조세부담률이 독신 가구의 조세부담률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2자녀 편부모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17.0%로 OECD 평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자녀 외벌이 가구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버는 독신 가구(35.9%)보다 낮은 조세를 부담함
 - 이는 2자녀 기혼 가구에 대한 유리한 소득세제도와 현금급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2자녀 기혼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9.6%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조세부담률(21.9%)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6) <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20725124.htm>

27) 보고서의 발표일자는 2016년 4월 12일이나 실제 보고서의 가용일은 2016년 5월 중임



- 2자녀 맞벌이 가구(평균 임금소득의 167% 기준)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1.0%로 2자녀 외벌이 가구(26.7%)보다 더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임
 -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2차 근로자(second earner)에 대한 배우자 및 부양자 공제 등 인적공제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2자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9.5%로 2자녀 외벌이 가구(19.6%)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국가별 보고서(Country Report) 및 거시경제 불균형 평가를 위한 2016 심층검토보고서(In-Depth Review)¹⁾ 발표(2016.3.8.)²⁾
 - EU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고 많은 회원국이 각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몇몇 국가들에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높은 수준의 공공 · 민간 채무, 높은 실업률, 생산물 · 노동시장의 경직성, 투자 부진 등 불균형을 지적
 - 국가별 보고서에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불균형, 구조적 이슈 등을 논의³⁾

- 지난 11월 거시경제 불균형⁴⁾ 검토 대상 18개 국가들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실시한 결과 7개국이 불균형, 5개국이 초과불균형 상태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회원국에 불균형 모니터링 및 조정을 권고
 - ※ 본 심층검토보고서와 4월 각국의 개혁 프로그램 및 안정화 · 수렴 프로그램을 토대로 5월 집행위가 국가별 정책 권고를 발표할 예정

〈표 1〉 심층검토 결과

MIP 구분 ⁵⁾	국가
불균형 없음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벨기에, 헝가리, 루마니아, 영국
불균형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슬로베니아
초과불균형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1) 심층검토보고서는 EU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감시체계인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의 일환임. MIP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 점검 및 경고, 심층 검토, 정책권고 불이행 국가 제재 등의 절차로 구성됨

2) 출처: EU 집행위,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591_en.htm, 2016.3.8.

3) 국가별 보고서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http://ec.europa.eu/europe2020/making-it-happen/country-specific-recommendations/index_en.htm

4) 거시경제 불균형은 'EU 회원국, EMU, 또는 EU 경제의 적절한 기능에 부작용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거시경제적 변동을 일으키는 추세'. 초과불균형은 'EMU의 적절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정의.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청년실업률 등 대내외 불균형을 나타내는 14개의 주요지표와 25개의 보조지표를 기초로 평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6070_en.htm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conomic_governance/macroeconomic_imbalance_procedure/mip_scoreboard/index_en.htm

5) 기존의 6단계 범주 중 2~4단계를 불균형으로 통합

기존	변경
(1단계) 불균형 없음	(좌동)
(2단계) 불균형: 정책 조치 및 모니터링 필요	불균형
(3단계) 불균형: '결정적' 정책 조치 및 모니터링 필요	
(4단계) 불균형: '결정적' 정책 조치 및 '특별' 모니터링 필요	
(5단계) 초과불균형: '결정적' 정책 조치 및 '특별' 모니터링 필요	(좌동)
(6단계) 초과불균형: '결정적' 정책 조치 및 초과불균형 절차 작동	(좌동)



■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경제·재정정책 등 논의 (2016.3.8.)⁶⁾

- (경제·재정정책) European Semester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를 논의
 - 집행위의 국가별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회원국의 성실한 정책 이행, 특히 부정적인 기업환경과 비효율적인 공공행정 등 투자의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조
- 그 밖에 법인세 회피 방지 대책과 불공정 조세 경쟁에 관한 규칙 등을 논의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하 발표(2016.3.10.)⁷⁾

- (의결사항)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시행
 - 3월 16일부터 기준금리를 0.00%로 5bp 인하, 한계여신금리를 0.25%로 5bp 인하, 초단기에 차금리를 -0.40%로 10bp 인하⁸⁾
 - 4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양적완화)의 규모를 매달 600억유로에서 800억유로로 확대하고 유로존 내 비은행기관의 투자등급 유로화표시 회사채도 매입대상에 포함
 - 2015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차 목표물장 기대출(TLTRO II)⁹⁾을 시행
-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전망)
 - 2016년 3월 ECB 전망에 따르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1.8%로, 세계 경제성장 전망 둔화로 인해 기존 전망

보다 다소 하향

- 물가상승률은 2016년 0.1%, 2017년 1.3%, 2018년 1.6%로 기존 전망보다 하락했으며, 최근 유가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지정학적 위험 등 하방위험이 증대
- 드라기(Mario Draghi) ECB 총재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향후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 하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지체 없이 2%에 근접하게 회복시켜 저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의 2차 효과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 EU-터키 간 정상회담 개최, 난민문제 논의(2016.3.7.)¹⁰⁾

- EU-터키 정상들이 난민위기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
- EU-터키 간 행동 계획(EU-Turkey Action Plan) 이행에 대해 논의
 - 행동 이행에 많은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터키에서 그리스로의 밀입국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
 - 터키에서 그리스로 밀입국한 모든 난민자를 신속히 송환시키는 데 합의
 - 기존 합의된 30억유로의 빠른 지급과 시리아 난민 시설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 시리아 인도적 지원 개선에 대한 협력
 - 구체적인 협상안은 17일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6)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16/03/08/>, 2016.3.8.

7) 출처: 유럽중앙은행,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16/html/pr160310.en.html>, 2016.3.10.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conf/2016/html/is160310.en.html>, 2016.3.10.

8) 기준금리(interest rate on main refinancing operations of the Eurosystem)는 단기 유통성 공급 금리, 한계여신금리(interest rate on the marginal lending facility)는 금융기관의 일시 부족자금 발생시 긴급자금 대출 금리, 초단기예치금리(interest rate on the deposit facility)는 은행들이 ECB에 예치 시 적용하는 초단기(1일) 금리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4, 176~177쪽 참고

9) 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예치기관에 최저금리로 4년 만기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

10) 출처: 유럽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international-summit/2016/03/07/>, 2016.3.7.

예정이며 EU 정상들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28일에 비공식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

- EU 내무장관회의 개최, 난민문제 등 논의(2016.3.10~11.)¹¹⁾
 - 현재의 난민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3월 7일 개최된 EU-터키 회의의 합의문을 이행
 - 난민 유입 경로 조치, EU 경계 보호, 불법이민 감소, 쉐겐지역 보호, 비인도주의의 감소
- EU 통계청(Eurostat), 2015년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2016.3.8.)¹²⁾
 - 유로존(EA19)의 2015년 4분기 GDP가 전분기 대

비 0.3%,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으며, EU 28개국의 GDP는 전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 (국가별) 스웨덴(1.3%), 에스토니아(1.2%), 폴란드(1.1%), 루마니아(1.1%)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크로아티아(-0.5%), 라트비아(-0.3%)는 성장률이 하락
- (요소별)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전분기 대비 유로존(EA19)에서 0.2%, EU 28개국에서 0.4% 증가했고, 정부지출이 각각 0.6%, 0.5%, 총고정자본형성이 각각 1.3%, 1.1%, 수출이 각각 0.2%, 0.5%, 수입이 각각 0.9%, 1.1% 증가

〈표 2〉 유로존(EA19) 및 EU 28개국의 2015년 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¹⁾)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5				2015			
	Q1	Q2	Q3	Q4	Q1	Q2	Q3	Q4
벨 기 예	0.3	0.5	0.2	0.3	1.3	1.5	1.3	1.4
불 가 리 아	0.9	0.6	0.7	0.7	2.6	2.6	2.9	3.0
체 코	2.4	1.0	0.7	0.0	4.0	4.5	4.7	4.0
덴 마 크	0.7	0.2	-0.5	0.2	1.6	1.8	0.6	0.6
독 일	0.4	0.4	0.3	0.3	1.1	1.6	1.7	1.3
에 스토니아	-0.8	0.6	-0.4	1.2	1.4	1.8	0.7	0.9
아 일 렌 드	2.2	1.9	1.4	-	6.8	7.5	6.8	-
그 리 스	0.0	0.3	-1.2	0.1	0.3	0.9	-1.7	-0.8
스 페 인	0.9	1.0	0.8	0.8	2.7	3.2	3.4	3.5
프 랑 스	0.7	0.0	0.3	0.3	0.9	1.1	1.1	1.4
크 로 아 티 아	0.3	0.9	1.4	-0.5	0.2	1.5	2.7	2.0
이 탈 리 아	0.4	0.3	0.2	0.1	0.2	0.6	0.8	1.0

11)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jha/2016/03/10-11/>, 2016.3.11.

12) 출처: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web/products-press-releases/-/2-08032016-AP>, 2016.3.8.



〈표 2〉의 계속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5				2015			
	Q1	Q2	Q3	Q4	Q1	Q2	Q3	Q4
키프로스	1.2	0.7	0.5	0.4	0.2	1.1	2.3	2.7
라트비아	0.5	1.2	0.9	-0.3	1.9	2.8	3.3	2.3
리투아니아	0.3	0.6	0.5	0.5	1.2	1.4	1.7	1.9
룩셈부르크	-0.2	1.4	0.9	-	5.5	6.2	5.4	-
헝가리	0.8	0.5	0.6	1.0	3.3	2.7	2.6	3.0
몰타	0.7	1.4	1.1	-	5.0	5.5	5.6	-
네덜란드 ²⁾	0.6	0.1	0.1	0.3	2.5	2.2	1.9	1.2
오스트리아	0.7	0.3	0.0	0.2	0.3	0.9	0.9	1.2
폴란드	1.0	0.6	0.9	1.1	3.7	3.4	3.6	3.7
포르투갈	0.5	0.4	0.1	0.2	1.7	1.5	1.4	1.3
루마니아	1.3	-0.2	1.5	1.1	4.0	3.7	3.6	3.8
슬로베니아	0.7	0.8	0.4	0.6	3.0	2.6	2.2	2.6
슬로바키아	0.9	1.0	1.0	1.0	3.1	3.5	3.8	4.0
핀란드	0.3	0.5	-0.2	0.1	0.0	0.7	0.3	0.7
스웨덴	0.9	1.2	1.0	1.3	3.0	3.6	4.2	4.5
영국	0.4	0.6	0.4	0.5	2.6	2.4	2.1	1.9
EA19	0.6	0.4	0.3	0.3	1.1	1.6	1.6	1.6
EU28	0.6	0.5	0.4	0.4	1.7	1.9	1.9	1.8

주: 1)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calendar adjustment for Ireland, Slovakia.

2) Percentage change compared with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calendar adjusted data.

출처: EU 통계청, 『2015년 4분기 성장을 보도자료』, 2016.3.8.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IMF

- 키프로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2016.3.7.)¹³⁾
 - 키프로스는 5월 만기인 IMF의 확대금융(EFF: Extended Fund Facility)을 2달 앞당겨 종료하여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무리
 -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키프로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 키프로스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1.5%를 기록했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강화되었으며, 부실채권 문제가 개선되었음
 - ☞ 재정 상황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공공채무도 하락하는 추세에 들어섬
 - 키프로스는 2013년 3월, IMF 10억유로(ESM으로부터 90억유로를 포함해 총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¹⁴⁾
 - 키프로스는 여전히 부실채권 문제가 남아있고, 높은 수준의 공공채무를 해결해야 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¹⁵⁾
 - ☞ 부실채권의 비율이 60%로 여전히 높은 수준(GDP 대비 150%)이며, 공공채무도 GDP 대비 100%를 상회함
 - ☞ 키프로스 재무장관 Harris Georgiades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강력

한 정책을 유지하고 개혁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

- 15%를 상회하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성장 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IMF, 위안화를 외환보유액 통계(COFER)에 10월 1일부터 포함하기로 발표(2016.3.4.)¹⁶⁾
 - IMF는 중국 위안화를 공식 외환보유액 통계 산출 통화로 단독으로 포함하기로 하여, 보유외환 통계에 쓰이는 통화는 총 7개¹⁷⁾로 증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OECD

- OECD, G20 국가의 2015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6.3.14.)¹⁸⁾
 - G20 국가의 201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0.7%로 직전 분기(0.8%)보다 다소 감소했으며, 2015년 G20 국가의 연간 GDP 성장률은 3.2%로 전년(3.3%) 대비 소폭 감소함
 - 한국(1.3%(3분기) → 0.6%(4분기)), 호주(1.1% → 0.1%), 캐나다(0.6% → 0.2%), 멕시코(0.8% → 0.5%), 일본(0.3% → -0.3%)의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현저하게 감소
 - 브라질(-1.7% → -1.4%)은 직전 분기보다

13)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6/pr1694.htm>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년 4월 제1호 「재정동향」 및 IMF press releases 참조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3/pr13175.htm>)

15)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survey/so/2016/car031516a.htm>

16)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6/pr1690.htm>

17)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등이 단독으로 쓰이며, 기타 통화는 종합적으로 표기됨

18) 출처: OECD, <http://www.oecd.org/std/na/G20-GDP-Eng-Q415.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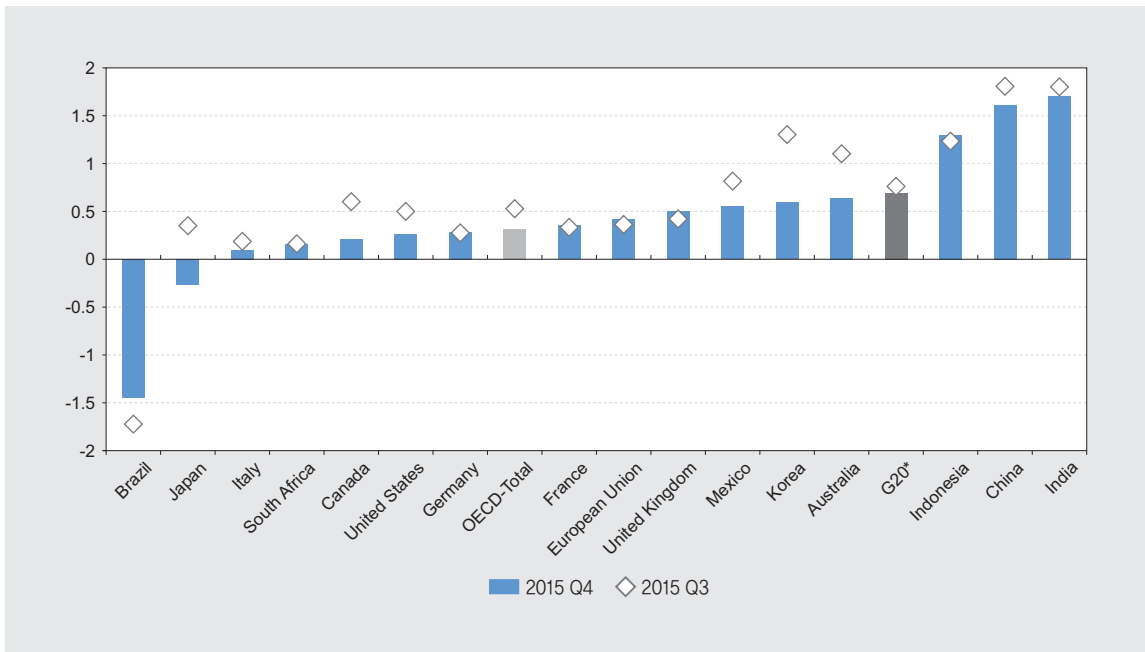


GDP가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완화됨
 - 중국(1.8%→1.6%), 미국(0.5%→0.3%), 인도(1.8%→1.7%), 이탈리아(0.2→0.1%)의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

- 인도네시아(1.2% → 1.3%), 영국(0.4% → 0.5%)의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프랑스(0.3%), 독일(0.3%), 남아프리카공화국(0.2%)은 같은 수준을 유지

[그림 1] G20 국가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주: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침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호주

1. 기타

- 호주 정부, 2015 규제철폐 연간 보고서(Annual Red Tape Reduction Report 2015) 발표(2016.3.15.)^{19) 20)}
 - 연방 정부는 346건의 불필요한 법규 및 규제철폐로 인한 2015년 절감분이 약 25억호주달러이며,

2013년 9월 이후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절감분이 48억호주달러에 달한다고 발표²¹⁾

- 이는 초기 3년간 목표였던 30억호주달러(연간 10억호주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호주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 개인의 정부서비스 접근 효율성 향상 등의 목표달성을 기대

〈표 3〉 포트폴리오별 규제철폐로 인한 절감액(2015.1.1.~2015.12.31.)

Portfolio	Net Savings (\$ millions)	Number of Regulation Savings	Gross Savings (\$ millions)	Number of Regulatory Increases	Gross Increases (\$ millions)
Agriculture	66.1	20	67.6	9	1.5
Attorney-General's	82.0	32	94.3	5	12.3
Communications	256.4	29	256.6	3	0.3
Defence	39.8	11	39.8	0	0.0
Education	196.8	14	201.6	9	4.9
Employment	65.1	18	106.4	5	41.3
Environment	440.9	7	9.8	2	0.0
Finance	15.7	1	15.7	0	0.0
Foreign Affairs and Trade	9.8	7	9.8	2	0.0
Health	96.8	40	100.4	19	3.5
Human Services	132.7	13	132.7	0	0.0
Immigration	60.7	10	66.1	6	5.4
Industry	166.6	18	168.2	15	1.6
Infrastructure	58.8	29	74.0	6	15.2
PM&C	3.8	3	3.9	2	0.0
Social Services	78.8	18	84.6	11	5.8
Treasury	716.1	76	1,030.7	19	314.5
Total	2,487.0	346	2,992.3	117	505.3

출처: 『2015 규제철폐 연간 보고서』, table 2.1.

19) Cutting Red Tape 홈페이지, <https://www.cuttingredtape.gov.au/annual-red-tape-reduction-report-2015>

20) 호주 정부는 불필요한 법규 및 규제 철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을 참고

21) 비용-편익분석, 규제부담측정(RBM, Regulatory Burden Measure) 시스템을 통해 규제순응비용을 추정



- ☞ 20만호주달러 미만의 정부입찰계약 프로세스 간소화(표준화된 거래 약관, 온라인 템플릿 활용 등)로 중소기업과 정부 간 거래 간편화
- ☞ 탄소세 및 광산세 폐지로 1억호주달러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 ☞ 고용서비스 기관의 서류기록물 보관 의무 폐지, 노인복지 및 장애인 고용서비스 기관의 문서업무 대폭 감소

■ 호주 정부, '퇴직연금의 목표(The objective of the superannuation)' discussion paper 발간(2016.3.9.)²²⁾

- 호주 퇴직연금 산업은 92년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도입 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호주 정부는 2015년 10월 FSI(Financial System Inquiry)²³⁾ 요청에 대한 일환으로 연금제도 목표의 법제화를 발표함
- 위 보고서는 제안된 연금 제도 목표 협의를 위한 초석을 제공
 - FSI는 '노령연금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퇴직 소득 제공'을 연금의 주목적으로 제안
 - ☞ The FSI recommended the following primary objective: to provide income in retirement to substitute or supplement the Age Pension.
 - 그 외에도 6가지 부가적 목표 및 고려해야 할 4

가지 이슈를 제시

- ☞ 6가지 부가적 목표: 1) 소비평활화, 2) 은퇴 후 재정 위험 관리, 3)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 저축, 4)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 5)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 6) 간단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어야 하며, 보호장치(safeguard)를 제공
- ☞ 4가지 이슈: 1) 퇴직소득 또는 기본생활수준, 2) 소득의 적정성(예:소득대체율), 3) 재정 지속가능성, 4) 국민저축증가

■ 호주 통계청(ABS), 2015년 12월 분기(December Quarter)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16.3.2.)²⁴⁾

-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 서비스 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해 가계최종소비 지출이 GDP 상승에 약 0.4%p 기여하였고, 공공총고정자본형성이 0.2%p 기여함
 - 반면 엔지니어링 건설 및 민간총고정자본형성 하락이 GDP 성장률을 하락시킨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

22) 출처: 호주 재무부, <http://www.treasury.gov.au/ConsultationsandReviews/Consultations/2016/Objective-of-superannuation>

23) FSI는 호주 금융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임무하에 운영되는데, 향후 10년에 걸친 금융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http://fsi.gov.au/>)

24) 출처: 호주 통계청.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ediareleasesbyCatalogue/C9973AC780DDFD3FCA257F690011045C?Opendocument>

〈표 4〉 2015년 12월 분기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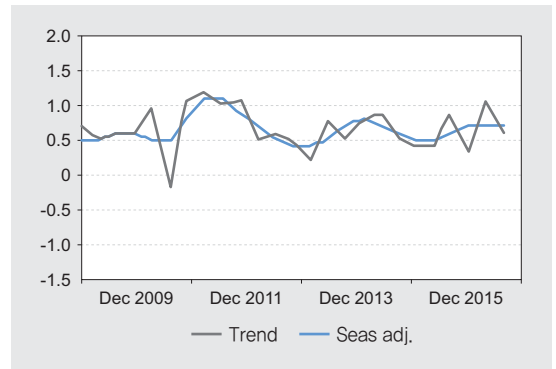
(단위: %,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GDP	0.6	3.0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7	3.1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6	-4.7
교역조건 (Terms of Trade)	-3.2	-12.0
실질순국민가처분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0.1	-1.1

출처: 통계청, 2016.3.2.

〔그림 2〕 GDP 성장률

(단위: %)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FY2015-16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C) 하원 상정(2016.2.19.)²⁵⁾
 - FY2015-16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C)은 약 51.4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약 28.4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약 23.1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의결지출) 캐나다 군 장기 장애보험 추가 부담 약 4.4억캐나다달러, 군 관련 지원금 2.2억캐나다달러, 학자금대출 채무 탕감 지원 1.8억캐나다달러,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 Fund) 1.7억캐나다달러, 시리아 난민지원 1.5억캐나다달러 등
 - (법정지출) 아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 48억캐나다달러 증가, 공공채무의 낮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26억캐나다달러 절감이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
-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과 추경(A), (B), (C)를 포함한 FY2015-16의 전체 일반 예산 지출(Budgetary spending)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약 2,507억캐나다달러 규모²⁶⁾
 -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과 추경(A), (B), (C)를 포함한 FY2015-16의 총 법정지출규모는 1,557억캐나다달러, 총 의결지출 규모는 950억캐나다달러

25)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C) 2015-16, <http://www.tbs-sct.gc.ca/hgw-cgf/finances/pgs-pdg/se-bsd/sups/c/20152016/sec-bsdctb-eng.asp>

26) 세출예산안은 주요국 예산안 2015 캐나다편, 추경(A)와 추경(B)는 각각 2015년 상반기 『재정동향』과 2015년 하반기 『재정동향』 캐나다편 참조



〈표 5〉 FY2015-16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일반 예산(Budgetary)	투용자 예산(Non-Budgetary)
추경(A)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3,135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20	0
	합계	3,155	0
추경(B)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810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	0
	합계	813	0
추경(C)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836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2,308	-251
	합계	5,144	-251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C)」

■ FY2016-17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하원 상정(2016.2.23.)²⁷⁾

- 캐나다 재무위원회는 2,501억캐나다달러의 규모(일반 예산(Budgetary) 기준)의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의결지출에 898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에 1,603억캐나다달러를 편성

– 이전지출이 약 6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운영 및 자본지출이 약 27.5%, 공공채무이자 비용이 약 9.1%를 차지

☞ 이전지출은 FY2015-16 세출예산안 대비 6.6%(98억캐나다달러)증가하였으며, 노인 지원(Elderly Benefits),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공공채무 비용은 2015년 11월에 발표한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²⁸⁾에서 이자율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에 기인, FY2015-16 세출예산안 대비 10.9%(29억캐나다달러) 감소

- 투·용자, 선급금(Loan, Investment, Advances)에 해당하는 투용자예산(Non-Budgetary)은 3.7억캐나다달러를 편성

〈표 6〉 FY2016-17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개요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일반 예산(Budgetary)	투용자 예산(Non-Budgetary)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898.5	0.3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1,602.9	3.4
합계	2,501.4	3.7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2016-17 Estimates」

27)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2016-17 Estimates (Parts I and II),

<http://www.tbs-sct.gc.ca/hgw-cgf/finances/pgs-pdg/gepme-pdgbpd/20162017/me-bpdtb-eng.asp>

28) 2015년 하반기 「재정동향」 캐나다편 참조

〈표 7〉 FY2016-17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세부내역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FY2014-15 세출	FY2015-16		FY2016-17 본세출 예산안	
		세출 예산안	세출 실적치 (Estimates To Date)		
일반예산 (Budgetary)	이전 지출 (Transfer Payment)	1,421.3	1,488.0	1,548.4	1,585.8
	운영 · 자본 지출 (Operating and capital)	655.0	671.6	728.0	687.7
	공공채무(Public Debt)	234.9	256.2	230.5	227.8
	합계	2,311.2	2,415.7	2,506.9	2,501.4
투융자예산 (Non-Budgetary)	투 · 융자, 선급금 (Loan, Investment, Advances)	711.7	10.0	7.5	3.7
	합계	711.7	10.0	7.5	3.7

출처: 캐나다 재무위원회, 「2016-17 Estimates」

- FY2016-17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s) 하원 상정(2016. 3.7)²⁹⁾
 - 캐나다 재무위원회는 84개의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s)를 의회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보고서(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s)는 예산안 관련 문서 중 하나로 통상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직후에 제출되며, 3년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지출계획을 제시(국영기업 제외)
 - ☞ FY2016-17부터 3년간의 부처별 사업 우선순위, 전략적 목표(strategic outcomes)별 프로그램, 필요 자원 등을 제시
 -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향후 부처별 사업에

대한 재원의 정확한 사용에 초점을 맞춘 계획

2. 예산 · 결산 등

- 캐나다 통계청, 2015년 경제성장률 발표(2016.3. 1)³⁰⁾
 - 2015년 캐나다의 실질GDP 성장률은 1.2%로, 낮은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경제성장을 제약함에 따라 전년 대비(2.5%) 절반 수준으로 감소
 - 2015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2%로, 낮은 국내최종수요와 수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킴에 따라 전분기 대비 0.4%p 감소
 - 2015년 캐나다의 국내최종수요 성장률은 0.5%로 전년 대비 0.9%p 감소

29) 출처: 캐나다 정부, Minister Brison Tables 2016-17 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http://news.gc.ca/web/article-en.do?nid=1038639&tp=1&_ga=1.13082352.659072794.1457654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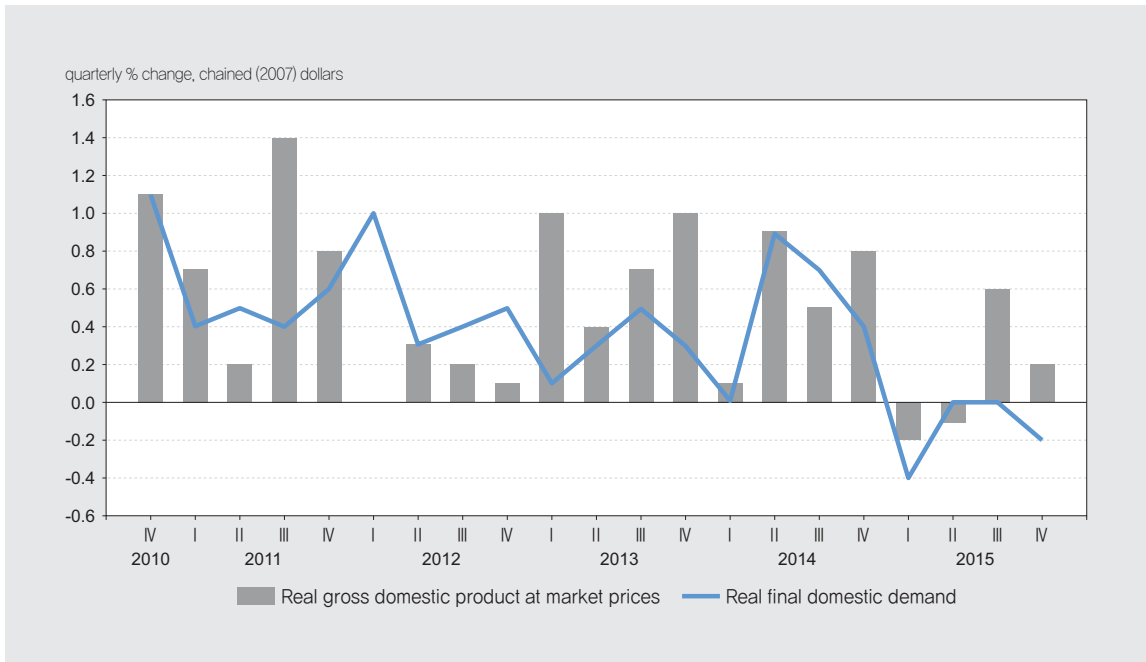
30) 출처: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60301/dq160301a-eng.htm>



- 2015년 4분기 국내최종수요 성장률은 -0.2%로
전분기 대비 0.2%p 감소, 이는 낮은 총고정자

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에 기인

[그림 3] 실질 GDP 및 국내최종수요의 성장률



출처: 캐나다 통계청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2015년 4분기 실업률 잠정치 발표(2016.3.3.)³¹⁾
 - 2015년 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및 전년 대비 모두 0.1%p 하락한 10.0%로, 2015년 1분기 수

준(10.0%)으로 회복

- 실업자수는 전분기 대비 47,000명 하락한 286만명
-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10.3%로 전분기 10.4%보다 하락

31)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14&date=20160303>

〈표 8〉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2015 Q3	2015 Q4 잠정	증감(%p)		2015 Q4 실업자 수 (천명)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10.1	10.0	-0.1	-0.1	2,860
15-24세	24.3	24.0	-0.3	0.0	646
25-49세	9.4	9.3	-0.1	-0.2	1,651
50세 이상	7.0	6.9	-0.1	0.0	563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16.3.3.

■ 노동개혁 추진(2016.3.14.)³²⁾

-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는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법 개혁안을 2016.3.14에 발표
- 법안은 평생 교육 및 직업훈련, 기업의 사회적 대화, 정규직(Contrats à Durée Indéterminée, CDI) 고용 촉진의 3가지에 주안점을 둠
 - 근로자 활동계좌(Compte Personnel d'Activité, CPA)³³⁾를 통해 비학위 근로자에게 연 40시간씩 최대 400시간의 직업훈련 강좌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의 주 35시간 근로시간제에서 기업별로 노

사협약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

- 기업의 직원 해고사유가 부당할 경우³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금의 척도(barème)³⁵⁾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해고 부담 감소,³⁶⁾ 기업이 영업이익 감소, 새로운 경쟁 또는 기술변화에 처했을 경우 근로자 해고 가능³⁷⁾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 일본

1. 기타

- 내각부, 2015년 4분기 GDP성장률 2차 속보치 발표(2016.3.8.)³⁸⁾
 - 2015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연율 -1.1%), 명목GDP 성장률은 -0.2%(연율 -0.9%)로, 1차 GDP 속보치(실질 -0.4%, 명목 -0.3%)보다 상향 조정
 - 수정의 주요원인으로는 설비투자의 증가폭이 확대(1.4% → 1.5%)되었고, 민간재고 증감의 감소폭이 축소(-0.1% → -0.0%)되었기 때문
 - 민간최종소비는 겨울 고온현상에 따른 내구재

32)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loi-travail>

33) 근로자 활동계좌(Compte Personnel d'Activité, CPA)는 직장생활 시작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직업변화에 상관없이 유지되며,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계좌에 포인트로 지원

34) 예로, 고용주가 자신의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

35) 프랑스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최저한도(해고 이전 6개월 동안 월 평균임금의 6배)는 정하고 있으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 보상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출처: 중앙노동위원회(2007), 유럽국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36) 사용자는 원래 해고 부담이 적은 한시직(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CDD) 고용을 선호하나 해고 시 지급하는 보상금 척도 도입을 통해 해고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규직(Contrats à Durée Indéterminée, CDI)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게 됨

37) 지난 3월 9일 프랑스 파리 시내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22만명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혁안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노조가 주도)를 벌였으며, 3월 14일 대표적 노동단체 프랑스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 힘(FO), 최대 학생단체 프랑스대학생연합(UNEF)도 노동법 개혁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출처: 연합뉴스, 뉴스)

38) 내각부, 「2015(平成27)年10-12月期GDP速報(2次速報)」, 2016.3.8.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15/qe154_2/pdf/qe1542.pdf



판매 부진으로 1차 속보치에서 하향(-0.8% → -0.9%) 수정

- 공적투자는 지방 공공투자사업 지연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2.7% → -3.4%)

〈표 9〉 2015년 4분기 실질GDP성장률 2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4년	2015년					2015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 연율환산
					1차	2차	
국내총생산 (GDP)	0.5	1.1	-0.4	0.3	-0.4	-0.3	-1.1
[연율환산]	[2.2]	[4.6]	[-1.4]	[1.4]	[-1.4]	[-1.1]	
국내수요	0.2	1.1	-0.1	0.1	-0.5	-0.4	-1.6
(내수기여도)	(0.2)	(1.1)	(-0.1)	(0.1)	(-0.5)	(-0.4)	
민간수요	0.2	1.6	-0.4	0.2	-0.6	-0.5	-2.0
민간최종소비	0.7	0.2	-0.8	0.4	-0.8	-0.9	-3.4
주택투자	-0.4	2.1	2.3	1.6	-1.2	-1.2	-4.7
설비투자	-0.1	2.9	-1.1	0.7	1.4	1.5	6.3
민간재고증감 ¹⁾	(-0.3)	(0.6)	(0.3)	(-0.2)	(-0.1)	(-0.0)	-
공적수요	0.3	-0.4	0.9	-0.2	-0.1	-0.1	-0.5
정부소비	0.3	0.2	0.5	0.2	0.5	0.6	2.4
공적투자	1.0	-0.3	3.2	-2.1	-2.7	-3.4	-12.7
공적재고증감 ¹⁾	(-0.0)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3)	(-0.0)	(-0.3)	(0.2)	(0.1)	(0.1)	-
수출	3.2	2.1	-4.6	2.6	-0.9	-0.8	-3.3
수입	1.1	1.9	-2.5	1.3	-1.4	-1.4	-5.6
GDP디플레이터	2.3	3.3	1.5	1.8	1.5	1.5	-
(전기대비)	(0.3)	(0.9)	(0.3)	(0.3)	(0.1)	(0.0)	

주: 1)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3)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비

출처: 내각부, 「2015(平成27)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6.3.8.

- 재무성, FY2016 국민부담률 발표(2016.2.12.)³⁹⁾
 - 2016년도 국민부담률은 2015년도 대비 0.5%p 감소한 43.9%를 기록할 전망
 -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2015년도에 비해 0.5%p

감소 전망되나 여전히 50%를 넘는 수준이며 재정적자가 증가할 경우 2015년보다 높아질 가능성 존재

〈표 10〉 국민부담률(국민소득대비) 추이

(단위: 조엔, %)

	2012 실적	2013 실적	2014 실적	2015 실적전망	2016 전망
조세부담률(①)	23.2	24.1	26.0	26.5	26.1
사회보장부담률(②)	17.4	17.5	17.8	17.9	17.8
국민부담률(③=①+②)	40.6	41.6	43.8	44.4	43.9
국민소득대비 재정적자율(④)	10.6	9.7	7.7	6.7	6.7
잠재적 국민부담률(⑤=③+④)	51.2	51.3	51.6	51.1	50.6
국민소득(NI) (조엔)	351.2	359.1	364.4	374.2	385.9
GDP대비 국민부담률	30.1	31.0	32.6	33.0	32.7
국내총생산(조엔)	474.4	482.4	489.6	503.1	518.8

주: 재정적자계수는 중앙 및 지방 재정수지적자이며,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값
출처: 재무성, '國民負担率(對國民所得比)の推移', 2016.2.12.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영국

1. 기타

- 총리실 · 재무부, 저축장려정책, 국가최저임금 인상 계획,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발표(2016.3.14.)⁴⁰⁾
 - 저소득계층에 대한 저축장려정책인 “Help to Save scheme” 실시 계획 발표
 - 통합수당(Universal Credit),⁴¹⁾ 혹은 저소득

근로세 공제(Working Tax Credits)⁴²⁾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대상
- 월간 최대 50파운드 저축액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2년 후 환급해 주며, 최대 4년 까지 연장 가능(최대 환급액 2년 600파운드, 4년 1,200파운드)
- 혜택 예상인원을 350만명으로 추정

39) 내각부, 「國民負担率(對國民所得比)の推移」, 2016.2.12.

40) 원문: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announces-new-support-to-improve-the-life-chances-of-millions>

41) 소득보조, 구직자 수당, 고용 및 지원수당, 주거급여,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제도, 장애인생활급여

42) 영국 세금공제 제도는 크게 자녀가 있는 저소득 노동자 가정에 부여하는 세금 감면 혜택(Child Tax Credit)과 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25세 이상의 저소득 노동자가 받는 혜택(Working Tax Credits)로 구분



- 기존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도입 계획을 재확인하는 한편, 연령별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인상
 - (7월 여름예산안) 2016년 4월부터 2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대체하여 시간당 7.2파운드의 국가생활임금 지급, ⁴³⁾ 연간 평균 900파운드의 임금인상 효과 발생
 - ☞ 정부는 법인세 인하(현행 20%인 세율을 2017년 19%, 2020년부터 18%로 인하)로 확보되는 기업재원 여력을 생활임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 조정된 최저임금은 2016년 10월부터 적용되며, 약 50만명의 청년이 인상혜택을 받게 될 전망
 - ☞ 21~24세 6.7 → 6.95파운드, 18~20세 5.3→5.55파운드, 16~17세 3.87 → 4파운드, 견습생 3.3→3.4파운드로 인상
 - ☞ 특히 21~24세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8년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간 평균 450파운드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 1,400만 파운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25,000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43) 현행 연령별 최저임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4월부터 2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 시간당 7.2파운드(현 최저임금 대비 10%이상 증가)의 생활임금 지급하고 2020년까지 최소 9파운드로 인상할 계획

정책 흐름



-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적극 추진으로 실적 향상 -

* 본 자료는 2016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등으로 '14년보다 등급분포 상향

- A등급 20개(5 ↑), B 53(2 ↑), C 30(5 ↓), D 9, E 4(2 ↓)
- A등급 기관은 공기업 8개, 준정부기관 12개
- 실적부진(D, E등급) 기관의 기관장 3명, 상임이사 13명 경고 조치
- 연간복권발행계획서 변경 근거 마련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 기획재정부는 '16.6.16(목)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2015년도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운영되었다.

- 특히, 금년에는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보다 미리 구성하여 기관제출 보고서 검증, 현장실사 등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 결과)** 평가대상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다소 개선된 분포로서,
- 총 116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20개(17.2%),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3개(11.2%)이며, '탁월(S)' 등급은 없다.
- '14년 대비 등급분포는 '양호(B)' 등급 이상이 7개 증가(66 → 73), '미흡(D)' 등급 이하가 2개 감소(15 → 13)하였다.

■ **(결과 분석)**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경영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

- **(부채 감축)**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의 결과로 부채규모가 전년 대비 16.7조원 감축*되고, 부채비율도 21%p 하락**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 ('14년) 507.2조원 → ('15년) 490.5조원

** ('14년) 212% → ('15년) 191%

- **(방만경영)**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신설 금지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 **(임금피크제)** 또한, 2015년에는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S	A	B	C	D	E
'15년	116	-	20	53	30	9	4
	(100%)	(-)	(17.2%)	(45.7%)	(25.9%)	(7.8%)	(3.4%)
• 공기업	30	-	8	10	6	4	2
• 준정부기관	86	-	12	43	24	5	2
- (강소형)	(55)	-	(6)	(23)	(20)	(4)	(2)
'14년	116	-	15	51	35	9	6
	(100%)	(-)	(12.9%)	(44.0%)	(30.2%)	(7.8%)	(5.1%)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그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별도 지표(2점)를 신설하여 평가, 최대 1점의 가점 부여

- **(기능조정)** 한편,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기능조정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 예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무 철수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비하여 부동산 공시·통계조사, 녹색건축 인증업무 등 대체 수익기반 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장측량 업무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위해 민간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 **(경영실적)**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12.5조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

* ('12년) △2.0조원 → ('13년) 5.4조원 → ('14년) 11.3조원 → ('15년) 12.5조원

- **(후속조치)**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 **(성과급 차등지급)**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

관은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 **(인사조치)**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 (기관장)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장에 대해 경고 조치

* 대한석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15년 하반기 이후 임명된 6개 기관의 장은 제외

※ E등급인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나, 재임기간 요건('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하여 제외

- (상임이사)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최초로 실시

- **(경영개선 점검)**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다.(기획재정부/주무부처)

- **(예산상 조치)**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

성지침에 반영

- **(기관장·감사 평가)**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였으며, 동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기관장 평가대상 총 4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은 41명, 미흡은 2명이며,
 -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총 29명 중 우수는 없으며, 보통은 27명, 미흡은 2명이다.
- 향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하고,
 -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평가개요

- **(법적 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36조기
- **(평가 목적)**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
 - ※ (기관장·상임감사)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감사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성과를 평가
- **평가대상**
 - 기관평가 : 116개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 49개
 - * '15.12.31일 기준, 재임기간 1년 6개월 이상, 재임기간 중 1회 평가

- 상임 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29개
- * '15.12.31일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 재임기간 중 1회 평가

■ 평가지표

- **(기관 평가)** 2개 범주(경영관리, 주요사업), 20여개 지표로 구성
- **(기관장 평가)** 리더십, 책임경영, 중장기 전략과제 등 6개 지표
- **(상임감사 평가)** 감사활동의 적정성 등 7개 지표

■ 평가결과 활용

-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 평가결과 D(미흡)등급인 기관의 장은 “경고” 조치하고, E(아주미흡) 등급인 기관의 장은 기관장 “해임” 건의
- ※ 기관장, 상임감사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참고 2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116개 기관)

※ 아래 표의 등급 내 기관순서는 “가나다”순

등급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강소형기관* (55개)
A(2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8)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입업진흥원 (6)
B(53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도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2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
C(30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철도공사 (6)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

참고 2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116개 기관) <계속>

※ 아래 표의 등급 내 기관순서는 “가나다”순

등급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6개)	강소형기관*(55개)
D(9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	한국전기안전공사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송강기안전관리원 (4)
E(4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2)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2)

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이고 정원 500인 미만인 기관

참고 3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49명)

※ 아래 표의 등급 내 기관순서는 “가나다”순

등급	공기업(11명)	준정부기관(38명)	강소형기관(20명)
우수(6명) 80점 이상	한국도로공사(김학송) 한국조폐공사(김화동) (2)	한국국토정보공사(김영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김옥이) 한국자산관리공사(홍영만)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권승) (1)
보통(41명) 80점 미만 ~ 60점 이상	여수광양항만공사(선원표) 한국감정원(서종대) 한국남동발전(주)(허엽) 한국마사회(현명관) 한국서부발전(주)(조인국) 한국수력원자력(주)(조석) 한국수자원공사(최계운) 한국철도공사(최연혜)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국립공원관리공단(박보환) 국민체육진흥공단(이창섭) 근로복지공단(이재갑) 기술보증기금(김한철) 도로교통공단(신용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김화진) 신용보증기금(서근우) (재)우체국물류지원단(유천균) 한국농어촌공사(이상무) 한국무역보험공사(김영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종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박승규) 한국전기안전공사(이상권) 한국철도시설공단(강영일) (15)	국립생태원(최재천) 농림수산물기술평가원(이상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일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봉환) 한국고용정보원(유길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김명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류호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재훈) 한국산업단지공단(강남훈) 한국석유관리원(김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강영실) 한국연료진흥재단(김병호) 한국연구재단(정민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춘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김무환) 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임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김용주) (18)
미흡(2명) 60점 미만	대한석탄공사(권혁수)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희상) (1)

참고 4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29명)

※ 아래 표의 등급 내 기관순서는 “가나다”순

등급	공기업(15명)	준정부기관(14명)	강소형기관(2명)
우수(-) 80점 이상	-	-	-
보통(27명) 80점 미만 ~ 60점 이상	인천국제공항공사(박용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김치영) 한국가스공사(김흥기) 한국감정원(김한수) 한국공항공사(정오규) 한국남부발전(주)(임정덕) 한국도로공사(박부용) 한국마사회(정대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강태진) 한국석유공사(변운성) 한국수력원자력(주)(위재민) 한국수자원공사(최호상) 한국지역난방공사(최희원) 한국철도공사(임영호)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정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성록) 국민연금공단(조성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김진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대원) 예금보험공사(윤창근) 한국가스안전공사(김정규) 한국무역보험공사(정운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안상현) 한국산업인력공단(최성식) 한국전기안전공사(한상욱) 한국철도시설공단(김형원) (12)	한국에너지공단(임명배) (1)
미흡(2명) 60점 미만	한국관광공사(윤종승) (1)	-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강춘자) (1)

참고 5 경영평가단 명단

	경영관리-비계량	경영관리-계량	주요사업	제도개선 및 지표설계	기관장	상임감사
단 장	반장식(서강대)					
부단장	박순애(서울대)					
부문간사	이종원(가톨릭대), 신승모(인하대), 박정수(이화여대), 유승원(경향대)					
공기업 1	박용성(단국대) 김창봉(중앙대) 김현배(다음노무) 신희권(충남대) 최천근(한성대)	박재관(안진회계) 김상부(안세회계) 오선영(삼일회계) 전갑중(이현회계) 최원석(서울시립대)	우윤석(송실대) 강명수(한성대) 백승철(안동대) 신일순(인하대) 이덕로(세종대) 이수일(KDI) 주창범(동국대) 홍순만(연세대)	리영재(조세연) 김호운(해송법무) 노정란(명지대) 박선규(하이노무) 박윤호(대한경영) 추부금(아트너컨) 한수희(능률협회)	안양호(제주대) 김동률(서강대) 김정진(서울여대) 김주찬(광운대) 박준휘(형사연) 배근호(동의대) 이승수(서울대) 이중수(연세대) 이창구(충북대) 전광섭(호남대) 제갈돈(안동대)	유홍림(단국대) 김근세(성균관대) 김용문(지식협동) 김태미(정명노무) 김태일(고려대) 박해선(건국대) 변석준(안진회계) 엄태호(연세대) 정석우(고려대)
공기업 2	주영혁(한성대) 권희창(신성노무) 김기승(부산대) 김대훈(송현노무) 김민균(서강대) 배용수(공주대) 송수영(중앙대) 이상휘(경희대) 황혜신(행정연)	전홍(삼일회계) 권순식(세일회계) 유혜련(안진회계) 이승재(예교회계) 이재경(삼덕회계) 조원덕(삼정회계) 허웅(이정회계)	원구환(한남대) 김건하(명지대) 김인무(성균관대) 김연정(삼정회계) 김지관(창원대) 김대진(서울시립대) 김창원(중앙대) 박선규(성균관대) 박재홍(경희대) 서정아(송실대) 임을규(한양대) 정형근(대외정책연)			
위탁집행(준정부)	정준금(울산대) 강민철(아주대) 강일준(한림대) 김영록(행정연) 육경영(숙명여대) 윤덕룡(대외연) 이상욱(한길노무) 이한주(가천대)	송민섭(서강대) 권태우(이현회계) 김동수(삼일회계) 이상훈(안진회계) 임진윤(도원회계) 정운섭(삼덕회계)	하민철(청주대) 김미량(성균관대) 김병조(고려대) 성시경(단국대) 이세우(상지대) 이중욱(신구대) 이희상(성균관대) 장지호(한국외대) 정현용(남서울대) 차재일(우성법무) 최태현(서울대) 최현선(명지대) 홍승진(광장법무)			
기금관리(준정부)	홍길표(백석대) 손희삼(동방노무) 채상미(이화여대) 함요상(대구대) 허남일(강남대)	최연식(경희대) 강진화(삼덕회계) 노기팔(영앤진회계) 박응균(참회계)	전상경(한양대) 권일웅(서울대) 김소영(서울대) 박종관(백석대) 박형준(성균관대) 이상엽(서강대) 이윤석(계명대) 임기영(한국외대) 정순여(제주대) 조승우(주)라이언앤코)			
강소형	허찬영(한남대) 권기욱(건국대) 김정원(강원대) 이상희(한국산기대) 임완호(정론노무) 장경애(아주대) 최규환(굿모닝노무) 호경임(인해노무) 홍훈기(한길노무)	전석호(대주회계) 박진희(조세연) 김병일(삼일회계) 김철민(태성회계) 마희영(동덕여대) 정영석(진회계) 성영수(한울회계) 신문철(삼정회계) 오광욱(고려대) 이병찬(영앤진회계) 이진관(조세연)	이석환(국민대) 김성중(단국대) 김은선(조세연) 김필승(대전대) 송영욱(충북대) 심재승(청주대) 오승택(동국대) 이동현(평택대) 이형오(숙명여대) 장항배(중앙대) 전태준(서원대) 정정화(강원대) 조광현(일신회계) 최근열(경일대) 황종규(동양대) 최중오(대경대)			
소계	36명	33명	59명	7명	11명	9명

참고 6 기타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단위: %)

유형	구분	S	A	B	C	D~E
공기업(30개)	직원(투자기관)	250(300)	200(240)	150(180)	100(120)	0
	기관장	120	96	72	48	0
	상임임원	100	80	60	40	0
준정부 기관(86개)	직원	100	80	60	40	0
	기관장	60	48	36	24	0
	상임임원	60	48	36	24	0

* 기준: (직원) 전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 (기관장·상임임원) 전년도 기본연봉

■ 기관장·상임감사 평가결과

구분	평가대상		평가등급		
	기준	명	우수(80점이상)	보통(80~60)	미흡(60점미만)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	1년 6개월 이상 재임	49명	6	41	2
		(100%)	(12.2%)	(83.7%)	(4.1%)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6개월 이상 재임	29명	-	27	2
		(100%)	(0.0%)	(93.1%)	(6.9%)

■ D등급 기관 중 기관장 경고조치 제외대상(6명)

기관명	임명일	기관명	임명일
■ 한국가스공사	2015. 7. 1.	■ 한국소비자원	2015.10. 8.
■ 부산항만공사	2015. 7.31.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016. 4.20.
■ 한국세라믹기술원	2015. 9. 9.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석

■ E등급 기관 중 기관장 해임건의 제외대상(4명)

기관명	임명일	기관명	임명일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5.11.24.	■ 한국석유공사	2016. 2. 2.
■ 한국시설안전공단	2016. 1. 8.	■ 국제방송교류재단	공석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 5개 기관 통 · 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

* 본 자료는 2016년 6월 14일 부서 공동으로 발표한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에너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
 - 전력 판매, 가스 도입 · 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
- ◇ **(환경)** 생태 · 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협업무를 대폭 축소
- ◇ **(교육)**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 · 중복 기능을 조정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음

* 6.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능조정 방안 의결

•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핵심 개혁과제로서,

* SOC, 농림 · 수산, 문화 · 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 발표 (15.5.27.)

•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금번 기능조정(안)은 기관별 운영실태조사(15. 11.~16.2.), 전문가 의견수렴(16.2.~5.), 관계부처 협의(16.3.~6.)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 유사 ·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음

■ 분야별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에너지 분야

(1) 유사 · 중복 기능의 일원화 또는 기관 통 · 폐합

- ①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
- ②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고 협력을 강화
 - * (한전) 대형사업 · 에너지 신산업, (발전5사) 화력 · 신재생 · O&M
- ③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 ④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여 일괄 운영

(2)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 ①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②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효율화*
 - *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6월)
 -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
 - * (석유공사) 조직 축소(본부 6→4개, 부서 △23%), 인력감축('20년까지 △30%)
 -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
 - * (광물자원공사) '20년까지 인력 감축 및 신규채용 중단, 국내조직(△17%) 및 해외사무소 축소('15년 11개 → '17년 3개)
- ③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
- ④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
- ⑤ 석유공사 등이 수행중인 에트회계 사무 및 용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

(3)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확대

- 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
 - *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부가 발표(금년중)
- ②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

쟁구도를 조성한 후, '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 ('15년 4개사, 총수입량의 5.7%)

- ③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
- ④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
- ⑤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17년부터 중단

(4)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

- 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
 -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여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
 - * 상장 준비기간(통상 6~8개월)을 거쳐, '17년 상반기부터 상장
- ②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
 - * 공공지분 51% 한도내 유상증자시(現 65%) 부채비율 20%p 내외 하락 전망
- ③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 정리
 - * (광물자원공사)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켄, 영우자원, 대한광물, 헤인자원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원에너지
- ④ 중복기능,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

(3) 원전 수출, 에너지 산업 관련기능 강화

- ①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

* 한수원도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②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2 환경 분야

(1)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 ①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호남권 생물자원관(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개관)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설립)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여 생물 조사·연구기능을 일원화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실용화, (국립환경과학원) 습지생태 연구

- ②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일원화

- ③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하수도통계작성 기능을 환경공단으로 일원화

(2) 민간경합 축소 및 비핵심업무 정리

- ①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17년부터 철수
–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업무도 위탁기간 만료 시 철수

- ②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개소), 휴게소·매점(3개소)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콜센터도 민간 위탁

- ③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

3 교육 분야

(1)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 ①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

- ②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 중인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

- ③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2) 민간 경합 축소 및 교육-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

- ①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 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수행중인 프로그램을 폐지

- ② 학점은행제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부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고

용정보원이 관리중인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

- 기능조정 방안 이행 과정에서, 총 5개의 기관이 통 · 폐합되고,
 - * 통 · 폐합 기관 :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18년 예정), 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예정)
 -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 · 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기능이 조정될 예정임

-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는,
 -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이상의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 민간개방 확대 · 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금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7월까지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며,
 - 기획재정부는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도 해소할 예정임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

* 본 자료는 2016년 6월 1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에서 발표한 「2017년도 예산 요구 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16년 예산 대비 3.0% 증가한 398.1조원 요구 (총지출 기준)
-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1. 요구 규모

- ◇ 각 부처가 제출한 '17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1조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11.7조 원(3.0%) 증가하였음
 - 3.0%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 전년 대비 요구 증가율(%): ('12) 7.6 ('13) 6.5 ('14) 6.6 ('15) 6.0 ('16) 4.1 ('17) 3.0

'17년 예산 요구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16예산 (A)	'17요구 (B)	증감 (B-A)	%
총지출	386.4	398.1	11.7	3.0
【예산】	263.9	273.5	9.6	3.6
【기금】	122.5	124.6	2.1	1.8

2. 분야별 주요 요구내용

- ◇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16년 대비 증액 요구
- 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16년 대비 감액 요구

【증액 요구 분야】

- ① **(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으로 5.3% 증가
- ②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3.1% 증가
- ③ **(문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5.8% 증가
- ④ **(R&D)**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 을 중심으로 3.3% 증가
- ⑤ (국방)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 증가
- ⑥ (공공질서 및 안전)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3.8% 증가
- ⑦ (일반·지방행정)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5.1% 증가

【감액 요구 분야】

- ⑧ (환경)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7% 감소
- ⑨ (산업)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용자 축소 등으로 △5.5% 감소
- ⑩ (SOC)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
- ⑪ (농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2.4% 감소
- ⑫ (외교·통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5.5% 감소

3. 향후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7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참고 분야별 '17년 예산 요구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16예산 (A)	'17요구 (B)	증감 (B-A)	%
◆ 총지출	386.4	398.1	11.7	3.0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0	6.6	5.3
2. 교육	53.2	54.9	1.7	3.1
3. 문화·체육·관광	6.6	7.0	0.4	5.8
4. 환경	6.9	6.5	△0.4	△4.7
5. R&D	19.1	19.7	0.6	3.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4	△0.9	△5.5
7. SOC	23.7	20.0	△3.7	△15.4
8. 농림·수산·식품	19.4	18.9	△0.5	△2.4
9. 국방	38.8	40.9	2.1	5.3
10. 외교·통일	4.7	4.4	△0.3	△5.5
11. 공공질서 및 안전	17.5	18.2	0.7	3.8
12. 일반·지방행정	59.5	62.5	3.0	5.1

재정포럼

2016년 6월호 통권 제24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6년 6월 15일 발행 / 제20권 제6호(통권 제24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지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